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26-07

www.mifaff.go.kr

THE GLOBAL AGRO-INFORMATION

# 국제농업소식

2009. April | No. 89



농림수산식품자료실



S003270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26-07

www.mifaff.go.kr

THE GLOBAL AGRO-INFORMATION

# 국제농업소식

2009. April | No. 89





---

## 국제농업 단신

- ▶ 최근 FTA 협상 동향과 전망 3
- ▶ EU 23개 개도국 농업식량 프로젝트 재정지원결정 11
- ▶ EU 농가직불금이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13
- ▶ 중국동향보고 : 09 중국정부 사업보고 내용 중 농업분야 17
- ▶ 뉴질랜드 농업개혁 절반의 성공? 21
- ▶ 아태지역 식량상황 25
- ▶ 미국 양돈산업의 당면현황 및 생산성 향상 노력 27
- ▶ 미국 식료품가격 하락현상과 그 배경 31
- ▶ “빌게이트재단” 저개발 국가를 위해 작물연구에 24백만불 투자 결정 33

---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37
- ▶ EU 농업 및 농업무역 관련정책 53
- ▶ EU 2008~2015 농업시장전망 91
- ▶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97
- ▶ 한국-뉴질랜드 농업현황비교 115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제29차 아태총회를 다녀와서」 125

---

## 특별기고

-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147
- ▶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165
- ▶ 한-칠레 FTA 발효 5년평가 179

---

## 해외통상기사

- ▶ 새 DDA 농업의장, 뉴질랜드 워커 대사 209
  - ▶ 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210
  - ▶ 일본 EU에 EPA 촉구 211
  - ▶ 일본 농정개혁 검토방향 212
-



## 국제농업 단신

### 1. 최근 FTA 협상 동향과 전망

농식품부 지역무역협정팀 박정훈

### 2. EU 23개 개도국 농업식량 프로젝트 재정지원결정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 3. EU 농가직불금이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 4. 중국동향보고 : 09 중국정부 사업보고 내용 중 농업분야

주중 농무관 김진진

### 5. 뉴질랜드 농업개혁 절반의 성공?

뉴질랜드 링컨대 유학(농식품부 이정삼)

### 6. 아태지역 식량상황

FAO 아태지역사무소 이영구

### 7. 미국 양돈산업의 당면현안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농식품부 김수현

### 8. 미국 식료품가격 하락현상과 그 배경

aT 김주희

### 9. "빌게이츠재단" 저개발 국가를 위해 작물연구에 24백만불 투자 결정

농진청 양보석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베옷으로 바뀌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추겨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 1. 최근 FTA 협상 동향과 전망

농식품부 지역무역협정팀 박정훈

2009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EU, 걸프협력이사회(GCC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페루와 협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2009년 2월 가서명을 완료하여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2009년 3월 양국정상 간 FTA협상 개시를 공동선언하고, 조만간 1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4년 11월 제6차 협상 이후 중단된 일본과는 FTA협상 재개 문제를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8년 5월 제13차 협상 이후, 멕시코는 2008년 6월 제2차 협상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EU와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통상장관회담('09.4.2, 런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관세환급, 원산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FTA협상 사전단계 진행과 관련하여, 중국과는 '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여 2008년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문안이 쟁점으로 남아 있어 2009년도에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는 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FTA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터키, 러시아와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인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민감한 협상 이슈가 적은 페루와는 금년 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협상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하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 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2009년도 1분기 FTA 협상 동향은 다음과 같다.

## 1. 한·EU FTA

한·EU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약, 2006년 11월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5월에 협상 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2007년 5월에 제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09년 3월까지 8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그 동안 양측은 8차례 정식협상 외에 통상장관회의, 확대수석대표회의, 수석대표회의 및 분과별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09.3.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협상에서 당초 양국은 협상 타결을 목표로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관세환급, 상품양허, 공산품 원산지, 자동차표준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협상타결을 선언하지 못했다. 협상단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양측은 4.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을 계기에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통상장관은 제 8차 협상에서 협상단차원의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을 환영하고 협상 단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잔여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양측은 잔여 쟁점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최대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문제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측은 관세 환급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 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견이 계속되었다. 양측 통상장관들은 회담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하였다.

## 2. 한·호주, 뉴질랜드 FTA

호주, 뉴질랜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FTA 추진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2006년 12월 양국 민간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하고 호주와는 2008년 4월, 뉴질랜드와는 2007년 11월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FTA 체결로 호주에는 자동차, 휴대전화, TV 등 전자제품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풍부한 광물 자원은 우리나라의 안정적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과일 등 원예작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뉴질랜드는 산림, 광물, 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기대되나,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원예작물 등 일부 농산물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호주와는 2009년 5월(캔버라), 뉴질랜드와는 2009년 6월(서울) 각각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3. 한·인도 CEPA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에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을 말함.

한·인도 CEPA 협상은 2008년도에 실무협의 2차례 포함 5차례 협상을 하였으며, 9월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협상 핵심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타결이 되었다. 양국은 2009년 2월에 가서명을 완료하고, 가능한 조기에 정식서명 후 협상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한 상황이나 인도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농림수산업 외에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등 우리나라의 민감 농산물의 수출국이기도 하다.

한·인도 양국 모두 농업과 같은 민감분야에 대하여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인도측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가능한 한 낮춤으로써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결과 우리 민감 농산물의 대부분을 양허제의 유형에 포함 시키거나 관세 부분감축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상타결로 인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한·GCC FTA

\* GCC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기구를 말한다.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양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제1차 협상은 2008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협상 이후 양측은 상품 양허안을 교환한 바 있다. 제2차 협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GCC 측의 사정으로 2009년 3월 개최하였다. 제2차 협상은 각 분과별 협정문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 협상 타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3차 협상은 금년 6~7월경에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며, 오히려 이들 국가 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 5. 한·페루 FTA

우리나라는 페루의 풍부한 자원 및 경제성장 잠재력 이외에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페루 Toledo 대통령이 FTA 추진을 제안하였고,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는 한·페루 FTA 협정문안에 대한 분야별 협의를 진행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루었으나, 상품, SPS, 원산지,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는 다수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2009년 5월에는 리마에서 제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며,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유보안,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 페루 주요 수입품목은 아연광, 동광, 기타 금속광물 등 광물자원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93%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민감한 협상 이슈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6. 한·일본 FTA

일본과의 FTA는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양국 정상외 개시를 합의하여 2003년 12월 제1차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 민감품목 문제 등 쟁점사항의 처리를 포함하여 협상을 종결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 개최된 제6차 협상 이후 농수산물분야 양허 등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08년도에는 한·일 정상회담 합의('08.4)에 따라 양국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를 두차례 개최하여 협상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실무협의회 수석대표를 과장급에서 심의관급으로 격상하여 협상재개를 위한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7. 한·중국 FTA 공동연구

한·중 FTA 공동연구는 '05.3월~'06.10월까지 완료된 민간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07.3월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현재까지 농업전문가 회의를 포함하여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농업현황, 교역상황,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비교 및 민간 공동연구 결과 명기 등 농업 보고서 문안의 대부분에 합의하고, 남은 쟁점사항인 한국 농업의 민감성 반영 관련 문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농업 보고서에 “한국 농업의 민감성 관련 문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것인지가 공동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중 FTA 추진 여부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후 공동연구 보고서의 검토 및 이  
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 8. 기타 국가

우리나라는 터키, Mercosur, 러시아와도 FTA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Mercosur  
와는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이며, 터키, 러시아와의  
FTA는 공동연구를 거쳐 협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 2. EU 23개 개도국 농업식량 프로젝트 재정지원결정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EU 집행위는 2009.3.30(월) 전 세계 23개 개도국에 식량 및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314백만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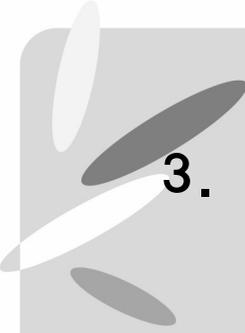
### 1. 배경

- 2008. 12.18. EU 이사회는 악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대응조치로서 3년간 10억 유로의 식량농업지원 (Food facility)을 결정한 바 있음.
- 단기적 긴급 식량지원 문제와 중장기적 개발협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농업지원계획은 다음 3가지 유형의 활동을 지원하게 됨
  - 비료, 종자 등 농업 투입재와 수의사, 농업경영자문 등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소액대출, 농촌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농업분야 전문종사자 지원과 같이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목적의 소규모 활동
  - 노동집약적 공공사업 (도로, 관개시절 프로젝트 등)의 형태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3년동안 총 50개 개도국(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제기구, 지역기구, 개별 국가정부 등을 통해 자금이 지원됨

## 2. EU 집행위 재정지원 결정내용

- 금번 EU 집행위 재정지원 결정은 3년간 개도국 농업식량지원계획에 대한 첫번째 재정지원결정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쉬, 미얀마, 브루나이, 콩고, 쿠바, 이디오피아 등 23개 개도국에 지원됨(국가별 지원액은 첨부 참조)
- 모든 재정지원은 UN FAO, IFAD, WFP, 세계은행, UNDP, UNOPS, UNRWA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됨



### 3. EU 농가직불금이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EU 집행위 농업총국은 최근 EU가 농가 단일직불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지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공개한 바 주요내용을 아래 계기함. (동 보고서는 EU 회원국의 농지시장을 이해하고 농가보조금이 농지 가격에 자본화(capitalization) 되는 정도와 농지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됨)

#### 1. EU 회원국의 농지 시장 현황

##### ● 농지가격 및 변화

- 네덜란드는 4만유로/ha 인 반면 스웨덴은 2천유로/ha로 국가별로 큰 차이
- 아일랜드는 1992년 이후 농지가격이 250% 상승한 반면 그리스는 25% 하락

##### ● 농지이용면적 대비 임차비율

- EU 회원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벨기에, 프랑스, 북아일랜드, 독일은 이용면적의 65%이상이 임차농지인 반면 아일랜드는 17%에 불과

농지이용면적대비 임차비율 (2005)

EU-1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	31	75	25	34	84	70	40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17	38	49	39	30	34	50	43

- 핀란드의 농지임대료는 1992년 이후 25% 감소한 반면 스페인은 55% 증가

## 2. 농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농산물 가격 및 농업생산성은 농지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농지매매가 보다는 임차료에 큰 영향을 미침
- 주택 수요증가 등 도시화의 진전은 인구밀집국가 (벨기에, 네덜란드 등)와 빠른 경제성장국가(아일랜드, 스페인)에서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 농지시장 규제, 특히 농지임차료 규제는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EU-15 국가중 1/3이 임차료 상한을 정부가 정하고 있음.
  - 일부 회원국은 농지 최소임차기간을 규제(농지임차비율이 높은 벨기에, 프랑스는 9년, 네덜란드 6년, 스페인 5년)하고 있는데 농지임차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정책변화에 반응하는 속도도 느림
- 농지관련세(농지매매세, 농지보유세)는 회원국별로 매우 다른데 영국의 저급 농지매매세가 농지가격의 1%인 반면 이태리의 고급 농지 매매세는 18%. 핀란드에서는 농지보유세가 없는 반면, 남부유럽국가들은 15%가 넘음.

- 낮은 농지매매세율은 농지구조변화를 촉진하는 반면 농지가 비농업분야 투자자의 투기대상이 되기 쉬움.
  - 높은 농지보유세율은 농지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구조변화를 방해함.
- EU 공동농업정책은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발생
- 일반적으로 농지가격이 낮을수록 공동농업정책이 농지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큰 반면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지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농지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에서는 공동농업정책 이외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침.

### 3. 단일농가직불금제도(SPS) 도입의 영향

ha 면적당 단일농가직불금 지급액 (2006)

EU-15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226유로	167	344	362	226	187	333	513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313	244	284	171	97	139	200	234

- 단일농가직불금의 수급권(entitlement) 거래는 주로 농지거래시 발생하며 주로 농민들간에 거래가 일어남
- 수급권의 시장가격은 연간 직불금 수급금액의 1-3배인데 2013년까지 단일농가 직불금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급금액의 현재가치인 4-5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이는 단일농가직불금제도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정 부담과 비용, 수급권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생산 비연계 단일농가직불금제도 도입후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며 농업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의 농지가격 자본화(농지가격)가 낮아지지 않음
  - 역사적방식(historic)으로 지급되는 단일농가직불금이 지역 및 혼합방식(regional and hybrid)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보다 농지 자본화 정도가 낮으나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경우 자본화되는 정도가 컸음.
  - 단일농가직불금 지급이 농지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농지가격 영향보다 큰데 농지임대료를 규제하는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시장보다는 비공식시장(unofficial market)에서 임대료가 상승함.
- 단일농가직불금 혜택이 농지소유자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는 역사적 방식 직불금 보다는 지역 및 혼합방식이 더 큰데, 농지소유자는 직불금이 농지에 자본화되면서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혜택을 받는 한편,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취소 하고 직접 직불금 수급권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조건을 갱신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핀란드, 스웨덴은 농지소유자가 직불금 혜택의 60-100%를 가져가는 반면 그리스, 아일랜드는 0-10%에 불과하여 국가별로 혜택정도가 큰 차이를 보임
  - 농지소유자가 농민인지 여부에 따라 직불금 혜택의 분배가 달라지는데 독일, 북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비농민 농지소유자의 혜택이 큰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단일농가직불금이 농지가격에 자본화되는 비율이 낮아 농민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감.
- 단일농가직불금 시행기간이 짧아 농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름.

## 4. 중국동향보고 : 09 중국정부 사업보고 내용 중 농업분야

주중 농무관 김진진

※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09.03.05)에서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업무 사업 보고 내용 중 발췌 정리한 것임

### 1. 주요요지

- 국가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민 소득의 지속적인 증대를 촉진

☞ '3농' 부문에 7,161억 위안 투입 및 농촌개혁 심화 5개 조치 실시

### 2. 구체내용

- 정부업무 보고에서는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업무 강화를 위한 5개 조치를 제시

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 대폭 증가

● '3농'부문 투입자금으로 전년대비 1,206억 위안 증가한 7,161억 위안의 예산을 편성

- 특히 중서부지역의 농촌 공익성 건설사업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리고 현(縣)급 이하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금을 취소
- 식량생산 지원정책을 주산지에 집중시키고, 주요식량 생산지역에 대한 재정상의 장려와 식량산업 건설 프로젝트 지원 강도를 높임

#### 나. 곡물 최저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

- 농산물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
  - 올해 밀과 벼의 최저 수매가격은 1kg당 각각 0.055위안과 0.065위안 인상
  - 주요 농산물 임시 수매비축정책을 실시하여 곡물, 면화, 식용식물유, 돼지고기 비축량을 늘려 농산물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 다. 농업 보조금 규모를 추가 확대

- 중앙재정은 농업 보조금을 전년 대비 200억 위안 더 많은 1,230억 위안을 편성
  -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 늘리고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보조금 기준을 상향 조정

#### 〈보조금 지급 대상〉

- 벼, 밀, 옥수수, 면화 등의 우량종자에 대해 전국적인 보조를 실시시 하고 이외 유채와 대두에 대한 보조범위 확대
- 농기구 구매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국의 모든 농/목/축 縣으로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예산을 전년 대비 90억 위안 더 많은 130억 위안으로 책정
- 농업생산재 가격 상승폭과 농작물 파종면적에 따라 농업 생산재 종합 보조금 기준을 높일 계획

## 라. 신형 농업사회화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박차

-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성과 보급과 서비스 능력을 강화
  - 농업기술보급, 동식물 전염병 방제, 농산물 품질 관리감독 등을 취급하는 공공 서비스기관을 건전화하고 공급판매합작사, 농민전문합작사, 선도기업 등 다양한 형식의 생산경영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마.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안정시키고 완비화

- 기존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취업한 농민공을 비롯한 농민에게 더 충분한 토지도급 경영권을 부여
  - 토지도급 경영권 이전은 반드시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되 유상을 원칙으로 함
  - 경작지 보호제도와 토지절약사용제도를 엄격히 실행하여 기본 농경지 18억 무(畝, 1묘=666m<sup>2</sup>)의 경작지 위험선을 고수하고 집체산림소유권제도개혁을 추진
  - 농촌 종합개혁을 심화 하며 향(鄉)/진(鎭) 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아울러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농촌 채무문제 해결



## 5. 뉴질랜드 농업개혁 절반의 성공?

### - 육류업계, 제2의 농업개혁 필요 주장 -

뉴질랜드 링컨대 유학(농식품부 이정삼)

- 뉴질랜드 쇠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업계는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2의 농업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1980년대에 이루어진 탈규제(deregulation)는 놀라울 정도로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의 농업개혁(별첨 참조)은 세계적인 사례가 되었다.
  - 그러나 농업개혁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뉴질랜드 농가의 소득을 성공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부족한 개혁이었다.
  - 실례로 Meat & Wool NZ Economics Service에 따르면, 작년 양, 쇠고기 농가의 농가 호당 소득은 NZ\$ 19,400로 최근 50년이래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 올해는 작년도다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수년 내에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뉴질랜드 육류업계는 저가 판매로 인한 저수익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뉴질랜드 농민은 좋은 고기를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확대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 생산자가 혁신과 노력으로 창출한 저비용을 고스란히 생산자 자신이 아닌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례로 영국의 경우 양고기 생산자의 농가수취가격은 소매가의 45%이지만 뉴질랜드는 20%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향은 북미에서도 적용된다.
  - 영국과 미국에서 수입업자들이 뉴질랜드 양고기를 저가로 수입하는 이유는 “뉴질랜드는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 생산자가 줄인 생산비용을 생산자 자신의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망/공급가치사슬(supply chain/supply value chain)에 대한 또 한 번의 농업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별첨 :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핵심내용>**

□ 개혁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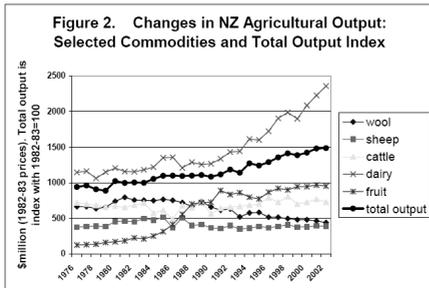
- 1960년대 중반까지는 뉴질랜드는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음
- 60년대 후반 양모가격 폭락 등 경기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방어 목적으로 정부는 생산 및 수출 증가를 위해 다양한 생산 보조금 제도 및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사태를 악화시킴
  - \* 생산자 보조치(PSE)가 1983년에 거의 EU 수준인 35%로 최고에 달함
  - \* '84년까지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경상수지 악화 등의 심각한 경제문제 발생

□ 개혁의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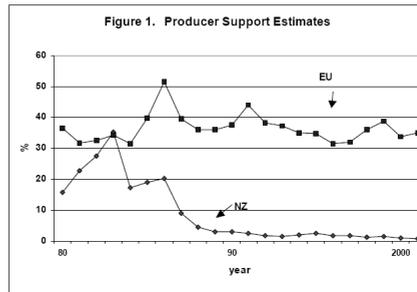
- 이자와 환율 통제 철폐, 농촌은행 민영화 등 공공기관 개혁 등 경제전반 개혁
- 농업생산 및 수출 보조 철폐, 수입허가제 폐지, 관세감축, 농업서비스 사용자부담
- 품목별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의 개혁

□ 개혁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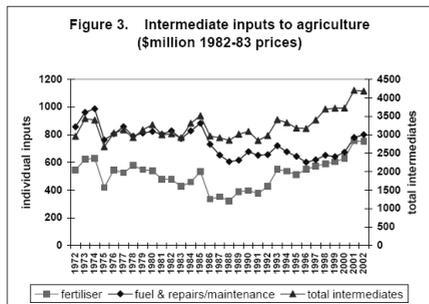
- 생산자 보조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및 이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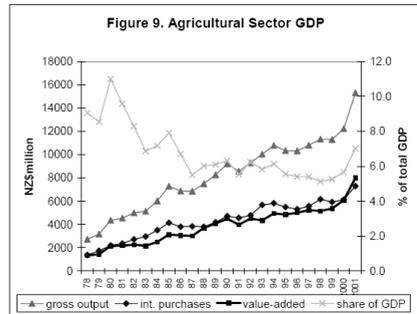
Source: Johnson and Forbes (2000), updated by Forbes (personal communication).



Source: OECD



Source: Johnson and Forbes (2000), updated by Forbes (personal communication).



Source: Statistics NZ (PCINFOS)

<그래프 출처: Rae, A. et al, 2004>





## 6. 아태지역 식량상황

FAO 아태지역사무소 이영구

(Source: Asia Pacific Food Situation Update 2월호 by FAO)

### ● 2009년 곡물 수확량 감소전망

- FAO에 의하면 식부면적의 감소 및 가뭄 등으로 2009년 세계 곡물수확량은 작년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
- FAO는 최근 경제난으로 도시가구의 소득감소에 따라 가격이 싼 주곡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계 1인당 쌀 소비(식품용)가 2006~2007년 56.9kg에서 2008-2009년 57.3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유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지속
- 2008-2009년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104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전 세계 곡물생산량의 4.6%에 달함

### ● 2008년 쌀 수확량 증가로 소비자가격 하락 전망

- 2008년 시즌 전세계 쌀 수확량은 68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것
- 쌀 수확량 증가의 주요원인은 최근 높은 쌀 가격으로 인하여 쌀 재배면적이 2.2%가 증가한 것임

- 2008년 쌀 수확량 증가에 따라 금년도 세계 쌀 재고량 (정미기준)은 118백만 톤으로 2008년대비 9백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AO에 의하면 비록 낮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이로울 것이나, 고급 백미기준 톤당 US\$400이하의 가격은 생산자 및 수입국의 자급을 제고 정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전세계 식량 수요 및 생산량은 서서히 증가

- 전세계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소비가 일부 국가에서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는 것은 식량수요가 세계적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이는 이미 모든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율이 1999-2001년 정점에 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영되어 있음



## 7. 미국 양돈산업의 당면현안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농식품부 김수현

※ '09.3.7~3.10(4일간) 텍사스 달라스에서 “Securing Our future” 라는 주제로 제40회 전미양돈수의사대회 논의내용중 생산성 향상분야 발표내용 발췌

- 미국 양돈산업은 '07년 1,305천톤(미화 31.5억불 상당), 08년 2,052천톤(미화 48.8억불)의 돼지고기를 수출, 전 세계 돼지고기 무역량의 약 38%를 차지
- 미국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일리노이주 및 노스캘리포니아주를 중심 '08년 6월 기준으로 67.4백만두의 돼지를 사육

년도 (6.1일기준)	총 사육(1000두)	종돈(種豚) (1,000두)	고기생산용 돼지 (1,000두)	비 고
2008	67,400	6,131	61,269	'08년 사육 두수는 '07년 대비 5.3% 증가
2007	63,947	6,169	57,777	

※ 자료출처 : 미국 국립농산물통계원(<http://www.nass.usda.gov/QuickStats/index2.jsp>)

- 미 육류수출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6번째로 큰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08년 약 133,532Metric ton(가격으로는 284,530천불)을 수입

- 한국 수입돼지고기 시장내 미국산 점유율은 수입국중 가장 높은 약 26%수준 (07년 기준)으로 목살, 갈비, 삼겹살 및 등뼈 등이 주로 수입됨

## ■ 양돈(養豚) 업계 당면현안 및 생산성 증가노력

### 가. 당면현안

- 미국 최대 돼지고기 생산·수출업체인 Smithfield food회사의 CEO인 Larry pope는 미 정부의 에탄올 정책으로 곡물사료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소매업체의 친환경 제품 요구와 러시아 등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올라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함
- 경기침체를 이유로 Wal-mart, Subway 등에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항생제, 이력추적, 동물복지 등의 프로그램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우는 실정

\*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5년까지 임신한 가축에 대한 충분한 사육공간 제공을 규정한 Livestock housing system법을 통과시킴

\* 3.9일자 미국 축산전문잡지(feedstuffs)에 의하면 재생가능에너지협회 등은 에탄올 생산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해 차량 가솔린과 에탄올 혼합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개정하여 줄것을 미 연방 EPA에 요청(9개월내 청원 답변예정)

### 나. 생산성 증가 방안 연구결과

- 캔자스대학 Steve S. Dritz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양돈산업은 1930년대부터 평균 2%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옴

- 어미돼지의 번식주기 향상(89년 2.26회에서 '07년 평균 2.4회), 어린돼지의 이유 시기 단축(23.9일에서 19.1일), 어미돼지 한 마리당 새끼돼지 평균 출산자수 (89년 9.4두에서 '07년 11.3두) 및 수출물량 확대 등이 주요 요인

## 미국 양돈업계의 생산성 향상 추이

구 분	1989	2007
년간 어미돼지의 번식주기(litters/sow/year)	2.26/년	2.40/년
어미 돼지 한 마리당 이유단계로 성장한 애기돼지 평균수(Pig/litter)	19.1두/년	24두/년
애기돼지 (preweaned) 평균사망률	14.1%	10.7%
어미돼지 평균 사망률	4.6%	7.2%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전세계 수출금액 (단위 :천불)	394,680	3,15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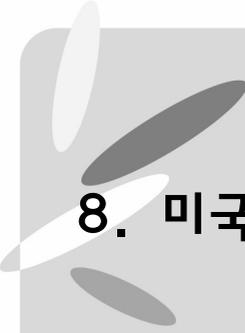
※ 자료출처 : Steve S. Dritz교수, US Trade statics

- 미국 양돈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로 어린돼지의 사망비율 (07년 출생한 돼지의 10.7% 사망)을 낮추고, 사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매년 2-3% 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함

\* 최근 3년간 돼지 사육비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옥수수 등 곡물사료가격이 매우 불안정(최저 1.56\$/bushel(56파운드)~ 최대 7.38/bushel)하여 사육단계에 따른 곡물 사료의 효율적 이용이 더욱 필요해짐

- 다국적 동물약품회사 Elanco의 Matt Ritter 박사와 일리노이대 및 아이오와 주립대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도축장으로 운송되던 돼지의 약 0.6%가 운송중 죽거나 운송중 기립불능 등 부상으로 인해 도축이 금지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매년 50~100 백만불이라고 추정함

- 농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National Pork board's TQA program의 돼지 운송 및 수송 프로그램을 각 회사의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반영토록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것을 권고함



## 8. 미국 식료품가격 하락현상과 그 배경

| aT 김주희

(출처: Chicago Tribune)

- 200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식료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27일자 경제섹션을 통해 보도했다.
- 노동 통계국에 의하면 작년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식료품 가격이 무려 5.4%가 올랐는데, 2008년 후반 석유, 옥수수, 밀 그리고 대두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식료품가격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식품 가격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 다음은 주요 3대 식품의 소매가 하락 배경이다.
  - 우유 : 1월과 비교해서 2월 소매가가 5.7% 하락했으며, 생산비도 일년 새 10%나 줄었다. 2005년 이후 세계적인 우유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농가에서는 41만 8천 마리의 젖소가 늘어났다.
  - 달걀 : 생산비용의 60%나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이 현재 4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달걀가격도 하락했다.

- 쇠고기 : 현재 초이스 급 sirloin steak (등심) 가격이 파운드당 \$5.86이다 이는 USDA가 가격을 기록한 200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쇠고기 연구가인 케빈 쿡은 겨울날씨가 온화하면 소들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이에 따라 마블링이 잘 발달한다고 한다. 마블링이 좋은 쇠고기는 초이스 등급을 받게 되며 결국 초이스급 쇠고기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9. "빌게이츠재단" 저개발 국가를 위해 작물연구에 24백만불 투자 결정

농진청 양보석

(출처: The Seattle Times, '09. 3. 30)

-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의 생활 증진을 위해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과 공동으로 5년간 각각 24만불씩 총 48만불의 자금을 작물연구 분야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원되는 작물 연구 분야는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가뭄, 질병 등 재해저항성 작물 개발, 토양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분야이다.
- 게이츠재단의 Rob Horsch에 따르면 "이번 NSF와의 공동 Project는 전세계 연구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NSF의 Deborah Delmer는 "이 project는 생명공학이 도구이다"라고 하였으며 project의 이름을 BREAD (Basic Research to E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라고 명명하였다.
- 본 BREAD는 NSF에 의하여 운영이 되며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금년 6월 초에 공모를 추진 중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제공하며 최초의 예산은 2010년 초에 지급이 될 것이다.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1.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정철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김연실

### 2. EU 농업 및 농업무역 관련정책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 3. EU 2008~2015 농업시장전망

EU 집행위 농업 및 농촌총국 발표(2009.3월)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번역

### 4.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원태

### 5. 한국-뉴질랜드 농업현황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이명기

### 6.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29차 아태총회를 다녀와서」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부자들은 누구나 실천하는 생활 습관 5

- 01 간접경험의 축적 / 책을 많이 읽어라
- 02 정보습득에 대한 투자 / 경제를 공부하라
- 03 인생을 두 배로 사는 방법 / 새벽에 일어나라
- 04 돈 벌게 해주는 재산 / 인맥을 관리하라
- 05 최상의 컨디션 유지법 / 끊임없이 운동하라

- 부자 되는 생활 습관 中





# 1.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정철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김연실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지난 11월의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런던정상회의는 지난 합의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룸.

이번 런던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이머징마켓의 국제금융 감독 참가권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지난 워싱턴 정상 회의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악화로 금융보호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향후 FSB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금융규제의 개선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를 국내의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관행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야 할 것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함.

한편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비준과 함께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전략적 FTA 추진 확대를 통한 무역 자유화 정책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1. 배경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국제공조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로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했음을 의미함.

회원국 구성에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G-20 체제는 지난 2008년 11월 개최된 워싱턴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변화된 세계경제질서를 반영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로 부상함.

그 성과 중의 하나로, 워싱턴 G-20 정상회의 때 합의한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의 회원국 확대가 금년 3월 FSF 본회의에서 확정됨.

이로써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개도국들이 대거 신규회원으로 가입, 기존 선진국 위주의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

G-20 국가들이 거시경제정책의 공조에 합의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에 나선 것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발현된 것으로, 이는 워싱턴 G-20 정상회의가 이룬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음.

표 1 G-20 국가별 경기부양규모

(단위: 억 달러)

국 가	경기부양 규모	GDP 대비	국 가	경기부양 규모	GDP 대비
미 국	8,410	5.9%	프랑스	210	0.7%
중 국	2,040	4.8%	호 주	190	1.8%
일 본	1,040	2.2%	인도네시아	130	2.4%
독 일	1,300	3.4%	멕시코	110	1.0%
스페인	750	4.5%	브라질	90	0.5%
사우디 아라비아	500	9.4%	남아프리카 공화국	80	2.6%
캐나다	440	2.8%	이탈리아	70	0.3%
영 국	410	1.5%	인 도	70	0.5%
러시아	300	1.7%	아르헨티나	40	1.3%
한 국	260	2.7%	터 기	-	-

4월 2일 개최된 런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입장차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워싱턴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이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던 것에 반해,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명기된 실행방안이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감독·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보강,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룸.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의 올해 말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G-20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향후 G-20 체제가 대표적인 다자체제로서 세계경제 논의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임.

## 2. 런던 G-20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2008년 처음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에는 ‘C금융정상회의’라 불릴 만큼 주로 금융 분야의 쟁점 사안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는 국제금융기구의 추가 재원 확충,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지속 추진,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중시 등 다양한 이슈를 실천적으로 접근함.

- 합의문의 주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총 1.1조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총 8,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키로 함.

IMF는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함. 우선 IMF 회원국들이 2,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규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과 결합하여 최대 5,000억 달러까지 자금을 확보하도록 함. 여기에 2,500억 달러의 SDR을 확충하여 글로벌 유동성을 증진시키고 이중 1,000억 달러는 이머징마켓과 개도국 지원에 사용토록 함.

다자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에 의한 대출한도는 최소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여 저소득국가에 지원하고 모든 MDBs들이 적정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함.

여기에 향후 2년 동안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보하기로 함.

표 2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달러)

기관	내용		규모		
국제 금융 기구	IMF	IMF 회원들에 의한 자금조성	2,500억	최대 5,000억	7,500억
		신규차입협정(NAB)을 통한 추가자금 확보	2,500억		
		SDR할당에 의한 자금 확충	2,500억		
MDB	다자개발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최소 1,000억			
무역 금융	수출신용기관 또는 투자기관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무역금융 확보		2,500억		
총			1조 1,000억		

총 1.1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현 금융위기의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함.

이는 G-20 체제 내에서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보임. 구체적인 자금조성 안(案)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규모 또한 제시했다는 점에서 G-20의 협의 및 조정 시스템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방증함.

## 2) 향후 금융안정화이사회(FSB)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야

금번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 이사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에 합의함.

앞으로 FSB는 금융기관, 금융상품(헤지펀드 포함),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담당하는 동시에,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회계기준, 가치평가기준, 보수 및 보상체계의 원칙 등에서 일관되고 단일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G-20 참가국들은 FSB가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해 조기 정보 기능을 수행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제공하도록 합의함.

## 3) 보호무역주의 저지, 재차 강조

작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도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동결(stand-still)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무역장벽 철폐와 도하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주창한 바 있으나, 자국의 경제회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새로운 조치들이 속출함.

금번 런던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조치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배격하기로 재천명하고 이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한편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성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로 합의함.

DDA 협상 타결이 세계경제 성장에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 4) 최빈국들을 위한 국제사회안전망 확충

G-20 국가들은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이 현 금융위기에 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공평(fair)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과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향후 2~3년간 IMF 금 판매 자금과 잉여금에서 60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함.

고용기회의 창출과 공정하고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육성에 힘쓰는 한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재정지출이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여 금년 12월 코펜하겐 UN기후변화회 기관 내용 규모 회의에서 합의한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 5) 차기 정상회의 개최 약속

정상들은 합의된 내용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연내 차기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함. 이는 G-20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임.

표 3 런던 G-20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주요 합의 사항
<p>□ 국제금융기관 및 무역금융을 통해 1.1조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확장 정책 등을 통해 1,900만 개 일자리 창출, 내년 말까지 5조 달러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 녹색경제로의 이전 가속화</li> <li>○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의 배경</li> </ul>
<p>□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안정화포럼(FSF)은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이를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li> <li>○ FSB는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을 보고</li> <li>○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금융상품·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시 범위 확대</li> <li>○ 중요 금융회사의 보수·보상체계는 FSF의 강화된 새 원칙 이행</li> <li>○ 경제회복 시 은행자본의 양적·질적 제고 등을 도모하며,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li> <li>○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 강화</li> <li>○ 단일 회계기준과 가치평가에 관한 일관성 확립 노력</li> <li>○ 신용평가기관 등록과 규제 확대 및 국제행동규범 준수 확보</li> </ul>
<p>□ 국제금융기구 역할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여 IMF를 포함한 IFI의 역할을 더욱 강화</li> <li>○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8,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동의</li> <li>○ IMF 회원들이 즉각적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NAB와 결합하여 최대 5,000억 달러로 확대</li> <li>○ 다자개발은행(MDBs)의 대출한도는 1,000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li> <li>○ IMF, 새로운 탄력적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도입</li> <li>○ 세계유동성 확충을 위해 SDR 할당을 통한 2,500억 달러의 자본 확충</li> <li>○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있어 IMF와 세계은행의 쿼터 및 발언권 개혁안은 각각 2011년, 2010년까지 완료</li> <li>○ 국제금융기구의 대표 및 고위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을 둔 선출절차에 의해 임명</li> </ul>
<p>□ 보호무역주의 배경 및 세계무역 투자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싱턴 정상회의의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경, 동 합의안은 2010년까지 연장</li> <li>○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금융 보호주의의 배경</li> <li>○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즉각 WTO에 보고하고, WTO는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호무역주의 시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li> <li>○ 수출신용기관 또는 투자기관 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보</li> <li>○ DDA 협상의 균형 잡힌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li> </ul>
<p>□ 공평·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금융위기에 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약속</li> <li>○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 및 무역증진을 위해 500억 달러 제공</li> <li>○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신속적인 무상원조를 위해 IMF 금 판매 자금과 잉여금에서 60억 달러 제공</li> <li>○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및 새로운 저탄소 사업 기회 확대에 노력</li> </ul>

### 3. 시사점

#### 1) 금융규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의 퇴조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규제의 강화임.

특히 유럽권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신용파생상품,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고, 미국도 이에 동조함.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실자산은 회계장부상 자본투자(equitycapital) 부분에서 먼저 상각되기 때문에 상각 후 자기자본 비중이 BIS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정부의 자의로 이를 확충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됨.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정부가 회생의지를 보이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게 됨.

부실자산 정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와 민관합동투자프로그램(PPPPI: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부실자산의 평가와 자본의 확충 기준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함.

또한 만기가 있는 유동화대출상품 등을 통해 주택보유자의 모기지 부채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금융규제의 강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금융시장 감독 행태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

금융상품 가격 결정에서 수익률보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금융상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 부문에서도 G-20 국가가 FSF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감독기구의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허용되었고, IMF 내 지배구조에도 이머징마켓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금융 감독 과정에서 이머징마켓의 의견이 수용되는 길이 열림.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제거하였으나,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회계기준, 헤지펀드규제 등 국제금융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규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됨.

단,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개념이 규제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신(新)금융규제와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2) 경기부양정책 국제공조의 한계

G-20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그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무역량의 감소와 국내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별로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함.

IMF는 2009년도에 G-20 전체 평균으로 GDP 대비 3.5%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은 평균 7% 수준, 이머징마켓은 평균 3%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의 공조가 필수적임.

그러나 재정지출의 국제공조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그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일본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안, 즉 각국별 재정확대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더 증가시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

대외부채 규모가 대외채권 규모에 비해 높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재정지출의 증대가 직접적으로 수입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 경기 부진과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증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반면, 유럽의 경우 유럽단일경제권 정책의 하나로서 경기후퇴시 자동안정화정책 (automatic stabilizer)을 시행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미 유럽연합 전체 GDP의 3.3%(4,000억 유로)를 재정정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유럽연합의 중장기적 재정운용정책 기조인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운영계획을 벗어나게 되므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

게다가 대외적으로 순 채권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과도한 부채증권 발행이 환율 등의 변화를 통해 자국의 재정확대로 인한 부채증가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중국, 독일 등 대외 순 채권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지출을 늘리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대외 순 채무국가의 경우에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또한 원유수출국가의 경우에도 오일머니를 재정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3) 금융보호주의에 대한 경계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라는 용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 등 자국 은행들에 대해 해외대출을 억제하고 자국의 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지칭한 데서 시작된 용어임.

선진국 금융기관이 호황기에 개도국에 자본을 투자했다가 불황기에는 개도국의 사정에 상관없이 자금을 회수하여 개도국의 유동성 부족을 촉발하거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국통화의 고의적인 평가절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금융보호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로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이머징마켓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보호주의의 첫 단계로, 궁극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가 심해지면 한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 국가들은 외화 차입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달러 부족 사태를 겪을 우려도 존재함.

금융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2009년도 이머징마켓으로 유입되는 민간자본의 투자 규모는 2007년보다 82%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금융기구(IIF)의 추산에 따르면, 특히 올해 동구권 국가에 유입되는 자금은 작년의 2,5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새로운 은행규제방안, 경기 부양자금의 자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 조항금지 등 금융보호주의를 저지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보다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금융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4) 보호무역주의 배경 재확인

G-20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모든 조치를 배격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무역자유화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사항임.

세계경기의 악화로 세계 교역량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촉발된 관세보복조치라는 대공황 당시의 역사적 경험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무역과 투자를 저해할만한 요소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 WTO에 통보키로 하고 WTO의 감독과 공시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조치들을 저지하는 데 일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5) 무역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한 세계 무역 활성화

세계교역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세계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무역금융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무역활성화의 당면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자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음.

브라운 총리의 제안금액보다 확대된 규모로 무역금융 자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무역에서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6)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DDA 협상타결이 시급하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DDA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정 초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008년 12월 각료회의 소집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간의 큰 입장 차이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 주요국들이 포함된 G-20 정상회의에서의 원칙적 합의는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는 주요국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G-20 비회원국인 개도국들이 향후 DDA 협상 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함.

## 4. 향후 과제

이번 런던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추세의 지속, 이머징 마켓의 국제금융 감독 참가권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지난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 비해 국제금융시장 개혁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아직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국제경기불황에 대한 재정정책 공조노력 부분에서 회원국간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였음.

또한 IMF의 자본 확충을 통한 유동성 공급안이 제시되었으나 조건부 대출기준(conditionality)이 여전히 유효하고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특히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 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FSB 등 국제금융 감독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제금융규제의 개선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금융 시장의 규제를 국내의 금융 시장 및 금융기관 관행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야 함.

이와 함께 G-20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단기유동성 공급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G-20 체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동아시아가 전 세계의 저축고 역할을 하고 있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의 자본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내 경제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역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통화스왑의 규모와 다자화 및 이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G-20 차원에서도 다자 또는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보호무역주의의 배격과 무역금융 재원 마련은 감소세를 보이는 세계 무역을 활성화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무역 관련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키로 하고 WTO의 감독기능을 촉구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새롭게 조성된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원칙적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은 환영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어떻게 쟁점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2008년 12월 각료회의 무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던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상입지 악화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능력과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는 향후 DDA 협상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DDA 협상 재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다보스 포럼이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적 합의가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조정을 요하는 DDA 협상 진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한편,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비준과 함께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전략적 FTA 추진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2. EU 농업 및 농업무역 관련정책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 이 글은 EC에 대한 WTO의 무역정책점검 보고서 내용중 농업관련 부문만 별도로 발췌 정리한 것임.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보고서의 기술순서를 바꾸었으나 문단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각주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하였음

### ● 농업현황 및 농업정책

#### 가. 주요 특징

GDP에서 농림수산업(축산, 임업, 수산업 포함)이 기여하는 비중은 EC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신규가입국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문으로 남아있음. 2005년 기준 약 1,790만명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3년에 비해 거의 10%가 줄어들었음. 프랑스는 가장 넓은 농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 독일이 뒤를 따르고 있음. 2005년 농가당 평균 경작지면적은 21ha이며 슬로바키아, 체크가 상당히 많은 평균경작 면적 (143ha, 131.7ha)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농업 흐름 분석

Table IV.1  
Selected agricultural statistics, 2005 and 2007

	Agricultural area ('000 hectares, 2005)	Final production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t basic prices (€ billion, 2007) <sup>a</sup>	External trade balance in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 million, 2007) <sup>b</sup>
Austria	2,690.2	6.0	485.8
Belgium	1,374.4	7.3	-1,947.7
Bulgaria	2,487.6	3.0	158.4
Cyprus	142.1	0.6	-102.3
Czech Republic	3,518.0	4.2	-5.8
Denmark	2,662.6	9.1	2,332.6
Estonia	906.8	0.6	155.4
Finland	2,292.3	4.1	293.9
France	27,490.4	64.7	8,300.6
Germany	16,931.9	45.2	-3,550.9
Greece	3,905.8	10.3	-147.0
Hungary	4,045.3	6.5	571.8
Ireland	4,139.2	6.0	3,477.6
Italy	12,405.9	43.1	-427.6
Latvia	1,773.8	0.9	98.9
Lithuania	2,648.9	2.0	449.6
Luxembourg	130.9	0.3	-45.0
Malta	10.3	0.1	-15.1
Netherlands	1,914.3	22.9	-3,362.8
Poland	15,477.2	19.8	419.7
Portugal	3,502.9	6.6	-584.0
Romania	10,337.1	13.2	-529.8
Slovak Republic	1,840.4	1.9	-13.9
Slovenia	488.8	1.1	-227.1
Spain	23,741.0	39.0	-2,574.5
Sweden	3,118.0	4.7	32.4
United Kingdom	14,961.6	21.6	-5,680.3
EC-27	161,617.9	343.8	-2,437.1

a Output is valued at basic prices, defined as the price received by producers, after deduction of taxes on products but including subsidies on products. Output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is made up of the sum of the output of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services, and of the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inseparable non-agricultural secondary activities.

b Extra EC-27 trade based on Harmonized System definition: Chapters 01 to 24.

EC-27의 농업총생산액은 2007년 3488억 유로임. 주요 생산품목은 우유(14%), 돼지(8.9%), 소(8.4%), 신선채소(8.4%)임. 주요 작물 (곡물, 유채, 사탕무)의 재배면적은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유채 재배면적이 2002~2006년 평균에 비해 2007년 31.5% 늘어난 반면 사탕무는 13% 감소함.

Table IV.2  
EC crop area  
('0000 hectares)

	Average 2002-06	2006	2007 <sup>a</sup>	% change 2007/2006	% change 2007/2002-06
Cereals (excluding rice)	59,368	57,010	57,870	1.5	-2.5
Common wheat	22,302	21,953	22,102	0.7	-0.9
Durum wheat	3,739	3,021	3,033	0.4	-18.9
Rye and maslin	2,720	2,422	2,572	6.2	-5.4
Barley	13,908	13,780	13,691	-0.6	-1.6
Oat and mixed grain	4,616	4,606	4,524	-1.8	-2.0
Grain maize	9,368	8,542	8,812	3.2	-5.9
Triticale	2,424	2,442	2,352	-3.7	-3.0
Rice	420	412	408	-0.9	-2.8
Sugar beet	2,254	2,030	1,970	-2.9	-12.6
Rapeseed	4,605	5,333	6,057	13.6	31.5

EC 식품가격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국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식품 물가상승률은 2008년 8월말 7.3%였으며 그리스 4.5%, 라트비아 19.6%로 회원국별 차이가 있음. 가계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EC-27 14%였으며 영국은 9%인 반면 루마니아는 34%나 차지함.

산림면적은 2005년 177백만ha로 EC-27 국토면적의 42%를 차지하며 회원국별로 산림면적비중이 다양한데 (몰타는 1%, 핀란드 77%) 이는 지리적, 기후적 다양성, 토지이용 전통의 차이점을 보여줌. 임업은 340만명을 고용하며 3500억유로의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간 (재)생산되는 산림자원의 약 60%만 활용하고 있음.

## 나. 공동농업정책 (CAP)

### (1) 개관

EC에 대한 마지막 무역정책점검 이후 설탕, 과일 및 채소, 포도주 분야의 시장 지향성을 제고하기위해 공동농업정책 개혁이 계속 추진됨. 바나나 및 면화에 대한 국내보조정책도 개혁되고 있음. 또한 공동농업정책 규제가 간소화되었으며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공동농업정책에 통합되었음.

OECD에 따르면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결과, 무역왜곡이 덜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총 생산자지추정치(PSE)의 1%(14억유로)에서 2007년 33%(324억유로)로 대폭 증가하였음. EC가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는 단일농가직접지불,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하의 생산자보조는 2007년 EU 농업보증기금(EAGF)하의 농가직접지원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많은 품목에 대해 생산연계보조금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원수준은 낮아졌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제한 직접지불제도가 생산연계보조로 전환되었음.

2007년 일반밀, 보리, 귀리, 유지종자, 달걀 등 특별한 상품생산과 연계된 보조(OECD에서 단일산품이전(SCTs)로 측정)는 거의 없어졌으나 설탕, 육류 (돼지고기 제외)의 경우에는 총 생산자 수입의 40~50% 수준으로 높음. 가격지지는 1986~88 총 PSE의 86%에서 2007년 35%로 상당히 줄어듦.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설탕, 육류의 경우 가격지지가 SCTs의 대부분(80~100%)을 차지함

전반적으로 EC의 PSE는 점검기간중 정책개혁과 세계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총 생산액의 25%수준이 되었음. 그러나 EC의 지지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음. 소비자지지 추정치(CSE)로 측정한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세금은 1986-88년 -37%에서 2007년 -10%로 감소하였는데 소비자의 부담(가격지지)를 예산지출로 전환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내용을 반영함.

공동농업정책 농업 및 농촌부문 재정지출은 2007년 현재 520억유로에 달하며 2008년에는 54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지출은 유럽농업보증기금(EAGF)와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EU 집행위와 회원국이 관리하고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에 의해 점검됨. 가장 큰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가 EAGF와 EAFRD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단일농가직불금, 단일면적직불금하의 직접지불은 농업지출 전체의 58%를 차지함. 다음으로 지출액이 큰 항목은 작물, 쇠고기에 대한 직접지원금과 농촌개발 사업임.

Table IV.3  
Transfers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EC, 1986-88 and 2005-07<sup>a</sup>

	1986-88	2005-07	2005	2006	2007 <sup>b</sup>
Total 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 million)	89,534	102,482	105,264	104,066	98,114
(%) <sup>c</sup>	40	29	32	31	26
Total Consumer Support Estimate (CSE) (€ million)	-67,886	-46,871	-43,936	-43,497	-33,445
(%) <sup>d</sup>	-37	-14	-16	-14	-10
Total Support Estimate (TSE) <sup>e</sup> (€ million)	104,804	117,515	121,142	119,372	112,030
(% of GDP)	2.69	1.02	1.11	1.04	0.91
Memo item: TSE (average of OECD countries) (%) of GDP	2.49	0.97	1.05	0.97	0.89

a EC-12 for 1986-88; EC-25 from 2005; EC-27 in 2007.

b Provisional.

c PSE as a percentage of total value of production (valued at domestic producer prices), adjusted to include direct payments and to exclude levies on production.

d CSE as a percentage of total value of consumption (valued at domestic producer prices).

e TSE is the annual monetary value of all gross transfers from taxpayers and consumers arising from policy measures that support agriculture, net of the associated budgetary receipts, regardless of their objectives and impacts on farm production and income, or consumption of farm products.

Table IV.4  
EAGF and EAFRD expenditures by EC Member State, 2007

	EAGF (€ million)	EAFRD (€ million)	EAGF + EAFRD (€ million)	Share in total EAGF + EAFRD (%)
Austria	746.8	628.2	1,375.3	2.7
Belgium	769.2	64.0	833.2	1.6
Bulgaria	0.2	...	0.2	0.0
Cyprus	27.5	26.7	54.2	0.1
Czech Republic	351.6	396.6	748.2	1.4
Denmark	1,083.5	...	1,083.5	2.1
Estonia	38.4	95.6	134.0	0.3
Finland	585.8	332.3	918.1	1.8
France	9,172.4	914.0	10,086.4	19.5
Germany	5,646.2	1,185.0	6,831.2	13.2
Greece	2,681.0	461.4	3,142.4	6.1
Hungary	473.2	570.8	1,044.0	2.0
Ireland	1,319.8	373.7	1,693.5	3.3
Italy	4,804.1	660.8	5,465.0	10.6
Latvia	54.8	...	54.8	0.1
Lithuania	168.2	261.0	429.1	0.8
Luxembourg	36.8	14.4	51.2	0.1
Malta	2.0	...	2.0	0.0
Netherlands	1,110.2	70.5	1,180.8	2.3
Poland	1,209.5	1,989.7	3,199.2	6.2
Portugal	705.1	535.5	1,240.6	2.4
Romania	6.9	...	6.9	0.0
Slovak Republic	157.6	303.2	460.8	0.9
Slovenia	49.0	149.5	198.6	0.4
Spain	5,874.9	15.8	5,890.7	11.4
Sweden	758.9	292.1	1,051.0	2.0
United Kingdom	3,950.8	172.5	4,123.3	8.0
EC-27	41,784.1	9,513.4	51,297.5	99.3
Community <sup>a</sup>	336.7	9.2	345.9	0.7
Total expenditure <sup>b</sup>	42,120.9	9,522.5	51,643.4	100

a Direct expenditure made by the Commission (EAGF) and Technical Assistance EAFRD.

b EAGF. An amount of €551.4 million, paid on the basis of the assigned revenue foreseen in Article 11 of Regulation 320/2006 (Temporary restructuring amounts in the sugar sector) is not included in the total.

Table IV.5  
Expenditures by the EAGF, 2007  
(€ million)

Sector	Total expenditure	Export refunds	Storage	Direct aids	Other intervention
Decoupled direct aids, of which:	30,369.1	..	..	30,639.1	..
SPS	28,119.3	..	..	28,119.3	..
SAPS	2,083.0	..	..	2,083.0	..
Separate sugar payment	166.7	..	..	166.7	..
Other direct aids	6,260.8	..	..	6,260.8	..
Additional amounts of aid	434.0	..	..	434.0	..
Ancillary direct aids <sup>a</sup>	-18.1	..	..	-18.1	..
Cereals	-133.3	41.8	-225.8	..	50.7
Sugar	455.5	509.3	-87.1	..	33.2
Olive oil	64.4	0.2	..	..	64.2
Dried fodder	154.1	..	..	..	154.1
Textile plants	20.0	..	0.6	..	19.5
Fruit and vegetables	1,249.9	21.7	0.4	..	1,227.7
Products of the wine-growing sector	1,453.1	14.0	242.2	..	1,196.9
Tobacco	7.6	..	..	..	7.6
Rice	-0.7	0.1	-0.8	..	..
Milk and milk products	638.2	513.4	-36.2	..	161.0
Beef and veal	98.3	46.2	0.0	..	52.0
Sheep meat and goat meat	0.0	..	..	..	0.0
Pig meat, eggs and poultry meat	173.8	111.2	..	..	62.7
Fishery products	25.1	..	..	..	25.1
Non-Annex I products	185.2	185.2	..	..	..
Food programmes	249.2	1.6	..	..	247.6
POSEI	201.2	..	..	..	201.2
Rural development	-26.8	..	..	..	-26.8
Policy strategy and coordination	36.2	..	..	..	36.2
Audit of agricultural expenditure	-93.8	..	..	..	-93.8
Settlement of disputes	0.0	..	..	..	0.0
Promotion and information measures	50.6	..	..	..	50.6
Veterinary and plant-health measures	260.3	..	..	..	260.3
Other measures/other products	6.9	..	..	..	6.9
<b>Total EAGF expenditure</b>	<b>42,120.9</b>	<b>1,444.7</b>	<b>-106.7</b>	<b>37,045.8</b>	<b>3,737.1</b>
Sugar Restructuring Fund <sup>b</sup>	551.4	..	..	..	..
<b>Total 2007 expenditure</b>	<b>42,672.3</b>	..	..	..	..

a Outstanding balances, small producers, agrimonetary aids, etc.

b Payments made on the basis of the assigned revenue foreseen in Article 11 of Regulation 320/2006 (Temporary restructuring amounts in the sugar sector).

Note: SPS: Single Payment Scheme; SAPS: Single Area Payment Scheme; and POSEI: *Programme d'options spécifiques à l'éloignement et l'insularité* (Specific Options for Remoteness and Insularity Programme).

EC가 12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농업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한 이행약속은 WTO에서 정식으로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고 EC 이행계획에 통합되지 않았음. 2005/06, 2006/07년에 통보된 EC의 마지막 수출보조금 실적은 각각 19억2천만유로, 14억 6천만 유로였음 (2004/05년 26억 3천만 유로보다 줄어듦). 2006/07 수출보조금의 1/3은 설탕에 지급되었고 낙농품에도 1/3이 지급되었음.

EU 회원국들은 EC의 지침범위내에서 각국의 수요에 맞는 농촌개발수단을 선택하는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음. 농업환경수단, 조기은퇴계획, 녹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등 선택할 수 있는 약 40여가지 정책수단 메뉴가 마련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회원국이 국가전략과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EU 집행위가 승인함. 유럽농업보증기금(EAGGF)에서 지원하는 농촌개발지출도 2005년 68억유로에서 2006년 77억유로로 늘어났는데 이는 직접지불을 줄이고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modulation)한데 기인함. 2007년에는 2007-13년간 908억유로를 농촌개발에 지원할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설치되었음. 농촌개발 재원은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세가지 주제(axes)별로 할당되었으며 LEADER식 접근방식으로 보완됨.

임업정책은 회원국의 권한에 속함. 산림상임위원회(Standing Forestry Committee)는 회원국의 산림행정을 대표하며 EC의 농촌 및 환경정책에서 산림관련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협의포럼 기능을 하고 있음. EC의 농촌개발전략은 산림분야에 대한 EC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EC의 산림분야 국가보조지침하에서 산림녹화 캠페인, 농림시스템 구축, 농생태적, 보호적(식물위생), 레크리에이션 기능 지원이 승인되고 있음.

EC는 WTO 농업협정상 이행약속과 공동농업정책 틀 안에서 관세할당제도(tariff quotas)를 유지하고 있음. ISIC를 이용하면 농림수산물 단순평균 MFN 관세율은 9.3%이며 최대 관세율은 139.6%임. 일반적으로 EC 역내 생산물과 경쟁이 없는 농산물의 관세는 낮으나 (예: 커피, 차 등), 일부 기초 및 가공농산물은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쿼터밖 물량과 비특혜관세 수입(수출) 절차는 간소화되었는데 수입면허(import license)가 필요한 품목을 대폭 줄였으며 (HS 8단위로 약 500개를 2008/09년부터 65개로 줄임) 수출면허 요구품목도 43개 품목유형임. 결과적으로 행정 거래비용이 상당 줄어들었음. 위생검역조치(SPS)는 강화됨.

공동농업정책 법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EC는 21개의 공동시장제도(Common Market Organization) 관련규정을 204개 조항으로 구성된 한 개의 공동시장제도규정으로 통합하였음. 단일 공동시장제도 규정은 시장개입, 유통 및 생산,

제3국과의 교역과 경쟁에 관한 내용(Chapter)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시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농산물(누에, 농산물 유래 에틸알콜, 양봉)에 대한 시장수단도 포함하고 있음. 새로운 규정은 2008.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개별 품목별 공동시장제도 관리위원회도 단일 관리위원회로 대체되었음.

2008. 11월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소위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Health Check)라는 추가농업개혁에 합의함. 건전성평가개혁하의 새로운 조치들은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개혁조치들은 공동농업정책 시장개입수단 (의무 휴경, 곡물, 돼지고기 및 낙농품 구매, 우유쿼터), 농촌개발정책, 단일농가직불금 등 세가지 주요분야와 관련이 있음. 몇몇 회원국에서 유지하고 있던 생산연계 직불금은 생산 비연계 단일농가직불금으로 전환되었음. 다만, 송아지, 염소, 양 생산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회원국이 현행수준의 생산연계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U집행위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조치로 인해 총직접지불금중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금 비율이 91.4%로 늘어날 것이라고 함.

현행 상호준수의무규율(cross-compliance)에 따라 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은 환경, 동물복지, 식품품질기준과 연계되어 있음. 만약 농민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지원 감축에 직면하게 됨. 건전성평가개혁으로 농민의 책임과 무관한 기준들은 철회되고 수질관리 등 새로운 요건이 새로 추가되는 등 상호준수의무 규정이 간소화될 것임.

현재 단일농가직불금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국가별 직불금예산 상한의 10%까지 유보하였다가 환경관련조치 또는 동일분야의 농산물 품질과 유통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건전성평가개혁으로 이에 대한 회원국의 유연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일분야에 사용될 필요가 없으며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낙농,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전업농가를 위해 사용이 가능함. 또한 동 자금을 자연재해보험, 동물질병상호부조기금 등 위기관리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음.

현재 연 5천유로 이상 직접지불금을 받는 모든 농가의 직불금중 5%를 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하고 있음(modulation). 건전성평가개혁 결과 이 비율은 2012년까지 10%로 늘어나며 30만유로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4%를 감하게 됨.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회원국이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수질관리, 생물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거나 우유생산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 하는데 따른 영향을 줄이는 조치에 사용할 수 있음. 농촌개발 프로그램중 젊은 농가에 대한 투자지원액은 5만5천유로에서 7만유로로 증액됨.

## (2) 품목별 정책

### ■ 곡물

EC-27 경작면적의 절반이상(약 55.3백만ha)에 곡물을 재배하여 농업총생산액의 13%인 457억유로를 생산함. 프랑스는 대표적인 곡물생산국으로 EC 전체 수확량의 20%를 차지하며 독일, 폴란드, 스페인이 뒤를 따르고 있음. 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7/08 EC-27 곡물생산량은 258.4백만톤으로 예상됨. 전통적으로 순곡물수출국이었던 EC는 2007/08년도에는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음. 곡물 공급량의 약 60%는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곡물은 EC 식품음료산업의 주요한 투입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전체 곡물생산 및 이용의 2%미만)

EC-27이 세계 쌀생산(약 2.7백만톤) 및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이태리와 스페인이 주요 쌀 생산국이며 쌀 소비는 늘고 있음. EC는 쌀 순수입국이며 쌀 자급률은 약 66%수준임.(EC-25 기준, 2005/06년)

주요 정책수단 (의무휴경, 일부곡물에 대한 수출보조)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 곡물가격 때문에 중단되었음. 시장개입시스템(시장가격이 개입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시장에서 과잉생산물량을 구매)은 밀, 보리, 수수, 옥수수, 쌀에 대해 유지되고 있음.

수매(public intervention) 재고량은 2005/06년말 14백만톤 (이중 옥수수 5.6백만톤)에서 1년뒤 2.4백만톤 (주로 옥수수)으로 줄어듬. 2009/10년부터는 옥수수 수매가 중단될 예정이며 그 결과 2008-14년간 6178억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거의 모든 곡물재고물량은 매매되어 소진되었음. 건전성평가개혁으로 보리, 수수에 대한 곡물에 대한 수매는 중단될 것임. 밀에 대해서는 수매가 가능하나 수매기간중 101.3유로/톤 가격에 3백만톤만 가능함.

Table IV.6  
Reference prices for products subject to intervention measures, 2008

Product	Reference price	Intervention price	
Cereals <sup>a</sup>	€101.31 per tonne:	increased by: €0.46 per tonne in November, €0.92 in December, €1.38 in January, €1.84 in February, €2.30 in March, €2.76 in April, €3.22 in May, €3.22 in June maize: intervention volumes limited to 1.5 million tonnes in 2007/08 and 700,000 tonnes in 2008/09; zero as from 2009/10	Equal to the reference price
Paddy rice <sup>a</sup>	€150 per tonne:	intervention limited to 75,000 tonnes per year	Equal to the reference price
Sugar <sup>b</sup>			
White sugar	€541.5 per tonne:	for marketing year 2008/2009	80% of the reference price fixed for the marketing year following the marketing year during which the offer is lodged
Raw sugar	€404.4 per tonne:	as from marketing year 2009/2010	
	€448.8 per tonne: €335.2 per tonne:	for marketing year 2008/2009 as from marketing year 2009/2010	
Beef and veal	€1,560 per tonne:	for carcasses of male bovine animals	Safety-net intervention price
Dairy products	€246.39 per 100 kg: €169.80 per 100 kg:	for butter for skimmed milk powder	90% of the reference price Equal to the reference price
Pig meat	€1,509.36 per tonne:	for pig carcasses of standard quality	Fixed by the Commission for pig carcasses of standard quality; may not be more than 92% or less than 78% of the reference price

a The reference prices for cereals and rice relate to the wholesale stage for goods delivered to the warehouse, before unloading.  
b The prices apply to unpacked sugar, ex-factory of standard quality.

Source: Council Regulation (EC) No. 1234/2007, as amended by Council Regulation (EC) No. 361/2008; and Council Regulation (EC) 1784/2003.

의무휴경조치로 3.8백만ha가 휴경되었으나 휴경의무휴경제도를 일시 유예하여 2007/08년 곡물재배면적이 1.6~2.9백만ha가 늘어나고 생산은 최소 10백만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생산자는 유지종자재배에서 곡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건전성 평가개혁에서는 의무휴경제도를 폐지함.

곡물에 대한 MFN 관세율은 평균 49.4%이며 최대 138.2%에 이릅니다. 밀, 호밀, 수수, 기장, 메밀에 대한 관세율은 2009년 6.30.까지 일시 폐지됨. EC 쌀 수입의 2/3는 특혜조건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Basmati 쌀 수입은 원산지 판정을 위한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음.

곡물생산자는 단일농가직불금 제도하에서 생산 비연계 소득보조혜택을 받고 있음. 단, 일부 회원국(프랑스와 스페인)은 2010년까지 과거 작물에 대해 지급하던 직불금의 25%를 유보할 것임.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에서 durum wheat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40유로/ha의 특별작물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음. 쌀 생산자를 위한 생산연계직불금은 생산 비연계 직불금으로 전환, 단일농가직불금 제도에 통합되었음. 단,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쌀 생산자들은 특정곡물지원금을 지원받게 됨.

### ■ 유지종자와 식물성 기름

유지종자는 EC 전체 농업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2.2%)를 차지하고 있으나 불가리아와 체코는 8%에 이릅니다. EC는 유지종자와 관련 식물성 기름을 많이 수입하는 순수입국이며 2007/08년 유지종자의 생산과 소비는 24백만톤과 48.7백만톤으로 추정됨. EC에서 가장 중요한 유지종자는 유채이며 해바라기, 대두가 뒤를 따르고 있음. 독일과 프랑스가 EC-27 전체 유채종자생산의 60%를 차지함. 유지종자의 MFN 관세율은 평균 1.6%이며 최대 9.1%임. 대두수입은 무관세임.

EC에서 유지종자의 주사용처는 가축사료(주로 대두와 유채종자분), 식품(해바라기 기름), 바이오연료(주로 유채기름)임. 유채는 가장 중요한 바이오연료작물로서 약 3.6백만ha(경작가능면적의 3.4%)에서 바이오연료 목적의 유채를 재배하고 있음. 연료목적의 전체 유지종자 이용은 2007/08년 9.2백만톤으로 추정되어 2004/05년에 비해 두배 증가함. 1992년 이후 생산자들은 휴경지에서 유채와 같은 비 식용목적의 작물재배가 허용되었음. 휴경지의 토지에서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작물보조금 (45유로/ha, EC 전체로 최대 2백만ha)을 지원받았음. 그러나 건전성평가개혁으로 2010년부터는 이 보조금은 폐지됨.

## ■ 설탕과 에틸알콜

EC는 세계 설탕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브라질과 인도에 이어 세계 설탕생산의 12%를 생산하는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설탕개혁이후 2006/07년 설탕 순수입국으로 전환됨.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EC 설탕생산의 60%를 차지.

Table IV.7  
Selected sugar indicators, 2005-08

	Production (*000 tonnes)			Yield (tonnes/hectare)	Share in production 2007/08 (%)
	2005/06	2006/07	2007/08	2007/08	
Austria	406	414	463	10.91	2.7
Belgium	854	863	880	10.26	5.1
Bulgaria	..	..	7	3.50	0.04
Czech Republic	477	509	468	8.42	2.7
Denmark	466	352	382	12.2	2.2
Finland	146	127	84	5.23	0.5
France	4,007	4,708	4,680	12.46	27.2
Germany	3,898	3,220	4,110	10.12	23.9
Greece	306	185	102	7.27	0.6
Hungary	387	327	297	7.77	1.7
Italy	1,562	627	660	7.34	3.8
Ireland	200	0	0	..	0
Latvia	67	61	0	..	0
Lithuania	108	98	91	5.53	0.5
Netherlands	911	865	860	10.49	5.0
Poland	1,800	1,628	1,612	7.06	9.4
Portugal	68	38	13	9.47	0.1
Romania	..	..	108	4.27	0.6
Slovakia	211	184	148	7.39	0.9
Slovenia	47	46	0	..	0
Spain	1,054	1,007	772	10.02	4.5
Sweden	379	340	312	7.71	1.8
United Kingdom	1,300	1,100	1,150	10.75	6.7
EC <sup>a</sup>	18,677	16,701	17,198	9.76	100.0
Memo item: EC-27 sugar quota <sup>a</sup>	17,441	16,908	16,599	..	..

.. Not available.

a EC-25 for 2005/06 and 2006/07; EC-27 for 2007/08.

설탕 공동시장제도(CMO)에 규정된 주요한 무역정책수단은 관세, 관세할당과 특혜관세협정, 특별세이프가드(SSG), 공급관리(생산 킬터), 제도 가격과 시장개입 시스템, 설탕 및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보조임. 2006. 7.1. 설탕의 구조적 공급과잉과

수출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설탕제도가 시행됨. 새로운 설탕시장제도는 2014/15년까지 유지(궁극적으로는 단일 공동시장제도로 통합)되며 2006/07~2009/10년 (4년)간 설탕개혁이 시행됨. 그 기간동안 설탕생산쿼터가 감축되고 제도 가격도 인하되며 인하된 가격은 부분적으로 직접지불(생산 비연계)로 보상됨. EU 집행위에 따르면 2008년 10월까지 설탕 및 설탕가공품에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제도가격은 원당 및 백설탕 참조가격(reference price)과 사탕무에 대한 최소가격으로 고정되어 있음. 최소가격이란 설탕 제조업체가 생산쿼터내에서 사탕무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2009/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26.29유로/톤까지 인하됨. 원당 및 백설탕에 대한 개입가격은 참조가격으로 대체되었는데 설탕 구매가 4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임. 동 전환기간중 설탕에 대한 공공구매는 참조가격의 80% 수준에서 발동됨. 설탕참조가격은 2006/07 -2009/10년 기간중 36%가 낮아짐.

설탕에 대한 A쿼터, B쿼터는 하나의 쿼터로 통합되었으며 공급관리시스템은 2014/15년말까지 유지됨. 2010/11년까지 자발적 구조조정 계획(인센티브)을 시행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탕생산업체가 업계를 떠나고 설탕생산자가 설탕, isoglucose, inulin syrup 생산쿼터를 반납하도록 유도함. EC 변방지역(예:프랑스 해외영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구조조정 자금은 모든 설탕, isoglucose, inulin syrup 쿼터생산에 부과된 부과금으로 충당함. 추가 구조조정 인센티브는 2007. 9월 도입되었음.

4년 구조조정 말기에 EC 설탕쿼터는 12.5백만톤으로 줄어듦 (총 6백만톤 감축). 구조조정 이전 설탕은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몰타를 제외하고 EC 전역에서 생산됨. 이후 불가리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설탕생산을 포기하고 설탕쿼터를 반납함.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75개 설탕공장 (전체의 1/3이상)이 문을 닫았고 직접적으로 1만개, 간접적으로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또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가 그들의 inulin syrup 생산쿼터 (321천톤)를 반납하면서 EC에서 inulin syrup 생산이 중단됨. 반면 2005/06년에 비하여 isoglucose 생산쿼터는 순증함. 전체적으로 설탕개혁은 회원국의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EC 설탕산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산출량을 보이는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일부 회원국에서 설탕생산을 계속되고 있음. 회원국간 생산쿼터 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설탕부문은 보호수준이 높음. EC내 설탕가격은 세계시장가격의 세배수준임. 설탕 및 설탕제품의 수입은 관세할당 대상임. MFN 세율은 평균 35.7%이며 최고 세율은 604.3%에 이룸. Out of quota 수입에 대해서는 자주 추가 수입관세가 부과됨 (가격 기준 특별세이프가드).

국빈개도국, ACP 국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매년 EC가 정하는 보장가격의 혜택을 받으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시장접근이 주어짐. 특혜 시장접근이 주어진 ACP 국가에 대한 EC 가격감축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07-14년간 1조 2440억 유로가 별도 책정되어 있음.

ACP-EC 설탕의정서 (인도와도 유사한 설탕수입협정)는 2009. 10월부터 효력이 정지되며 동시에 EBA 이니셔티브와 EPA 협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으로 부터의 설탕수입이 좀더 자유화됨. ACP국가산 설탕의 수입은 2015년 10월부터 완전 자유화됨. 2009. 10.- 2015. 9월까지 non-LDC ACP 국가로 부터의 설탕수입은 과도기 세이프가드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다음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관세 시장접근은 중단됨. (i) 모든 ACP 국가산 수입이 3.5백만톤을 초과 (ii) non-LDC ACP 국가산 수입이 다음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 2009/10년 1.38백만톤, 2010/11년 1.45백만톤, 2011/12-2014/15년 1.60백만톤.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무 이용은 여전히 적은 수준(0.8백만톤 설탕상당치로 추정)이며 에탄올 생산용 사탕무 생산은 더 이상 쿼터 적용대상이 아님. 에탄올은

주로 80%이상 강화 에틸알코올에 해당하는 두가지 세 번으로 수입되는데 CN 2207 10 00의 실행관세율은 19.2유로/hl, CN 2207 20 00 의 실행관세율은 10.2유로/hl 임.

독일은 알콜 독점시스템 정책을 통해 농산물을 이용한 에틸알콜 생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010년말까지 매년 110백만유로까지 지원).

### ■ 축산과 육류

EC가 27개국으로 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라 양 및 염소고기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2007년에 7 - 9%의 생산증가가 있었음.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시장은 농업부문에서 가장 많이 보호되는 분야로 남아있으며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어 있음. 2003년 이후 EC는 쇠고기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7년에는 닭고기 순수입국이 되었음. 축산물에 대한 무역정책수단에는 관세, 시장개입, 민간저장, 수출보조금이 있음. 축산물에 대한 MFN 세율은 평균 25.4%이며 최대 204.2%임.

비록 축산부분에 대해 지원은 생산 비연계 단일농가직불금으로 통합되었지만 몇몇 회원국에서는 송아지, 염소, 양에 대한 보조금, 소 도축보조금 등 생산과 연계된 지원금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건전성평가개혁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시장개입은 폐지되었음. 가축과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포함)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유지되고 있음.

역내 및 외국산 동물 및 동물성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위생검역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 낙농품

우유는 EC 전역에서 생산되며 EC 농업생산액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 (481억 유로, 2007 농업생산액의 14%). 스칸디나비아, 발틱 국가, 체크, 룩셈부르크에서 낙농은

더욱 중요하나(농업생산액의 20~34%)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이 EC 전체 우유생산의 70%를 차지함.(147.2백만톤)

EC는 낙농품, 특히 치즈 주요 수출국으로 전세계 버터시장의 27%, 치즈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치즈 및 버터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함. 치즈와 신선 낙농품 수요가 EC 우유생산의 원동력이자 주요 요인이지만 생산쿼터 제약을 받고 있음. 새로운 영양 보건규정이 기능성 낙농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007년에는 시유(drinking milk)시장은 완전 자유화되어 탈지, 전지 모두 서로 다른 지방성분의 우유 소매가 허용되었음.

세계시장가격이 높아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중단되었으나 (2006.6월 탈지분유, 2007년 2월 전지분유, 2007년 6월 치즈 및 버터) 2009년 1월 중단된 수출보조금이 모두 재도입 되었음. 2008년 4월 EC는 우유생산쿼터를 2% 증량하여 EC-27개국 전체 쿼터는 142백만톤이 되었음(이중 4백만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일부 국가는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일부 국가는 쿼터를 초과하였으나 국가간 쿼터이전은 없었음. 생산 쿼터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 27.83유로/우유100kg의 벌금이 부과됨. 생산쿼터 이전에 대한 세부지침은 회원국별로 상이함. 우유쿼터 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에서 결정되나 일부 국가는 국가에서 결정함. 그러나 이러한 공급관리 시스템은 건전성평가 개혁에 따라 폐지될 것임. 2015년 3월말 예정된 우유생산쿼터 폐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유쿼터를 2009/10 ~ 2013/14년까지 매년 1%씩 증가시킴. 2009/10 - 2010/11년 기간중에는 2008/09년 우유생산쿼터 대비 6%이상 초과 생산한 회원국은 정상 벌금보다 50% 높은 벌금을 납부해야 함.

EC는 역내시장에서 낙농부문에 많은 보조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 산업용 버터이용 보조금 지원은 2007년 4월부터 중단되었고 집행위는 동 보조금 폐지를 제안하였음. 2006년 10월부터 탈지분유의 사료용 이용과 탈지우유의 산업용 이용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2006-08년 탈지분유와 2007~08년 버터에 대한 시장개입이

없었음. 탈지분유에 대한 민간저장지원도 2007년 폐지되었으나 생산정점(peak) 기간중 시장개입을 피하기 위해 버터에 대한 강제 민간저장은 유지되고 있음. 건전성평가 개혁에 의해 버터에 대한 수매는 연간 3만톤, 탈지분유는 108천톤으로 제한되었음.

낙농품에 대한 MFN 평균세율은 32.4%이며 최대 189.7%임. 일반적으로 이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out of quota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 ■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부문(바나나 제외)은 EC에서 중요한 활동영역임. 토마토, 사과, 오렌지, 당근, 양파와 배가 주요 품목임. 스페인과 이태리가 가장 큰 과일 및 채소 생산국(전체물량의 50% 이상)임. EC는 세계 1위 과일 및 채소 수입국이자 제2위 수출국임. 이 부문의 무역적자는 지난 3년평균 과일 80억유로 채소 3억유로였음.

과일과 채소 공동시장제도는 2008년 1월부터 단일 공동시장제도의 틀에 통합되면서 2003년 공동농업정책개혁과 맥을 같이하게 되었음.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토지는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하에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5년 과도기중 일부 회원국에서는 생산연계직불금(생산량과 연계되지 않고 면적과 연계)을 가공용 딸기, 라즈베리에 지급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신선 무화과, 꿀, 포도, 배, 복숭아, 자두에 지급하고 있음.

생산자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수단은 “시장철수”와 조기수확/미수확(위기예방 미 관리) 조치가 있음. 이러한 조치 실행은 생산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데 때 생산자조직의 생산판매액의 0.5% 범위내에서 비용의 50%를 EC에서 지원함. 시장에 판매되지 않는 과일과 채소는 주로 학교, 병원, 자선기관에 무료 분배되지만 폐기, 증류, 비식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시장에서 생산자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생산자 단체에 지원될 예정임.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폐지됨.

과일 및 채소 수입은 관세할당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진입가격제도(entry price)에 기초한 가변관세율의 적용을 받음. 연중 진입가격제도가 적용되는 토마토, 사과, 레몬, 오이, 호박을 제외하고 진입가격제도는 계절별로 적용됨. 과일의 MFN 관세율 평균은 10.0%이며 최대 30.5%이고 채소는 평균 13.5%, 최대 168.4%임. 과일과 채소의 수입은 WTO 특별세이프가드(SSG)의 적용대상이며 진입가격제도하의 수입도 SSG가 적용됨.

과일, 채소의 수입은 위생검역조치 대상이며 aflatoxin 때문에 미국산 아몬드 수입에 특별조건이 부가되어 있음.

바나나부문의 경우 EC는 2008년 1월부터 ACP국가에 부여한 775천톤 무관세 할당을 폐지하고 관세제도만 운영하고 있음. 2006-07 바나나 총수입에 기초하여 176유로/톤 (부가세 30.5% 상당치) MFN 관세를 부과하는데 EU가 바나나 소비의 대부분(약 89%)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임. 높은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2006년 바나나 소비는 9.7% 증가하였고(4.37백만톤 소비) 2007년 4% 증가함. EC의 바나나 수입제도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고 있음.

EC에서 바나나는 주로 변방지역 (Canary Islands 등)에서 재배되며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그리스 일부지역에서도 재배됨. 바나나 지원제도는 2007. 1월부터 개혁되었는데 변방지역에 대한 보조지원은 "POSEI 프로그램"를 통해 회원국이 지원함. EC의 다른 지역의 바나나 생산지역에 대한 지원은 단일농가직불금제도에 통합되어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 되었음.

## ■ 포도주와 알콜

EC는 전세계 포도주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2007년 EC 전체 포도주 생산의 80%를 생산함. 독일, 포르투갈, 루마니아도 주요 포도주 생산국임. 또한 EC는 세계 최대 포도주 소비, 수출, 수입국이기도 함. 지난

10년간 수입은 연간 10%씩 늘어 12백만 hl를 수입하였으나 수출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함. EC내에서 포도주 소비는 다원화되었는데 남부유럽 일부지역은 소비가 줄었으나 중부, 북부, 동부유럽에서는 증가함.

EC 포도주시장은 만성적인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도주를 증류하는 것이 주요 과잉해소 수단인데 증류업자는 생산자에게 보장된 가격을 지불하고 값비싼 원재료 지불한 대가의 일부를 보상받음. 2000-04년간 약 21백만 hl(총생산의 약 13%)의 포도주가 브랜드(8-12백만 hl), 꼬냑(4.4백만hl), Vermouth(2.2백만hl)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음. 시장균형을 회복하고 신세계 포도주에 대응하여 EC 포도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포도주 공동시장 제도가 2008년 8월 시행됨. 두 개의 증류지원 프로그램(긴급 증류와 휴대용 알콜 증류)은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임. 포도주 제조과정의 부산물 의무 증류는 포도주 품질의 악화와 과도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지되며 보조금이 지원됨. 꼬냑생산과 프랑스 일부지역의 포도주 과잉생산을 피하기 위해 지급되던 증류지원 보조는 2008년 개혁시 폐지되었음.

일부 포도주 생산지역에서는 설탕을 첨가하여 알콜농도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알콜강화가 금지되어 있으며 알콜 농도는 농축포도즙의 첨가만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고가의 농축포도즙 가격을 보상해주는 EC 지원은 2012년까지 계속됨.

포도주 개혁의 결과 포도주 부문도 단일농가직불제도로 통합되었음. EC와 회원국은 포도주 생산자가 영구히 생산을 포기(포도밭 폐원)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 2007/08년 포도밭 구조조정 및 포도밭 전환(품종전환, 포도밭 위치이동, 포도밭 관리 기술 개선)을 위해 EC는 510백만유로를 지원함. 2015년부터 EC내에서 제한되어 있던 포도나무 식재권(새로운 포도나무 식재금지)이 자유화됨. 다만 회원국차원에서 2018년까지 식재권 자유화를 연기할 수 있음.

포도주의 MFN 실행관세는 평균 16.2%이며 최대 218.3%임. 알콜성 음료는 평균 2.5%이며 농축 포도즙의 경우 최대 39.8%임. 포도즙, 포도주스, 포도의 수입은 과일, 채소부문과 같이 진입가격시스템(entry price system)에 기초하여 관세율이 변화함. 호주,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남아프리카, 칠레, 캐나다, 미국과는 포도주 양조관행, 라벨링, 지리적표시, 관세양허등 포도주 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음.

칠레로부터 포도주 수입(2.9백만hl, EC 포도주수입의 1/3)은 무관세가 적용됨. 포도주 라벨링 방법은 개정되어 역내산, 수입산 모두 포도품종과 빈티지 (원산지과 지리적표시 없이)가 허용되었음. EC는 제3국에서 포도주 판매유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C와 회원국이 공동 재정지출을 부담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08년 포도주 단일공동시장제도 개혁의 결과로 포도주 수출보조금은 폐지됨.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는데 실패했는데 EC는 여전히 수입산 포도주를 역내산 포도주와 혼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산 포도즙/주스와 신선포도를 EC 포도주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2. 농업무역정책과 관행

### 가. 서론

EC의 공통 관세는 종가세(89.9)와 비종가세(10.1%)로 구성되어 있음. 비종가세에는 특정세(총품목의 6.5%), 혼합세(2.8%), 변동세(0.8%)가 있음. 비 종가세는 농산물에 적용되는데 많은 품목이 관세할당(tariff quota) 대상이기도 함. 평균 실행 MFN 관세율은 6.9%에서 6.7%로 약간 낮아졌으며 최대 관세율은 isoglucose의 604.3% (2009. 1월 자료를 이용한 관세상당치)로 농산물에 고관세 품목이 집중되어 있음. EC는 폭넓은 특혜관세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EU로부터 일방적인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있어 WTO 회원국중 MFN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국가는

9개국, 공산품의 28%(2007년 기준)에 한정됨. 수입품과 역내생산물은 동일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는 EU회원국간에 통일되지 않았으나 최저세율은 EC 차원에서 정해져 있음. 알콜, 알콜성 음료, 담배, 연료 등 특정 수입품과 역내생산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EU 회원국간 통일되어 있지 않음.

수입금지 또는 예찰은 안보, 기술, 위생검역, 환경적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음. 관세할당, 셰이프가드 등 수량제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수입면허(license)가 요구됨.

EU는 많은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

### (1) 관세

#### (a) MFN 관세

EC는 2008년 현재 HS 8단위 기준으로 총 9,699개 세 번이 있으며 대부분은 종가세가 이용되나(89.9%), 특정세(6.5%), 혼합세(2.9%), 최대, 최저 선택세(0.8%), cif 진입가격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는 변동세(0.6%)가 운용됨. 또한 특정품목, 주로 농산물에 계절관세가 적용됨. 일부 농산물은 관세할당의 대상이기도 함. 종가세는 cif 가격에 적용됨.

비 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AVEs)는 평균 단위가격 또는 수입품의 진입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함. 진입가격은 일부 농산물 (예: 토마토, 오이, 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체리, 자두, 과일주스, 일부 포도주)에 적용되는데 계절에 따라 달라짐. 약 9,557세번이 관세분석에 사용되며 수입실적이 없는 142개 세번은 제외됨. 분석에서 제외된 품목은 농산물임. 세율 분석결과는 주로 추정치로만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비종가세 세번이 빠졌기 때문임. EC의 특정세는 주로 수입품의

무계에 기초하는 종량세인데 같은 세번이라도 가볍고 비싼품목보다는 무겁고 싼 품목에 영향이 많음. 따라서 정상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보호효과가 불안정함.

단순 MFN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6.7% (2006년 6.9%)이며 최대 관세율은 isoglucose의 604.3%임.

Table III.1  
Structure of EC MFN tariffs, 2006 and 2008  
(Per cent)

	2006	2008	U.R.
1. Bound tariff lines (% of all tariff lines)	100.0	100.0	100.0
2. Duty-free tariff lines (% of all tariff lines)	26.0	25.3	24.4
3. Non- <i>ad valorem</i> tariffs (% of all tariff lines)	10.0	10.1	10.1
4. Tariff quotas (% of all tariff lines)	3.4	4.8	4.8
5. Non- <i>ad valorem</i> tariffs with no AVEs (% of all tariff lines)	2.1	2.7	2.7
6. Simple average tariff rate	6.9	6.7	6.8
Agricultural products (WTO definition)	18.6	17.9	17.9
Non-agricultural products (WTO definition) <sup>a</sup>	4.0	4.1	4.2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ISIC 1)	10.9	9.3	9.6
Mining and quarrying (ISIC 2)	0.3	0.2	0.3
Manufacturing (ISIC 3)	6.8	6.7	6.8
7. Domestic tariff "spikes" (% of all tariff lines) <sup>b</sup>	5.6	5.3	5.6
8. International tariff "peaks" (% of all tariff lines) <sup>c</sup>	9.0	8.4	8.7
9. Overall standard deviation of applied rates	14.0	14.1	14.2
10. "Nuisance" applied rates (% of all tariff lines) <sup>d</sup>	9.4	9.6	9.7

a Excluding petroleum.

b Domestic tariff spikes are defined as those exceeding three times the overall simple average applied rate (indicator 6).

c International tariff peaks are defined as those exceeding 15%.

d Nuisance rates are those greater than zero, but less than or equal to 2%.

Note: Calculations include AVEs, as available, based on 2007 data in Eurostat (as of 15 January 2009)

## (b) 특혜관세

공동관세규정은 무역협정을 통해 일방적 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특혜무역협정(PTA)을 통해 EC는 거의 모든 비농산물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해 다양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 (2) 수입금지, 제한 및 면허

### (a) 수입금지

수입금지는 안보, 기술적, 동식물 위생검역, 환경적 모적에서 유지되고 있음.

### (b) 수량제한과 면허

EC는 2008년 WTO에 수입면허시스템을 마지막으로 통보함. 수입면허는 수량제한, 세이프가드 또는 수입예찰이 적용되는 품목에 필요함. 품목범위는 EC 법규에 정의 되는데 법규 승인이 없이는 폐지되지 않음. 통상 규정은 수입면허제도 적용기간과 만료기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수입면허는 수수료가 없으며 이전되지 않음. 수입면허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기간동안만 유효함. 수입면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 면허에 증서가 필요한 경우 수입이 없거나 일부분만 이루어지는 경우 동 증서는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상실함.

곡물, 쌀, 설탕, 올리브오일, 올리브, 우유제품, 쇠고기, 신선과일 및 채소, 가공 과일 및 채소, 바나나, 농산물에서 추출한 에틸알콜 등 농산물에는 수입예찰이 적용됨. 이들 품목은 용이한 원산지 통제와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자동면허가 부여됨. 자동 면허와 위생검역요건과는 관련성이 없음.

EC는 4.8%의 세번 (주로 농산물)에 관세할당을 유지하고 있음. 농산물 관세할당은 선착순, 수입면허 두가지 방법에 의해 관리됨. 면허는 비례 또는 과거 실적기준으로 부여됨. 농산물의 경우 수입면허 유효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함.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연장됨. 몇 개 행정기관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Table III.2  
Summary analysis of EC MFN tariff, 2008

Analysis	No. of lines <sup>a</sup>	Applied 2008 rates					Share of duty free (%)
		No. of lines used	Simple avg. tariff (%)	Range tariff (%)	Std-dev (%)	CV	
Total	9,699	9,557	6.7	0-604.3	14.1	2.1	25.3
<b>By WTO definition<sup>b</sup></b>							
Agriculture	2,000	1,858	17.9	0-604.3	28.4	1.6	18.1
-Live animals and products thereof	323	253	24.3	0-204.2	28.2	1.2	13.6
-Dairy products	151	113	35.2	0-189.7	33.1	0.9	0.0
-Coffee and tea, cocoa, sugar, etc.	293	284	17.5	0-604.3	38.7	2.2	12.3
-Cut flowers and plants	54	54	4.6	0-19.2	4.4	1.0	38.9
-Fruit and vegetables	428	428	15.6	0-280.9	20.4	1.3	7.0
-Grains	55	55	49.4	0-138.2	34.5	0.7	9.1
- Oil seeds, fats, oils and their products	164	163	8.2	0-161.9	19.6	2.4	33.5
-Beverages and spirits	271	255	17.6	0-243.1	29.6	1.7	20.3
-Tobacco	30	30	28.6	10-74.9	17.4	0.6	0.0
-Other agricultural products	231	223	7.2	0-91.6	15.8	2.2	50.2
Non-agriculture (excluding petroleum)	7,658	7,658	4.1	0-40.2	4.1	1.0	27.1
Fish and fishery products	386	386	10.6	0-26	6.5	0.6	13.7
Mineral products, precious stones and precious metals	514	514	2.5	0-12	3.0	1.2	41.4
Metals	1,022	1,022	1.7	0-10	2.2	1.3	53.9
Chemicals and photographic supplies	1,396	1,396	4.4	0-40.2	2.9	0.7	25.1
Leather, rubber, footwear, and travel goods	285	285	4.8	0-17	4.7	1.0	18.9
Wood, pulp, paper and furniture	456	456	1.1	0-10	2.2	2.0	75.4
Textiles and clothing	1,234	1,234	8.0	0-14.5	3.2	0.4	1.6
Transport equipment	269	269	4.8	0-22	5.0	1.0	11.9
Non-electric machinery	932	932	1.7	0-9.7	1.3	0.8	21.0
Electric machinery	501	501	3.0	0-14	3.5	1.1	19.0
Non-agricultural articles n.e.s.	663	663	2.5	0-13.9	2.0	0.8	25.2
<b>By ISIC sector<sup>c</sup></b>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565	559	9.3	0-139.7	13.8	1.5	34.5
Mining and quarrying	124	124	0.2	0-8	1.2	4.9	93.5
Manufacturing	9,009	8,873	6.7	0-604.3	14.2	2.1	23.7
<b>By stage of processing</b>							
Raw materials	1,177	1,168	8.1	0-139.7	15.2	1.9	44.6
Semi-processed products	2,903	2,897	5.0	0-604.3	13.2	2.6	31.0
Fully-processed products	5,619	5,492	7.3	0-280.9	14.2	2.0	18.3

a Total number of lines is listed. Tariff rates are based on a lower frequency (number of lines), since lines with no *ad valorem* equivalents may be excluded.

b 41 tariff lines on petroleum products are not taken into account.

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2). Electricity, gas and water are excluded (1 tariff line).

Note: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 (3) 기술적 요건

#### (a) 위생검역 (SPS)

EC 규정 Regulation No 178/2002는 국가 식품안전기준을 채택하는데 있어 회원국들이 활용하는 개념, 원칙, 절차를 통일시킴. 식품안전활동은 동식물위생에서 식품 라벨링, 동물 복지 등 모든 식품유통망에 걸쳐 이루어짐. 동 규정하에서 EC의 식품안전정책은 다음 다섯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i) 1차 생산단계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유통망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 유지 (ii)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요소로서 위험분석 (iii) 수입, 생산, 가공, 시장 분배 장소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은 운영자(operator)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iv) 식품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가능성(tracability) (v) 공공기관으로부터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동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위험분석기관으로 운영되는 유럽식품안전청(EFSA)를 설립함. EC는 신속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료까지 영역을 넓힘(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동 시스템에 따라 회원국은 식품 또는 사료의 회수 또는 제품 시장철수, 판매제한 등 동물위생 및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한 모든 조치사항을 집행위에 즉시 보고해야 함. 집행위에는 건강 및 동물위생,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1995-2005년간 EC는 동물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10억유로를 지출 하였는데 2/3는 구제역(FMD)에 대응하는 조치에 사용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뒤를 따르고 있음. 모든 EC 회원국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등재되어 있음. 영국과 사이프러스는 2007년 구제역 발생이 있었으나 2008년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 EC 내에서 BSE 발생은 과거 몇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청설병이 증가하고 있음. 청설병에 대한 대응 조치가 늘어나면서 2008년 EC의 동물질병 방역예산은 187백만유로에 달함. 야생 및 역내 조류에게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몇 개의 회원국에서 발생하였으며 2008년에는

4.4백만 유로의 EC 예산이 회원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음.

2007년 EU 집행위는 2007-2013 공동 동물위생정책 제안서를 제출함. 동 활동 계획은 동물질병의 발생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개선하고 질병예찰 및 통제, 연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험에 기초한 접근방식에 따라 고위험 화물(제품/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선별하고 있음. 관세당국과 수의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동물여권,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EC 전역의 전자인식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동물 추적시스템이 현대화되었음.

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식품판매는 엄격한 위생규범의 적용을 받음. 수입식품은 식품법령을 준수하거나 EC와 수출국간 특별협약에서 규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함.

비동물성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 없이 수입될 수 있음. 캐나다, 미국과 EC간 수의협약, 칠레, 멕시코, 스위스와의 무역협정은 위생검역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동물성 식품(수산식품 포함)은 수입가능 국가의 승인된 시설에서 생산된 것만 수입이 가능함. 승인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집행위가 해당국가의 수의담당기관을 인정하고 동 기관이 집행위에 새로운 시설(establishment)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U 집행위는 개별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그러나 집행위는 담당기관에 대한 점검, 통제를 통해 수출국 수의담당기관이 생산과정에서 EC의 관련 위생요건을 준수했음을 확인하고 EC 역내 수입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함. 수의약품, 농약, 오염물질의 잔류물질에 대한 EC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시스템이 실행되어야 함.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의 경우 수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BSE 청정국 결정을 받아야 함.

닭과 닭고기를 EC에 수출하려면 살모넬라, 조류 인플루엔자 통제/예찰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국경통제소에서는 과거 점검기록과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서류검사, 물품확인, 현물검사를 실시함.

성장호르몬, (TSE 발병을 줄이기 위한) 특정 위험물질을 사용한 동물유래 육류 수입은 금지됨. 동물성 식품의 항균처리도 금지됨.

새로운 식품의 농약 최대잔류허용치(MRLs)가 2008년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부적절한 기술적 교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별 최대잔류허용리스트를 EC차원에서 통일시킴. 통일작업을 마무리한 결과 모든 체계가 간소화되었는데 50만개의 국가별 MRLs가 75천개의 EC MRLs로 대체되었음. 새로운 MRL 규정은 식용 또는 사료용, 동물성 제품 및 가공품 등을 포함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 500개 농약에 대해서는 최대잔류허용치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mg/Kg 지정값이 적용됨.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각각의 새로운 MRL을 평가하며 집행위는 EFSA의 의견에 기초하여 새로운 MRL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MRL을 수정 삭제하는 규정을 제정함. 동 규정은 회원국의 국가별 통제계획을 통해 실행되고 집행위 식품수의국(FVO)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짐. 에과도르는 파인애플의 Ethephon MRL과 카카오 생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수의 농약 MRL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SPS 위원회에 우려를 제기하였음.

Council Directive 2000/29/EC에 규정된 EC의 식물위생정책은 특히 농약잔류물의 점검, 통제, 해충 및 식물질병의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할 예비조치, 식물 (특히 종자)의 역내이동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정 식물 및 식물성제품(예: 신선 과일 및 채소)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선적물은 서류검사, 물품확인 및 현물검사 등 식물위생점검을 받아야 함.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제품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위생점검이 적용됨. 식물 및 식품성 제품의 역내이동에는 식물 여권(plant passport)이 필요함. EC는 무역정책 점검기간중 특정 식물에 대한 수많은 긴급조치와 수입제한조치를 통보해 옴.

유전자변형체(GMO) 관련 법률체계는 GMO에 대한 실험실연구 (Directive 1990/219), 실험목적의 GMO 환경방출 (예: 현지시험) (Directive 2001/18), 유전자 변형종자의 유통 및 GMO를 포함하거나 GMO로 생산한 식품 및 사료의 유통 (Regulation 1829/2003), 라벨링과 추적성 (Regulation 1830/2003)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전자변형 종자품종(과 기타 식물-변식물질)을 환경에 방출하거나 식품 및 사료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 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 또는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평가결과와 EFSA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야만 승인이 이루어짐. 지금까지 오직 한가지 GM event (MON 810 옥수수)만이 EC내에서 재배, 수입, 가공이 허용되었음. MON 810은 현재 공동 종자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Table III.8  
(a) Emergency SPS measures

Products	Description of measure	WTO Document
Isoprene [FL-01.049 (2-methyl-1,3-butadiene)] and food products containing this flavouring substance (ICS 67.220.20)	Delete from the register of allowed substances. These substances have been found to be carcinogens.	G/SPS/N/EEC/324, 27 February 2008
Plants of the genus <i>Pinus</i> L. and Coast Douglas fir ( <i>Pseudotsuga menziesii</i> ), intended for planting, including seeds and cones for propagation purposes (HS 0602 and 1209.99.10)	Suspension of im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i>Gibberella circinata</i> Nirenberg & O'Donnell. This organism is the cause of "pine pitch canker".	G/SPS/N/EEC/315, 1 August 2007
Plants susceptible to red palm weevil ( <i>Rhynchophorus ferrugineus</i> (Olivier))	Suspension of imports.	G/SPS/N/EEC/314, 1 August 2007
Plants and live parts of plants, including seeds, of angel's trumpets ( <i>Brugmansia Pers. spp.</i> ) and jasmine nightshade ( <i>Solanum jasminoides</i> (Paxton))	Suspension of im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G/SPS/N/EEC/313, 31 July 2007

Source: WTO documents.

(b) SPS measures restricting imports

Products	Description of measure	WTO Document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food including catering containers and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drinking water (HS Codes: 3919, 3920, 3923, and 3924; ICS number: 67.250)	Suspension of imports as from 7 March 2010, if not complying with Directive 2002/72/EC, as amended.	G/SPS/N/EEC/319/Add.1, 13 March 2008
Fresh or chilled meat for human consumption of the following species: domestic bovine animals, including <i>Bubalus bubalis</i> and <i>Bison bison</i> (HS 0201); swine (HS 0203); sheep and goats (HS 0204); pigs, solipeds (HS 0205); farmed and wild ruminants, suidea, and solipeds (HS 0208)	Suspension of im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foot-and-mouth disease, and achiev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ealth.	G/SPS/N/EEC/308/Add.1, 2 January 2008
Food colour E 128 Red 2G and any food containing this colouring	Suspension of imports. This substance has been found to be a carcinogen.	G/SPS/N/EEC/311/Add.1, 2 August 2007
Plants of the genus <i>Pinus</i> L. and Coast Douglas fir ( <i>Pseudotsuga menziesii</i> ), intended for planting, including seeds and cones for propagation purposes, HS 0602 and 1209.99.10	Suspension of im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i>Gibberella circinata</i> Nirenberg & O'Donnell. This organism is the cause of "pine pitch canker".	G/SPS/N/EEC/315, 1 August 2007
Plants susceptible to red palm weevil ( <i>Rhynchophorus ferrugineus</i> (Olivier))	Suspension of imports.	G/SPS/N/EEC/314, 1 August 2007
Plants and live parts of plants, including seeds, of angel's trumpets ( <i>Brugmansia Pers. spp.</i> ) and jasmine nightshade ( <i>Solanum jasminoides</i> (Paxton))	Suspension of import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G/SPS/N/EEC/313, 31 July 2007

EC Regulation 1929/2003에 따라 GM 식품 및 사료의 유통승인신청은 관련 국가 기관을 거쳐 EFSA에 이르게 됨. EFSA는 신청이 완료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6개월내에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해 함. 집행위는 EFSA의 의견과 기타 법률적 요소를 검토하여 3개월내에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 승인 또는 거부 제안서를 제출함. 면화, 옥수수, 유지종자, 유채, 대두, 설탕 무, 박테리아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유전자변형 event에서 유래된 제품들이 식품 또는 사료에 이용되는 것이 승인되었음.

다른 GMO의 승인과 식품, 사료가공 이용은 대기중이며 GMO 최종승인결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지연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EU 집행위에 따르면

EC는 높은 보호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간지연에 따른 무역장애를 줄이는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함.

EC는 예상치 못한 인체 및 동물위생,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시장 철수를 용이하게 하고 GMO 라벨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GM 식품 및 사료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요건을 시행중임. 추적성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분배 전과정에 적용됨. 업자는 GMO를 포함한 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5년간 공급자와 구매자의 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업자는 또한 GMO를 포함 하거나 GMO로부터 유래된 제품에 라벨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라벨링과 추적성 요건은 우연히 승인된 GMO가 포함되거나 GMO로 생산된 제품이 존재하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 (0.9%까지) 면제됨. 승인되지 않은 GMO가 포함된 종자, 사료, 식품이 EC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금지됨. 전통적인 종자가 유전자변형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라벨링을 의무화 하도록 추진중이나 면제 수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음.

2008. 4월 EU 집행위는 비승인된 유전자 변형쌀 BT 63에 오염된 쌀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중국산 쌀 수입시 강제 인증제도를 도입함. 쌀 수입시 동 화물에 BT 63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중국 관련기관이 확인해야 함.

EC내 신규식품 및 식품원료 이용승인은 Regulation No258/97에 의해 통일됨. EC는 신규식품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주로 중앙집권적 평가절차(EFSA)와 승인절차(집행위)에 관한 것임. EC는 신규식품으로 인식되는 제3국으로 수입되는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와 관리가 원산지 국가에서 안전한 식품이용의 역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많은 국가들은 SPS 위원회에서 제3국 “전통식품”의 정의와 인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음. 개도국들은 특히 제안된 규정이 공급자에게 전통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동 제품이 좁은 지역에서만 소비되었음에도 넓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소비되었다는

역사적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비이성적으로 교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함.

EC는 2007년 총 25개의 새롭거나 수정된 SPS 조치를 통보하였고 2008년 10월 현재 13건을 통보함. 2007년 통보중 3건은 긴급조치였고 2008년에는 한건만 긴급 조치였음.

EC와 EU 회원국은 Codex, IPPC, OIE(EU 회원국만) 회원국임.

#### 다.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수출면허

수출 면허(license)는 EC 공동농업정책에서 관할하는 품목의 수출에 필요함. 수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수출시점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공동농업정책 수출면허에 적용되는 절차는 수입면허절차와 유사함. 수출면허는 수출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 환급금을 청구하거나 설탕, 곡물, 쌀 수출시 필요함.

##### (2) 수출보조

EC가 수출보조금과 관련예산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것은 2005/06, 2006/07실적임. 수출보조금은 다음 품목에 지급될 수 있음 : 밀, 밀가루, 조곡, 쌀, 유채, 올리브기름, 설탕, 버터 및 버터기름, 탈지분유, 치즈, 기타 낙농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담배, 알콜, incorporated products.

EC는 다양한 프로그램 (수출환급, 재고 판매, 생산자 금융)을 통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동농업정책은 수출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수출환급금의 목적은 EC 역내 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상함으로써 국제시장 가격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수출환급금은 EC 전체적으로

동일하며 목적지와 시점(선적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환급금액은 집행위에서 주기적으로 결정하는데 수출자에게 지급됨. 무역정책점검기간중 수출 환급금은 설탕, 곡물(2007년부터 중단),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과일 및 채소 (2008년부터 시행된 개혁조치에 따라 수출보조금 폐지), 달걀, 돼지고기, 쌀, 포도주(2008년부터 수출보조 폐지), 닭고기에 지급됨. 낙농품에 대한 수출환급금은 2006, 2007년에 지급되지 않음.

### (3) 수출 금융

무역정책 점검기간중 수출금융, 보증, 보험에 대한 EU 규범은 바뀌지 않았음. 수출금융, 보증, 보험은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음. EC는 1978년 이후 수출금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협약의 당사국임.

### (4) 수출촉진 및 유통지원

EC는 국제시장 및 제3국에서 농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대중 홍보, 공공 캠페인, 판매촉진 캠페인, 무역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EC 제품을 소비 하였을 때 이점, 특히 품질, 위생, 식품안전, 영양, 라벨링, 동물복지,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EC는 매년 약 5천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여 승인된 판매촉진 프로그램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나머지는 제품 생산 원산지 회원국 또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관련 생산단체, 전문기관에서 부담함.

라. 기타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지원과 인센티브

##### (a) 구조조정 활동

EC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국가의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2000~06년 기간중 SAPARD는 EC의 신규가입국이 된 10개국의 회원국 가입전 농촌개발지원

프로그램이었음. 동 프로그램은 신규가입국중 7개국에서는 종료되었고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루마니아에서는 현재 마무리단계임. 집행위가 시행하는 새로운 신규가입희망국 농촌개발부문 지원정책인 IPARD는 터키, 크로아티아, FYROM 등 3개국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SAPARD와 IPARD 프로그램의 목적은 신규가입국이 공동농업정책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의 농촌 및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은 농업활동의 조기은퇴, 농업 환경의무 또는 농지 녹화를 이행하면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상하고 기후 및 지리적 한계 때문에 나타난 생산성 손실을 보상하는데 자금을 지원함.

## (b) 농업부문 지원

공동농업정책은 2003-05년에 농업생산과 보조금 지원간의 연계를 끊은 새로운 농가단일직불금(single farm payment)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혁되었음. 이후 농가 단일직불제도는 기존의 대부분 농가직접지불금을 대체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축산지원금과 경종작물 직불금은 유지되고 있음. 이와 같이 공동농업정책하 농업 지원제도에는 수출환급금, 직접지불금, 가격지지를 통한 농산물시장 개입, 저장 및 가공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농산물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공동농업정책은 특정품목에 대해 시장개입 및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원수단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소득 지지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

생산 비연계(decoupled) 직접지불제도에는 농가단일 직접지불제도(SPS)와 신규 가입국 농민들을 위한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SAPS)가 있음. 다른 지원제도는 여전히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데 경종작물, 단백질 작물, 쌀, 우유, 양고기, 염소고기, 쇠고기, 밀, 땅콩, 에너지 작물, 감자 녹말, 올리브 기금, 종자, 면화, 설탕, 담배, 호프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고 있음.

EC에서 농산물 시장개입은 가격개입 (기초가격, 최소가격, 참조가격 설정, 대부분의 곡물, 낙농품, 일부 육류, 쌀, 감자, 설탕, 면화 등), 생산 보상금 (감자녹말 가공공장), 생산쿼터 설정 (감자녹말, 설탕, 우유), 민간저장지원 (낙농품, 일부 육류, 포도주, 포도즙), 농산물 가공지원 (낙농품, 일부 과일 및 채소), 심각한 시장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보충적 보상지원 (바나나), 생산지원 (아마, 대마), 생산자단체 구성 지원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EC는 또한 국제시장 및 제3국에서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금도 제공하고 있음.

## (2) 지식재산권

### (a) 식물품종 (Plant varieties)

식품품종은 Regulation No 2100/94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2008년 개정됨. 주개정내용은 신품종 출원자격요건과 관련이 있음. 시행규정 Regulation No1239/95도 개정되어 EU 식물품종사무소(CPVO)에 요금 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CPVO 절차전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함.

분명하고 균일하며 안정적이고 새로운 식물품종은 보호됨. 식물품종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 출원인은 개별국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CPVO에만 적용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식물 품종권자는 동 품종의 복제, 번식, 판매, 유통, 수입, 수출권을 갖게됨. 품종 구성성분과 보호품종으로 부터 수확한 물질에 대한 이러한 활동은 품종권자의 허가를 요함. 그러나 농민들은 자기농장의 번식목적으로 일부 보호품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수확기에 곡물은 92톤, 감자는 185톤 미만을 생산하는 소농에 한하며 반드시 품종권자에게 상응한 보상을 지불해야 함.

(일반적으로 번식 라이선스에 부과되는 양의 50%수준이나 육종가와 농민단체간의 협약과 생산 방법에 따라 다양함)

품종보호는 CPVO가 신청품종에 대해 정식으로 밀도있고 기술적인 검사과정을 만족스럽게 이행한 후에 주어짐. 식물품종은 25년간 보호되지만 포도와 나무 수종은 30년간 보호되며 5년간 연장이 가능함. 식물품종권은 이전이 가능하며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 강제 라이선싱이 주어질 수 있음. 그러나 EC에서 부여한 식물품종권에 대해 회원국이 강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으며 CPVO에 소속된 행정이사회에서만 부여할 수 있음. CPVO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EC에 의해 보호되는 품종은 동시에 회원국가 식물품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품종권이 침해된 경우 품종권자가 위반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품종권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아야 함. 회원국은 EC 식물품종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국가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EC 식물품종보호는 CPVO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CPVO는 2008. 1월-9월 사이 2,162건의 출원을 받았고 (2006년 2,735건), 2,616건(2006년 2,289건)의 권한을 인정함. 대부분의 출원 및 권리부여 품목은 관상용 품종(전체 신청의 61%, 권리부여의 60%)임.

CPVO에 지불해야 하는 식물품종 기술검사비는 2009년 1월부터 대폭 상승하여 작물그룹은 14-93%, 관상품목그룹은 5-43%, 채소그룹은 15-18%, 과일그룹은 5-51% 증가하였으며, 검사비는 1,160 - 2,500유로 수준임. 품종별로 매년 300유로의 품종보호료를 지불해야함. 수수료는 CPVO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음.

## (b) 지리적표시

EC차원에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함. 지리적표시(GI) 보호는 포도주 (Regulation No. 479/2008), 증류주 (Regulation No110/2008), 농식품 (Regulation

479/2008)을 관장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EC는 포도주, 증류주, 농산물, 식품의 원산지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s)를 위한 등록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Regulation No. 110/2008은 모든 EC 시장내 증류주와 수출용 증류주, 알콜 제조를 위한 모든 농산물 원료 증류에 적용되는데 EC 및 제3국의 지리적 표시 등록, 변경, 취소 등에 대한 비차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Regulation No479/2008에 규정된 포도주 등록시스템은 2009년 8월부터 적용됨.

2006년 EC는 농식품 명칭을 보호하는 시스템 (원산지보호(PDO), 지리적표시보호(PGI), 전통특산물보증(TSG))을 개편하였는데 특히 제3국의 명칭도 보호되도록 허용하였음. 이 시스템은 제3국의 생산자단체가 직접 EC에 신청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음 (생산자 단체는 더 이상 해당국 정부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짐). EU 집행위는 당사자간의 조정절차가 실패한 경우 최종 중재인이 됨. PDO, PGI를 등록하게 되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회원국이 이를 이행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함. EC의 등록시스템에는 3국산 명칭(콜롬비아 커피)을 포함 818개 농식품의 POD와 PGI가 등록되어 있음. 포도주, 증류주 지리적 표시 등록시스템에는 2,127개의 명칭이 등록되어 있는데 Vale dos Vinhedos(브라질), Napa Vally(미국)도 포함되어 있음.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EC차원의 검사 및 등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동일한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연합회, 자연인 또는 법인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EC가 원산지인 제품의 지리적표시보호 신청서는 관련 회원국에 제출함. EC 회원국 (또는 제3국 관련기관)이 동 신청이 등록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집행위에 송부하며 집행위는 동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함. 비 EC 원산지 제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 신청서는 집행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동 해당 지역이 속해 있는 국가의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동 기관이 집행위로 재 송부함. 신청서에는 동 제품의 명칭과 설명, 지역의 정의, 지역관련 요소, 라벨링 상세내용, 조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지리적특성과의 연관성, 신청 단체의 명칭 등 관련자료가 동봉되어야 함.

제3국 신청시에는 반드시 지리적 특성 (제조방법 포함), 동 명칭이 해당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집행위가 신청서에 만족하면 관보에 긍정적인 결론을 게재함. 만약 관보게재후 6개월동안 EC 또는 제3국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대가 제기되지 않으면 동 제품은 EC의 등록시스템에 들어 오게 됨.

만약 반대의견이 제기되면 집행위는 지리적표시를 부여할지 결정하기 전에 반대자가 우호적인 합의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줌. 최근 채택된 포도주 및 증류주 규정도 비슷한 등록 및 보호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부 록〉

Table AIII.1  
Applied MFN tariff averages by HS2, 2008

Code	Description	No. of lines	No. of lines used	Average tariff (%)	Range (%)	Std-dev (%)
	<b>Total/Average</b>	9,699	9,557	6.7	0-604.3	14.1
01	Live animals	54	49	9.8	0-59.1	15.0
02	Meat and edible meat offal	227	164	29.7	0-204.2	32.1
0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329	329	9.8	0-23	5.7
04	Dairy produce; birds' eggs; natural honey;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66	126	33.2	0-189.7	32.4
05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20	20	0.3	0-5.1	1.1
0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38	38	6.0	0-10.9	3.5
07	Edible vegetables and certain roots and tubers	106	106	13.5	0-168.4	21.6
0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 or melons	117	117	10.0	0-30.5	8.0
09	Coffee, tea, maté and spices	43	43	3.0	0-12.5	4.2
10	Cereals	55	55	49.4	0-138.2	34.5
11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sulin; wheat gluten	80	75	21.7	3.8-68.4	14.0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69	69	1.6	0-9.1	2.5
13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3	13	3.1	0-19.2	5.8
14	Vegetable plaiting materials; vegetable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	5	0.0	0	0.0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24	123	9.6	0-161.9	18.3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89	87	18.6	0-74.7	10.2
17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42	41	35.7	0.1-604.3	95.0
18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27	27	11.9	0-95.6	17.2
19	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 cooks' products	51	51	18.0	7.6-57.8	12.7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296	296	23.7	0-280.9	26.6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39	38	9.6	0-29.5	6.1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177	161	10.2	0-218.3	25.9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65	57	15.4	0-145.5	28.9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30	30	28.6	10-74.9	17.4
25	Salt; sulphur; earths and stone; plastering materials, lime and cement	86	86	0.4	0-8	1.2
26	Ores, slag and ash	47	47	0.0	0	0.0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111	111	1.4	0-8	1.9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256	256	4.4	0-5.5	1.9
29	Organic chemicals	536	536	4.5	0-89.8	5.5
30	Pharmaceutical products	59	59	0.0	0	0.0
31	Fertilizers	34	34	4.4	0-6.5	2.8



### 3. EU 2008~2015 농업시장전망

주 EU 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번역

EU 집행위 농업 및 농촌총국 발표(2009.3월)

#### 1. 보고서 개요

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 및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EU 및 세계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료곡물 수요축소,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작물 수요축소, 기타 산업부문의 부침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았음

낙농부분이 단기적으로 특히 어려운데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우유 생산자 가격이 상당 수준 떨어질 것이며 이는 우유생산의 위축을 가져와 생산량이 생산 쿼터에 미치지 못할 것임. 이에 따라 낙농품에 대한 수매와 수출보조금 지급등 시장 개입조치가 필요할 것임.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은 세계 식량수요의 증가, 바이오연료 부문의 발전, 식량 작물 생산성 증가속도 하락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EU 곡물가격은 중기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나 가격변동이 심할 것임. 유지종자는 바이오디젤의 수요증가와 세계 식물성기름 수요증가에 따라 가격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됨

EU 육류부문 중 닭고기, 돼지고기는 점진적으로 수요, 생산이 증가하나 쇠고기, 양고기는 더욱 줄어들 전망. 육류수요 증가가 육류생산증가를 앞지름에 따라 EU는 육류 순수출국의 위치가 점차 약화될 것임.

EU 우유생산은 우유쿼터 증량기간중 점차 증가하겠지만 EU 전체생산쿼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따라서 2015년 우유쿼터를 폐지하더라도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농업소득은 일시 위축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증가할 전망. 구 EU 회원국(EU-15)의 실질농업소득 증가는 미미하지만 신규가입국(EU-12)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의 증가로 상당수준 증가예상.

위 EU 농산물 시장 전망은 미래의 경제상황, 정책변화, DDA 협상타결여부, 농업 기술의 변화, 미래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

## 2. 보고서 세부 내용

### 가. 가정

DDA 농업협상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009.1월말 현재의 정보에 기초 단기적으로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EU 경제성장율은 2008년 1% 성장, 2009년 -1.8%, 2010년 0.5%로 추정. 중장기적으로 EU 경제는 천천히 회복하여 2%대 성장세를 유지 전세계 GDP는 2009년 -0.5% 감소하나 2010년 2.6% 성장 전망.

\*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가 커서 위 경제전망치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

## 나. EU 농업시장 전망

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 및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EU 및 세계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식품(특히, 축산물과 낙농품)에 대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료곡물 수요축소,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작물 수요축소, 기타 산업부문의 부침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음

### ■ 경종작물

세계 곡물시장은 2008년 봄까지 예외적으로 가격이 높았으나 양호한 기상여건, 에너지가격의 하락, 수출규제의 폐지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함. EU도 강제휴경 폐지 등의 조치로 경작면적이 증가하고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작황이 좋아 2008년 312백만톤 (2007년 258백만톤)의 수확량을 기록하였으며 곡물가격도 안정세.

단기적으로 경제 및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곡물수요의 증가가 제한되어 곡물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바이오에탄올 시장의 성장, 재생에너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곡물시장은 수급균형을 이룰 것임.

세계 및 EU의 곡물가격은 중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2008년의 높은 수준은 아니나)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가격변동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옥수수 수요증가가 조곡의 상대가격 변화를 발생시킬 것임.

EU 유지종자(oilseed)부문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디젤 수요증가와 세계 식물성 기름 수요증가로 가격이 지지를 될 것으로 보임. 유지종자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EU는 유지종자 순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것임.

## ■ 육류

2008년 1인당 육류소비는 85.1kg(2007년보다 2.2% 감소)로 줄어들었으며 단기적으로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닭고기, 돼지고기 생산, 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쇠고기, 염소/양고기는 감소. 육류수요 증가가 육류 생산증가보다 2.1% 높아 육류 순수출국인 EU의 위치가 약화될 것임.

2015년까지 중기적으로 돼지고기 생산, 소비는 서서히 증가할 것임. 돼지고기 수출은 2008년 29%나 증가하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러시아의 육류수입제한정책이 강화되고 저렴한 생산비용의 경쟁국과의 경쟁으로 수출은 서서히 감소할 전망.

닭고기 시장은 다른 육류에 비하여 가격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양호.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EU는 브라질, 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2007년 순수입국으로 돌아섰음.

쇠고기 생산은 낙농우 감소와 생산 비연계 직불금의 영향으로 향후 7년간 약 4.8% 감소전망. 소비는 이보다 적게(-0.8%) 감소하여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60%) 전망.

2008년 양고기, 염소고기 생산은 청설병(blue tongue) 발생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중장기적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 역내 소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 수입은 안정적인 전망.

## ■ 우유 및 낙농품

단기적으로 낙농부문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이 될 것임. 최근 낙농품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으나 2009년 우유 생산자가격은 더욱 심하게 떨어질 전망이며 단기적으로 우유생산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2008/09년 우유생산쿼터를 2%증가시켰으나 실제 생산증가는 거의 없어 생산 쿼터를 밀돌 것으로 전망되며 2009/10년에는 쿼터 미소진이 더욱 심해질 것임.

우유생산은 중기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점진적으로 우유생산쿼터를 늘리고 있어 쿼터 미소진 현상이 유지될 것이며 2015년 우유쿼터를 폐지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치즈 및 신선낙농품 시장은 단기적으로 다소 위축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치즈 생산량은 2015년 9.9백만톤으로 2008년보다 10% 증가). 이러한 증가는 특히 신규가입국(EU-12)의 생산, 소비증가에 따른 것으로 역내소비 증가가 대부분의 생산증가량을 소진하여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버터와 탈지분유는 수요감소에 따라 2008년 EU차원의 시장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민간의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EU 수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재개해야 하나 수요가 작고 저가의 수출경쟁으로 어려움 예상.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낙농품 생산이 늘어나고 대량판매 제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U 버터생산은 2015년까지 1.9백만톤 감소하고 탈지분유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 농업소득 전망

농업소득은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소 증가(2007년에 비해 2015년 7.5% 증가)할 전망이다.

구 EU 회원국(EU-15)의 실질농업소득 증가는 미미하지만 신규가입국(EU-12)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의 증가로 상당수준 (49.8%) 증가예상.





## 4.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김원태

지난 2월 17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9년 2분기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하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1. 쇠고기

2008년 미국의 경산우 도축 두수는 2007년의 576만 6천두보다 8.7% 증가한 627만두였다. 경산우 도축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캐나다산 경산우 수입두수 증가 때문이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BSE)가 발병하면서 2007년 11월까지 캐나다산 경산우 수입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경산우 도축은 전적으로 미국산 암소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부터 캐나다산 경산우 수입이 재개되면서 2007년에만 16,000두의 경산우가 캐나다에서 수입되어 도축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157,000두의 경산우가 수입되었다. 이러한 수입증가로 인해 2008년 미국의 경산우 도축두수는 2007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1월 기준 경산우 도축비율은 15%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의 14%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경산우 도축비율 증가는 2004년부터 보이기 시작한

사육두수 조절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지난 1980년 사육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982년 최고조까지 증가한 이후 1990년까지 하락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3년간의 팽창기와 8년간의 감소기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1986년 경산우 도축비율은 최고 18%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암소 도축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로는 1) 2006년 이후 미국 내 가뭄의 심화서부 산간지대의 경우 2001년부터 가뭄피해 발생, 2) 2008년 사료가격의 폭등, 3) 2008년 도태 경산우 가격 상승, 4) 2007년 여름 이후 지속된 비육밀소(송아지) 가격 하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산우 도축 증가와 함께 캐나다산 경산우 및 고체중 거세우 및 암소의 유입으로 미국의 2008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 증가하였다. 2008년 경산우 도축의 증가로 2009년 암소 사육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NASS(미국국립농산물통계원)에서는 지난 2년간 경산우 도축 증가로 경산우 사육두수 유지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관련 업계에서 생각하였던 사육두수 조정이 당초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및 2010년 1월까지 경산우 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CWT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2009년 1월까지 젖소 암소 도축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된다면 평균 도축두수보다 많은 수가 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 송아지 생산 감소는 비육밀소 공급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2011년 쇠고기 생산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번식용 암소 두수가 늘어날 경우 역시 비육 밀소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며 외부적인 요인(기후 또는 무역규제의 원인이 되는 질병 발생)이 발생할 경우도 비육에 들어갈 암소가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비육 밀소의 공급 감소는 쇠고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마이너스 이윤으로 비육우 감소

NASS에서는 2008년 3월 이후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이윤은 매년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008년 6월 제외). 사료곡물 및 건초가격은 2008년 중반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10월 이후 시장에 출하한 사육업자들의 사료비는 약간 감소하였다. 비육장에서 비육밀소 입식이 감소한 이유는 여름 이후 사료가격은 천천히 하락한 반면 비육우(큰소)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09년 1월까지 사육업자의 손해 폭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와 같은 사료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가격 지지정책이 없을 경우 사육업자들의 손해 폭은 향후 몇 달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 겨울동안 비육장의 비육밀소 사육두수와 2009년 쇠고기 공급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체중우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사육두수 감소분을 다소 상쇄할 수 있다.

### ■ CWT(Cooperatives Working Together) : 낙농업자들이 조직한 낙농업 공동사업 경제상황 변화가 쇠고기 소비에 영향

지난 10주 중 7주 동안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선에서 형성되었는데 우선 사육두수 확대에 의해 신선육 공급이 부진했고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요 감소로 재고량이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소비패턴 변화로 육류재고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업률 증가와 현재 경기침체 상황으로 패스트푸드를 제외한 외식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외식수요 감소로 소비패턴이 고급육에서 저가육 또는 가공육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초이스급 및 셀렉트, 컷아웃급 간의 가격 차이를 감소시켰다. 쇠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요증가도 쇠고기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업자들은 최근까지 이익을 보았으나, 비육우 공급 감소와 소매가격 감소로 마진폭이 감소하고 있다.

### ■ 쇠고기 무역 - 2008년도 쇠고기 수출 32% 증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2007년의 14억 3,400만 파운드보다 32% 증가한 18억 8,800만 파운드로 멕시코와 캐나다로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되었다. 미국의 대 멕시코 쇠고기 수출은 작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캐나다로의 수출은 15% 증가하였다. 일본에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2억 3,100만 파운드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였으며, 한국으로는 1억 5,200만 파운드를 수출하였다. 2008년 7월에 미국은 200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였다. 러시아는 2,3분기에 4,800만 파운드를 수입 하였으며 베트남은 전년의 4,200만 파운드보다 크게 증가한 1억 2,200만 파운드를 수입하였다.

2008년도 수출 증가의 주원인은 달러화 약세와 세계 육류 수요 증가 때문이다. 3분기의 수출 증가는 한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량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경제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4분기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일본의 엔화를 제외한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가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곡물비육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출량은 18억 8,0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 ■ 4년 연속 수입 감소

2008년 수입량은 2007년의 30억 5,200만 파운드보다 17% 감소한 25억 3,800만 파운드였다. 수입 감소의 원인은 미국 내 암소도축 증가에 따른 쇠고기 공급 증가와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 때문이다.

미국의 2007년 최대 쇠고기 수입국인 호주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2007년보다 25% 감소한 6억 6,300만 파운드였는데 호주달러화 강세와 다른 국가들의 호주산 쇠고기 수요증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호주산 쇠고기가 감소하였다. 우루과이산 쇠고기는 유럽과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2007년 3억 5,500만 톤보다 6,600만 톤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2008년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는 전년보다 7% 증가하였으며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 역시 증가하였다.

2008년 말 세계 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10월 브라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6%가 증가한 26억 8,000만 파운드에 달러화 강세와 지속적인 쇠고기 공급이 예상되지만 국제 시장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2. 낙농

2008년 젖소 두수는 1.2% 증가한 반면 두당 생산량은 1%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사육두수는 젖소 도축이 증가하여 연평균 9.17백만 두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원유 생산량은 1,89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젖소 두당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1%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능력 젖소를 도태시킨다면 평균 산유량은 증가할 것이다. 원유가격 하락이 사료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앞으로 유사비(원유/사료)는 하락할 수 있다. 생산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국내 수요량이 공급량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2009년 가격이 하락하여 2008년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009년 전지성분 원유 수출은 51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탈지성분 원유는 190억 파운드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전지성분의 미국 내 상업적 이용은 1,865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1%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유제품 생산은 4%, 버터 생산은 10% 증가하였지만 치즈 생산은 1% 증가하는데 그쳤다. 12월 탈지 분유생산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유당과 유장 생산은 6.5% 감소하였다. 원유생산성 향상과 수요 감소는 치즈와 탈지분유 같은 유제품들의 재고를 증가시키고 유제품의 가격도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전년 가을부터 미국 정부는 탈지분유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리조치는 금년 상반기에 더욱 강화되어 하반기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치즈가격은 파운드당 1.180~1.250달러, 버터가격은 평균 파운드당 1.080~1.180달러로 낮아질 전망이다.

분유가격은 2008년에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기 때문에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탈지분유 가격은 파운드당 80-86센터, 유장은 파운드당 16~19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제품 가격전망에기초하여 2009년 원유 가격은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유 IV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9.35~10.15달러,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9.70~10.40달러로 전망 되며 2009년 평균 원유 가격은 100파운드당 10.95~11.65달러로 예상된다.

### 3. 양돈

2009년 1월 미국 축산업자의 총 마진은 2008년 1월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2009년 1월 축산업자 마진은 전년보다 80% 이상 감소했으며 2006~2008년 1월 평균보다 75% 하락하였다. 1월의 축산업자 마진 감소는 도축두수가 감소하여 도축가공비용이 1년 전보다 13%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돼지 도매시장 가격은 냉동재고량이 많았고 돼지고기 수요도 부진하여 2008년 1월보다 1.5% 상승하는데 그쳤다.

축산업자의 수익저하는 돼지가격이 너무 높거나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낮은 것에 기인한다. 2009년 평균 돼지가격은 전년보다 1.2%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도축업자의 수익은 돼지고기 수요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국내외 소비자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지불의사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1분기돼지생산량은 전년보다 2.7% 적은 59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비육돈의 1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8.5% 높은 100파운드당 42~44달러로 예상된다.

2008년 12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보다 3.25% 증가한 312백만 파운드였고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총 수출량은 47억 파운드로 2007년보다 48% 증가하였다. 중국, 홍콩, 러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여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7년보다 중국이 59%, 홍콩이 285%, 러시아가 76% 증가하였다. 미국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으로 2008년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의 28%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7.8%, 홍콩은 11%, 러시아는 9%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미국돼지고기 수출량은 2008년보다 14% 감소한 40억 파운드로 추정되지만 2007년보다는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홍콩은 2009년에도 주목할 만한 수출대상국으로 기대된다. 2009년 돼지 고기 수출규모를 결정할 핵심은 수입대상국의 경제성장률과 대미환율, 그리고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될 것이다.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832백만 파운드로 2007년보다 14% 감소하였다. 미국 돼지고기 수입량의 78%를 차지하는 캐나다산은 16%, 수입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덴마크산은 15% 감소하였다. 미국 돼지고기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환율과 수송비용의 상승으로 미국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9년 돼지 고기 수입은 2008년보다 2.6% 감소한 8억 10백만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캐나다산 생돈 수입두수는 연초의 불리한 환율, 캐나다의 사육두수 감소, 2008년 말 시행된 원산지표시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하였다. 2008년 총 수입두수는 9.348백만 두로 2007년보다 7% 감소하였는데 젓 멘 돼지의 수입이 44%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육돈 수입은 30% 감소하였고 젓먹이돼지는 19% 감소하였다. 2009년 돼지 수입두수는 2008년 수입두수보다 23% 감소한 7.2백만 두로 예상된다.

#### 4. 닭고기

사료 가격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2009년 3분기까지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4분기에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09년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1.9% 감소한 36억 2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2009년 육계(Broiler)산업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따른 수요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4.5% 감소한 89억 파운드였다. 이는 도계수수가 2007년보다 5% 감소하고 생체중은 5.61파운드로 전년보다 다소(0.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29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닭고기 생산량 증가는 도계 작업일수가 2일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도계수수율은 1% 증가하였으나 생체중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5.56파운드였다.

2008년 12월 말 냉동 닭고기 재고는 2007년보다 3.3% 증가하였으나 전월보다는 4천 6백만 파운드 감소한 7억 4천 만 파운드였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2008년 연말 재고 감소가 연초부터 이미 예상되었으나, 2008년 말 다리살 재고는 연초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다리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닭고기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2009년 재고량은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로 향후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슴살 가격이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다리살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월 북동부 시장의 뼈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251로 2008년 동월보다 2% 하락하였으나 2008년 12월보다는 15% 상승하였다. 1/4 다리살의 경우 2008년 12월에 파운드당 28센트였으나 2009년 1월에는 평균 35센트를 기록하였다. 생산량 감소로 2009년 3분기까지 닭고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나 경기 하강과 수출 감소로 닭고기 가격 상승세가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12월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 보다 24% 증가한 5억 2천만 파운드였다. 이는 다리살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4분기 닭고기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2008년 수출량은 2007년보다 18% 증가한 70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러시아로의 닭고기 수출은 23% 감소하였으나 멕시코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소 규모 시장으로의 닭고기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홍콩, 멕시코, 쿠바 등으로의 닭고기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19%, 27%, 50%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와 쿠바로의 닭고기 수출량은 10억 파운드에 이른다. 2008년 9월까지 닭고기 수출량 증가로 주요 수출품인 다리살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09년 닭고기 수출량은 가파르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13% 감소한 6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 5. 계란

하반기 생산량 증가로 2009년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란(種卵) 생산은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한 11억 개로 전망된다.

2008년 4분기 계란 생산량은 16억 4천만판(12개들이)으로 2008년 총 계란 생산량은 64억 2천만 판이다. 2008년 4분기 계란 생산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3분기까지의 계란생산량은 2007년보다 적은데 이는 브로일러 생산을 위한 종란(種卵) 생산이 2007년보다 1.3% 감소했기 때문이다. 육계 산업의 위축으로 2008년 12월 육용종계 (Parent Flocks) 사육수수도 전년보다 6% 감소하였다.

계란 생산량 감소로 2008년 가격은 2007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2008년 4분기 대란 가격은 판당(12개들이) 1.23\$로 초강세를 보였던 전년 동기(1.45\$)보다 13% 하락하였으나 2008년 평균 계란 가격은 2007년보다 12% 상승한 1.28\$이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09년 계란 가격은 2008년(1.28\$)보다는 다소 하락한 1.19~1.26\$로 전망된다.

미국 내 계란 가격 강세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소비 감소로 2008년 계란 수출량은 2007년보다 18% 감소한 2억 6백 만판이다. 일본, 홍콩, 멕시코로의 계란 수출은 각각 18%, 33%, 37% 감소하였으나 캐나다의 경우 1% 증가한 4천 7백 만판이었다.

표1 U.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6,371	6,897	6,911	6,385	26,564	6,225	6,630	6,830	6,425	26,110
- 돼지고기	6,023	5,593	5,633	6,099	23,348	5,860	5,465	5,550	6,105	22,980
- 양고기	46	43	41	43	173	42	42	39	41	168
- 닭고기	9,108	9,432	9,455	8,869	36,384	9,150	9,150	9,200	9,125	36,175
- 칠면조고기	1,541	1,565	1,571	1,586	6,263	1,500	1,500	1,510	1,555	6,040
- 전체 육류	23,258	23,712	23,796	23,149	93,915	22,472	22,952	23,300	23,417	92,141
- 계란, 백만판/12개	1,590	1,581	1,601	1,645	6,417	1,585	1,585	1,615	1,660	6,44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15.6	16.3	15.8	15.0	62.7	15.0	15.7	15.9	15.0	61.6
- 돼지고기	12.6	11.7	12.0	13.0	49.3	12.9	12.3	12.0	12.8	50.01.0
- 양고기	0.3	0.3	0.2	0.2	1.0	0.3	0.2	0.2	0.3	83.5
- 닭고기	21.2	21.4	21.1	20.1	83.8	20.1	21.2	21.3	20.8	17.8
- 칠면조고기	4.0	4.1	4.3	5.3	17.7	4.2	4.2	4.2	5.2	215.6
- 전체 육류	54.1	54.2	53.8	54.0	216.3	52.9	54.1	54.1	54.4	246.7
- 계란, 백만판/12개	61.9	61.4	62.0	63.9	249.1	61.1	60.6	61.8	63.3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89.59	92.82	98.45	88.22	92.27	82-84	86-92	87-95	89-97	86-92
- 비육밀소(Ok Ci1y,\$/cwt)	99.88	106.60	110.81	94.62	102.98	96-98	96-102	100-108	104-112	98-106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t./cwt)	53.88	57.30	61.78	46.70	54.92	44-46	47-49	49-53	51-55	48-51
-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6.23	79.62	88.83	88.95	85.91	88-91	87-93	84-90	85-91	85-91
- 돼지고기(N. base, 1.6. \$/cwt)	39.64	52.51	57.27	41.92	47.84	42-44	48-50	49-53	44-48	46-49
- 닭고기(12도시, cents, /lb)	78.10	80.60	80.60	79.40	79.70	81-83	82-88	83-89	80-86	81-87
- 칠면조고기(동부, cents, /lb)	77.40	88.90	96.50	87.30	87.50	75-77	81-87	88-96	86-94	83-88
- 계란(뉴욕, cents, doz)	158.8	117.30	114.50	122.60	128.30	125-129	115-123	111-121	123-133	119-126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360	471	609	440	1,880	415	495	490	480	1,880
- 쇠고기 수입량	637	661	584	615	2,497	625	710	690	655	2,630
- 양고기 수입량	52	48	38	44	182	52	42	39	44	177
- 돼지고기 수출량	1,106	1,387	1,126	1,100	4,717	875	950	1,000	1,175	4,000
- 돼지고기 수입량	217	306	191	190	803	210	200	195	205	810
- 닭고기 수출량	1,507	1,787	1,912	1,625	6,831	1,450	1,525	1,500	1,575	6,050
- 칠면조, 고기 수출량	148	160	186	175	669	135	145	160	165	605
- 모든 수입두수(천두)	2,915	2,149	2,201	1,900	9,165	1,850	1,850	1,750	1,750	7,200

표2 낙농업 전망

구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젖소(천두)	9,249	9,274	9,278	9,283	9,271	9,265	9,220	9,150	9,050	9,171
두당 산유량(파운드)	5,140	5,249	5,048	5,024	20,462	5,140	5,300	5,100	5,080	20,620
우유 생산량(십억 파운드)	47.5	48.7	46.8	46.6	189.7	47.6	48.9	46.7	46.0	189.1
- 농가소모분	0.3	0.3	0.3	0.3	1.2	0.3	0.3	0.3	0.3	1.2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5	47.3	48.6	46.4	45.7	188.0
유지방(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5	47.3	48.6	46.4	45.7	188.0
-연초 재고량	10.4	12.1	13.6	11.5	10.4	10.0	11.9	13.5	12.0	10.0
- 수입량	1.0	0.7	0.7	1.5	3.9	0.9	0.8	0.8	1.2	3.6
- 총공급량	58.6	61.3	60.9	58.3	202.8	58.2	61.2	60.6	58.8	202.0
- 수출량	2.2	2.5	2.5	1.5	8.7	1.1	1.2	1.4	1.4	5.1
- 연말 재고량	12.1	13.6	11.5	10.0	10.0	11.9	13.5	12.0	9.3	9.3
- 소보분	0.0	0.0	0.0	0.0	0.0	0.5	0.9	0.0	0.0	1.5
- 집유량	44.2	45.1	46.9	47.8	184.0	44.7	45.6	47.2	48.1	185.6
전지분유(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47.3	48.4	46.5	46.3	188.5	47.3	48.6	46.4	45.7	188.0
- 연초 재고량	9.9	10.2	10.8	10.4	9.9	10.9	11.1	11.9	11.3	10.9
- 수입량	1.0	0.8	0.8	1.1	3.7	0.9	0.8	0.8	1.1	3.5
- 총공급량	58.1	59.4	58.1	57.9	202.1	59.1	60.5	59.1	58.0	202.4
- 수출량	6.7	7.6	6.9	4.8	26.0	4.4	4.5	4.8	5.3	19.0
- 연말 재고량	10.2	10.8	10.4	10.9	10.9	11.1	11.9	11.3	10.4	10.4
- 소모분	0.0	0.0	0.0	1.3	1.3	1.8	2.5	1.7	0.9	6.9
- 집유량	41.3	41.0	40.8	40.9	163.9	41.8	41.6	41.2	41.4	166.1
우유가격(달러/100 파운드)										
- 우유	19.23	18.57	18.67	16.80	18.32	11.65	10.00	10.25	11.95	10.95
						-11.95	-10.60	-11.15	-12.95	-11.65
- III 등급	18.12	18.40	17.28	15.95	17.44	9.51	8.89	9.55	10.94	9.70
						-9.81	-9.49	-10.45	-11.94	-10.40
- IV 등급	15.04	15.25	16.23	12.07	14.65	9.23	8.94	9.29	9.94	9.35
						-9.63	-9.64	-10.29	-11.04	-10.15
유제품(달러/파운드)										
- 체다 치즈	1.933	1.977	1.869	1.804	1.895	1.170	1.107	1.162	1.290	1.180
						-1.200	-1.167	-1.252	-1.390	-1.250
- 유장 분말	0.305	0.267	0.243	0.186	0.250	0.152	0.148	0.165	0.182	0.160
						-0.172	-0.178	-0.195	-0.212	-0.190
- 버터	1.230	1.411	1.575	1.527	1.436	1.042	1.008	1.077	1.198	1.080
						-1.102	-1.098	-1.197	-1.328	-1.180
- 탈지분유	1.364	1.300	1.334	0.904	1.226	0.806	0.788	0.795	0.815	0.800
						-0.836	-0.838	-0.865	-0.885	-0.86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3 생산지표

구분	단위	2008. 1월	2008		2009. 1월
			11월	12월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2,092	10,972	11,346	11,234
입식두수	1,000 두	1,727	1,949	1,571	1,791
출하두수	1,000 두	1,853	1,575	1,683	1,737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77,028	585,025	629,093	630,000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821,866	705,587	779,160	775,000
종계수수	1,000 수	57,215	53,311	52,707	536,200
6개월 미만 종계수수 /1	1,000 수	7,300	7,026	6,580	6,200
종계 도태수수 /2	1,000 수	6,637	6,135	5,949	5,890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1,604	27,490	27,754	29,664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6,067	20,702	23,179	24,195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42.3	539.2	559.3	544.2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5,435	280,880	284,993	28,700
산란율 /1	%	74.7	75.7	76.6	75.0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40,167	36,607	36,393	36,200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6,332	4,439	5,527	5,480

주: 1)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월초 기준임.

3) /2월말 추정량임.

표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분	2008. 2월	2008. 12월	2009	
			1월	2월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100.69	109.71	107.94	93.02
판매가격	91.83	85.70	83.50	81.75
순이익	-8.86	-24.01	-24.44	-11.27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2000=1000)

구분	2008. 2월	2008. 12월	2009	
			1월	2월
육계(지수)				
사료비	156.9	141.8	139.2	137.1
시장가격	132.6	117.6	131.5	130.6
이윤(가격-비용)	124.0	109.1	128.8	128.3
칠면조(지수)				
사료비	154.6	197.3	151.1	148.2
시장가격	115.7	114.2	108.3	113.6
이윤(가격-비용)	98.0	76.4	88.9	97.9
계란(지수)				
사료비	187.6	149.1	145.8	161.1
시장가격	202.6	158.8	163.7	138.1
이윤(가격-비용)	210.5	163.8	173.1	126.2

표6 육류 통계

구분	2008. 1~2	2009.1~ 2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2월
육류 생산량 (백만파운드)							
- 쇠고기	4,271	4,094	2,342	1,961	2,082	2,118	1,976
- 송아지고기	22	23	13	11	13	12	11
- 돼지고기	4,060	3,850	2,160	1,887	2,052	2,026	1,824
- 양고기	30	26	15	13	15	13	13
-적색육 전체	8,383	7,994	4,530	3,872	4,163	4,170	3,824
- 육계	6,141	5,465	3,272	2,665	2,932	2,875	2,590
- 기타 계육	89	83	51	39	40	44	39
- 칠면조육	1,053	954	584	510	491	498	456
백색육 전체	7,283	6,502	3,906	3,214	3,462	3,417	3,085
전체 육류 생산량	15,667	14,496	8,437	7,086	7,625	7,586	6,909
도축두수(천두)							
소	5,542	5,230	2,991	2,519	2,671	2,718	2,512
- 거세우	2,710	2,479	1,424	1,156	1,295	1,304	1,175
- 미경산우	1,715	1,601	916	792	811	796	805
- 경산우	571	536	354	312	293	291	245
- 젃소	458	536	241	212	233	286	250
- 비거세우	87	78	56	47	39	41	37
- 송아지	141	161	96	81	94	85	76
양	425	363	225	194	231	189	174
돼지	19,935	18,894	10,747	9,325	10,145	9,922	8,972
- 비육돈	19,280	18,274	10,394	9,044	9,839	9,570	8,704
- 모돈	578	531	313	249	273	295	236
육계	1,499,028	1,348,800	778,136	639,120	709,846	703,400	645,400
칠면조	44,236	40,100	25,339	23,048	20,867	20,700	19,400

구분	2008. 2월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2월
정육량(파운드)						
소	776	789	784	785	785	787
송아지	160	142	139	142	142	148
양	72	68	68	68	72	73
돼지	203	201	203	203	205	204
재도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450.8	454.5	471.0	481.6	492.6	454.7
돼지고기	574.9	526.2	528.0	526.7	555.6	595.2
- 내장	70.6	21.3	21.7	33.5	51.6	67.7
- 햄	88.9	181.4	154.0	104.7	74.2	82.2
닭고기	773.0	759.3	787.9	811.1	765.4	687.5
칠면조고기	327.6	621.5	578.0	360.4	396.1	454.0
냉동달걀	12.0	21.9	22.4	21.3	22.6	21.9

## 세계농업 흐름 분석

표7 생축 가격

구분	2008. 2월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2월
소(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파운드급	91.83	91.94	91.06	85.70	83.50	81.75
- 텍사스 팬헨들	90.85	90.61	90.40	83.66	81.60	79.25
네브라스카						
- 암소(수풀스지역)	57.94	55.70	46.63	45.58	49.25	47.25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5.94	53.60	44.75	41.75	45.63	44.50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07.85			
1) 500~550 파운드	122.86	108.44	97.25	99.37	108.09	112.00
2) 600~650 파운드	113.16	97.82	97.81	90.42	98.94	102.00
3) 750~800 파운드	102.89	96.54		89.51	95.12	94.65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10.53	95.91	92.66	86.11	95.44	100.65
2) 700~750 파운드	97.05	89.01	90.19	82.89	88.61	88.25
돼지(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52% 기준	42.74	47.06	38.90	39.80	41.43	43.00
- 모돈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25.89	46.55	33.95	41.51	41.31	51.00

표8 곡물 및 사료가격

구분	2008. 2월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2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4.91	NA	NA	N/A	N/A	N/A
- alf, HRW Ord, K.C.(부셸)	11.63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lur	345.87	0.00	0.00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38.00	172.00	163.00	155.00	149.00	149.00
- 건초, U.S, Avg(xhd)	122.00	122.00	116.00	113.00	110.00	110.00

표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분	2008. 2월	2008. 10월	11월	12월	2009. 1월	2월
쇠고기(/파운드)						
- 쇠고기 절단 초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49.63	148.03	153.29	144.42	147.68	136.80
셀렉트급 1-3, 600~900 lb	146.11	140.92	148.36	135.50	141.14	135.0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49.08	151.26	136.13	126.30	142.30	139.9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43.81	153.30	131.50	129.94	130.13	126.25
- 가죽 및 내장	10.53	N/A	N/A	N/A	N/A	N/A
돼지고기(/100파운드)						
- 지육						
- 등심, 14-19 lb BI 1/4 trim	61.42	67.81	57.28	58.03	57.54	57.5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90.22	111.10	92.88	93.10	94.96	94.00
	78.94	N/A	57.25	61.25	69.88	71.0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7.31	59.27	52.72	48.97	49.13	44.00
	51.30	53.21	57.00	35.46	39.06	43.00
- 잡육, 72% fresh						
육계(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8.79	77.65	78.51	82.01	81.90	80.30
- 조지아(Georgia dock)	77.62	86.07	85.59	86.04	86.56	86.6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45.19	108.96	100.49	110.14	125.38	122.50
뼈있는 가슴살	87.58	70.71	67.84	70.60	77.33	80.00
다리(전체)	60.84	61.88	41.56	44.39	53.79	55.30
다리(1/4도체)	43.51	51.63	29.99	28.39	34.99	36.4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48.15	108.91	116.25	116.09	119.68	101.00
- 뉴욕	157.25	119.23	123.78	124.81	127.00	98.00

표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분	디케이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2월	314.78	4.01	134.4	121.9	117.5
2008년 1월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년 2월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년 3월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년 4월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2008년 10월	260.66	3.66	180.8	123.1	102.8
2008년 11월	267.37	3.43	178.9	122.2	102.1
2008년 12월	268.24	3.29	141.8	117.6	109.1
2009년 1월	306.95	3.66	139.2	131.5	128.8

표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분	디케이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12월	314.78	4.01	155.4	209.0	237.0
2008년 1월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년 2월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년 3월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년 4월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2008년 10월	260.66	3.66	200.1	149.0	122.3
2008년 11월	267.37	3.43	153.7	159.0	161.8
2008년 12월	268.24	3.29	149.1	158.8	163.8
2009년 1월	306.95	3.66	145.8	163.7	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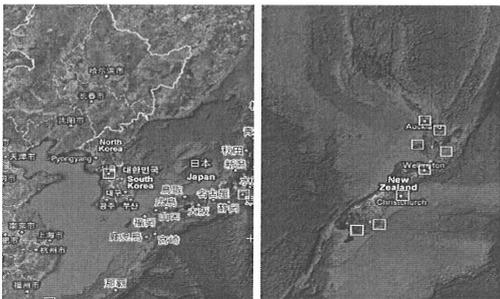
## 5. 한국-뉴질랜드 농업현황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이명기

뉴질랜드 농정 개혁의 성공 사례가 농업선진화라는 우리나라 농정 목표의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양국의 농업 여건과 현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해보는 것은 뉴질랜드 식의 농정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제시·비교하였다.

### 1. 국토 및 경지 비교

그림1 한국과 뉴질랜드 면적 비교



뉴질랜드의 국토 면적은 2,677만 ha로 우리나라의 2.7배에 이른다. 농경지 면적은 규모 차이가 더욱 커 우리나라의 8.2배 수준이고 전체 국토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뉴질랜드(54.9%)가 한국(17.9%)보다 3배 이상 크다. 농경지 면적의 대부분을

곡물 등 경종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 농경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영농형태는 목초지(74.7%)다.

표1 뉴질랜드의 국토 및 경지 현황(2007년)

(단위: 천ha, ha/호)

구분		한국	뉴질랜드
전체 국토 면적		9,972	26,771
농경지 면적	합계	1,7821)	14,701
	초지	412)	10,9872)
	경종·사료재배	1,161	367
	원예작물	4503)	133
	기타	244	3214

## 2. 농림업 구조 비교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경지면적이 큰 반면 농업경영체 수는 매우 적다. 2007년 현재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체 수는 63천호로 한국 농가의 5.1%에 불과하다. 또한 적은 수의 농가가 넓은 경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과 농가 호당 경지면적 차이가 매우 크다. 2007년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33.4ha로 한국(1.5ha)의 155.6배에 이른다.

농림업 부문 취업자 수는 한국(1,670천명)이 뉴질랜드(83천명)에 비해 약 20배나 많다. 전체인구 및 취업자 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전체 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뉴질랜드의 약 1.8배에 이른다.

표2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체 · 농림업 취업(2007년)

(단위: 천호, 천명, %)

구분	한국	뉴질랜드
농업경영체 수	1,231	63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	1.5	233,4
농림업 취업자 수	1,670	83
전체 취업자 수	23,433	2,126
전체취업자 중 농림업 취업자 비중	7.1	3.9

### 3. 농림식품 부가가치 및 농가 경제 비교

뉴질랜드는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2005년 농업 부가가치는 5,359백만 달러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이르고 2007년 한국 농업 부가가치의 비중보다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농가 호당 평균 부가가치는 한국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전체 GDP 및 농업, 임업,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한국이 뉴질랜드에 비해 모두 크다.

표3 농림식품 부가가치 및 비중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천 달러)

구분	한국	뉴질랜드
전체 GDP	953,175	104,955
농업 부가가치(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22,584(2.4)	5,359(5.1)
임업 부가가치(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1,213(0.1)	711(0.7)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전체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8,746(0.9)	5,135(4.9)
농가호당 평균 농업 부가가치	18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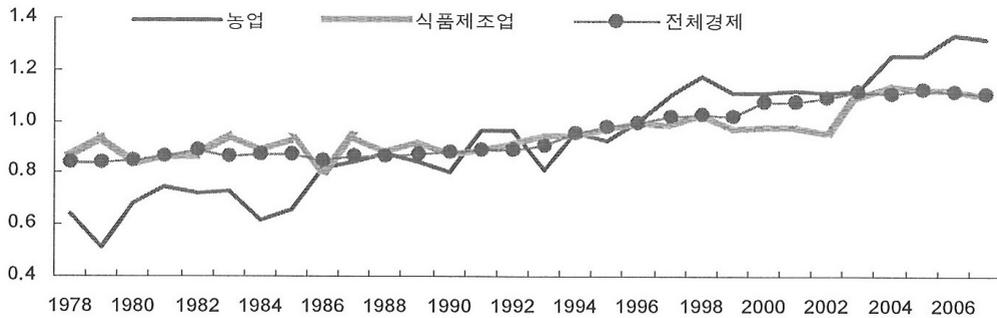
표4 농업 관련산업 고용 규모 비교

(단위: 명)

한국	종사자 수	뉴질랜드	종사자 수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26,296	육류 가공	25,380
		가금육 가공	2,770
		베이컨, 햄 등 제조	1,760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10,568	우유 및 크림 가공	1,450
		아이스크림 제조	590
		낙농품 제조	8,060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4,904	과일, 채소 가공	5,380
동, 식물성 유지 제조업	2,692	유지, 지방 제조	290
곡물 가공품 제조업	8,306	제분제품 제조	200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686	곡물, 제빵류 제조	620
사료제조업	7,807	사료 제조	1,070
기타	-	기타1)	7,790
소계	71,259	소계	55,360
음·식료품 제조업 전체	185,419	농업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전체	83,250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의 농업 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부문이 창출하는 고용 효과는 농림업 부문보다 크다. 즉, 우리나라는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수가 농림업 취업자수에 크게 못 미치나, 뉴질랜드의 경우 농림업 취업자 수와 농업 서비스 및 1차 가공산업 종사자수가 비슷하다. 양국 간 비교가 가능한 업종에 국한 할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 육류 가공 부문의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낙농품과 과일·채소 가공의 고용 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 업종의 고용 인원이 음·식료품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뉴질랜드(46.6%)가 한국(27.9%)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유형별 경지비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 뉴질랜드농업, 식품제조업, 전체 산업 생산성 변화



주: 생산성 지수는 Chained Toenqvist Method를 통해 계산

뉴질랜드 농업 생산성은 1984년 농정개혁 후 전체 경제 및 식품제조업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984년 농정개혁 이전과 1978~1984년 기간 동안 농업의 생산성은 감소하였으나, 농정개혁 후 1984~2007년 간 농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3.3% 상승하였다. 이는 1984~2007년 전체 산업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1.0%보다 3배 이상 높다.

표5 뉴질랜드의 산업별 기간별 연평균 생산성 증감률

(단위: %)				
구분	농업	식품제조업	임업	전체 산업
1978~2007	2.5	0.9	1.5	0.9
1978~1984	- 0.5	0.6	1.5	0.5
1964~2007	3.3	0.9	1.6	1.0

한국의 경우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이 연도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 상태이며 자본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표6 한국 농업부문 요소별 생산성 추이

연도	노동생산성(원/시간)	토지생산성(원/10a)	자본생산성
1995	9,387	954,171	0.61
2000	11,778	1,050,677	0.47
2005	12,297	1,140,668	0.36
2006	13,384	1,160,585	0.36
2007	12,839	1,077,383	0.34

2007년 뉴질랜드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약 23,912천원으로 우리나라 농가 1인당 소득 12,017천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의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97.7로 한국에 비해 도농소득격차가 다소 낮은 편이다.

표7 농가소득 및 도농소득 격차 비교(1인 기준, 2007년)

구분	(단위: 천원 %)	
	한국	뉴질랜드(NZ달러)
농가(A)	12,017	23,912 (34,736)
도시근로자 가구(B)	13,087	24,486 (35,568)
(A)(B)	91.8	97.7

뉴질랜드의 2007년 농림업 수출액은 143억 달러이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6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양 및 양고기(11.6%), 전유분(10.6%), 소고기(8.4%), 치즈(5.7%), 버터 및 크림(5.2%), 키위(3.5%), 양모(3.2%) 등이 있다. 같은 해 한국의 농림업수출액은 25.3억 달러(수산물 제외)로 전체 수출액의 0.7%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연초류(16.3%), 과자류(8.9%), 주류(7.6%), 면류(7.1%), 과일(5.7%) 등으로 신선농산물보다 가공농식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8 농림식품 수출 규모 및 비중 비교(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한국	뉴질랜드
농림식품 수출액	2,532	14,304
전체 수출액 대비 농림식품 비중	0.7	64.7
주요 수출품	담배, 과자류, 주류, 면류, 과실, 채소, 소스류, 인삼, 김치, 산림부산물, 화훼 등	양고기, 전유분, 소고기, 치즈, 버터, 낙농제품 목재류, 키위, 양모, 와인 등

#### 4. 주요 품목군 비교

##### ■ 축산업 · 낙농업

축산업은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의 68.5%(2007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주요품목은 양, 젖소, 육우이며 넓은 초지를 이용한 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한국의 축산업은 농업 부가가치 중 13.1%(2007년)를 차지하였다. 주요 품목은 한우, 돼지, 닭 등이며 주로 배합사료를 이용해 축사 내 밀집 사육을 하고 있다.

표9 주요축종별 사육 규모 비교(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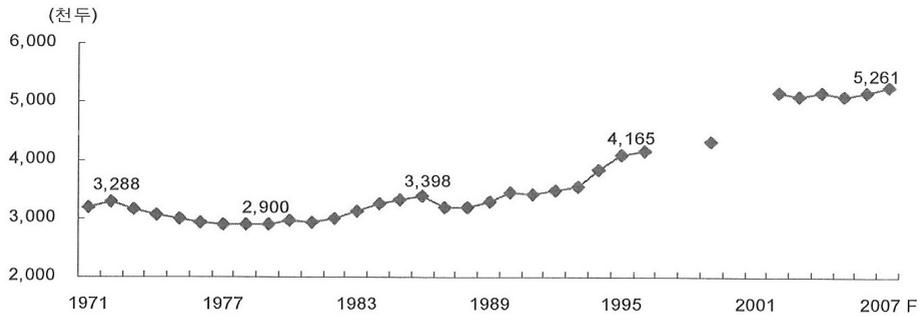
(단위: 천두)

구분	한국	뉴질랜드
양	-	38,460
젖소	453	5,261
육우	2,201	4,394
사슴	98	1,396
돼지	9,606	367
닭	119,365	17,760

뉴질랜드 젖소 사육은 현재 사육규모가 크고 확대되고 있다. 2007/08년에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까지 사육규모와 두당 착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양 사육은 대규모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뭄과 양고기·양모 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양 대신 낙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양고기 생산 감소로 가공시설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육우 역시 낙농 부문으로의 전업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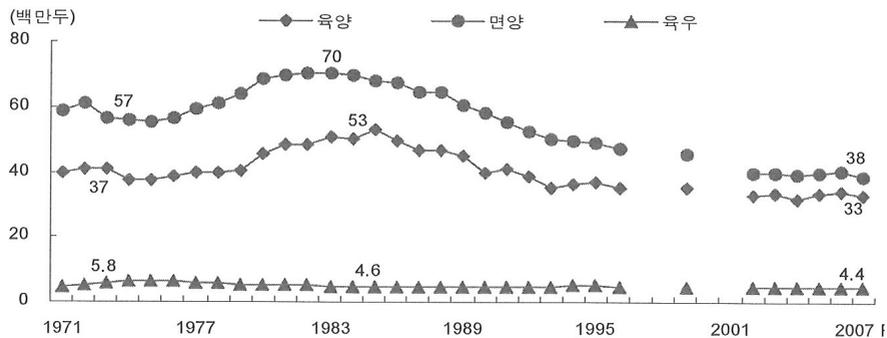
그림3 뉴질랜드 젖소 사육두수



주: 일부 년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그림4 뉴질랜드 양 및 육우 사육두수



주: 일부 년도는 자료가 없음.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Pastoral Monitoring Report 2008.

### 과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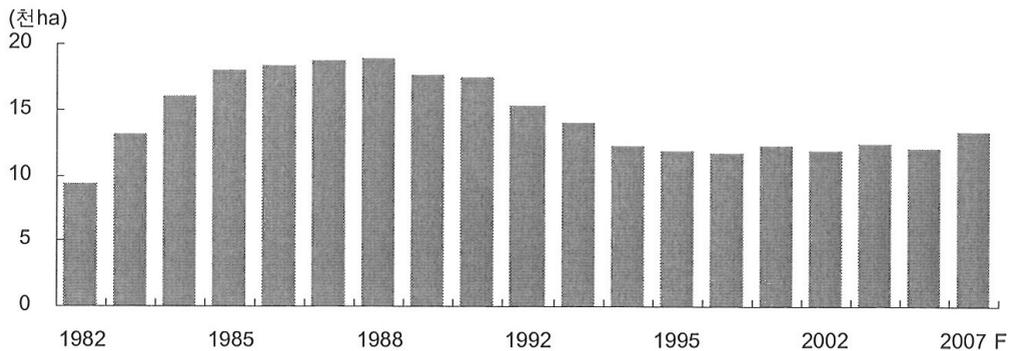
뉴질랜드의 주요 과일 생산면적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포도와 키위 재배 면적은 크게 앞서는 반면, 사과 는 우리나라 규모의 약 1/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10 주요 과일의 방산면적 비교(2007년)

(단위: 천ha)

구분	한국	뉴질랜드
포도	19	29.6
사과	29	9.2
키위	1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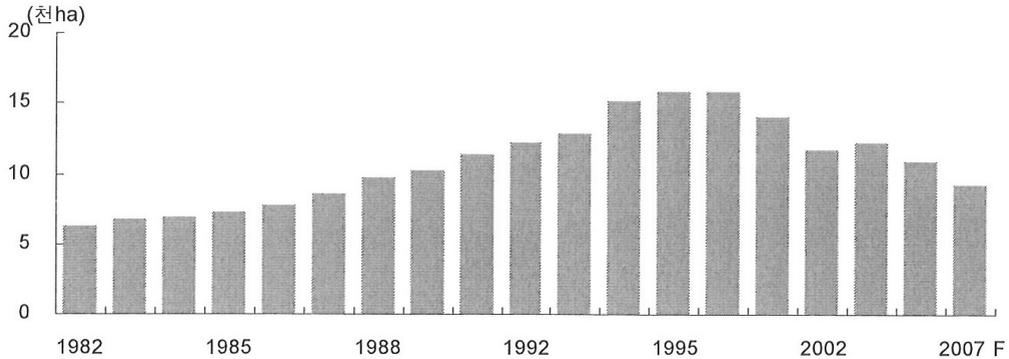
그림5 뉴질랜드 키위 재배면적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과일인 키위는 1980년대 말 이후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1988년 18.9천ha=>2007년 14.2천ha). 반면 관리기술의 향상과 양호한 기후조건에 힘입어 2004년부터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EU, 한국, 일본 등이며 최근 뉴질랜드 달러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린키위는 생산량 및 초과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골드키위는 2007/08년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림6 그린랜드 사과 재배면적



자료: 뉴질랜드 농림부, Horticulture and Arable Monitoring Report 2008.

사과는 2002년 이후 식재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2007년 면적은 2002년 대비 79% 수준이다. Braeburn, Royal Gala 품종이 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 서리로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사과의 주요 수출국은 남미,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수출량은 14~17백만 상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량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Apple Futures Project'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극소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 6.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제29차 아태총회를 다녀와서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는 지역내 회원국(46개) 농업 각료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역내 식량농업상황에 대한 협의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격년제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는 3. 26일부터 31까지 태국 방콕 소재 United Nations Conference Centre에서 개최되었고, 우리나라는 수석대표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국제협력총괄과장 등 총 5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참가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 FAO 아태 지역 32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여 물 부족 문제와 국경초월 동물질병 등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저해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FAO 아태 지역사무소의 파트너쉽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역내 식량 및 농업 상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수석대표, 하영제 제2차관은 기조연설 및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빈곤과 가난 극복을 위해 노력한 FAO의 노력을 치하하고, 식량위기와 동물질병 및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대처에 동 기구 회원국의 강화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역내 지원활동을 소개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는 제30차 FAO 아태지역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유치 의사를 표명하였고 총회는 참가 회원국 전체 찬성으로 2010년 한국 개최를 결정하였다.

넷째 동회의 참가를 계기로, Theera Wongsamut 태국 농업부 장관, FAO Jacques Diouf 사무총장, Anton Apriyantono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한식 세계화 협조요청, 제30차 지역총회 개최 협력, 농업부문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각각 교환하였다.

## 1.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 가. 아태지역 식량 농업 상황 논의

사무국은 기아경감 및 빈곤극복 등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FAO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빈곤 기아 경감을 위해 34개 회원국에 44백만US\$ 지원 및 27억US\$ 투자, 조류독감 등 질병퇴치를 위해 조류독감 예방프로그램에 151.2백만US\$ 지원, 국경초월 동물질병 예방 프로그램에 79백만US\$ 지원한 실적 등이었다.

일부 참가국 수석대표들이 자국의 농업과 식량안보상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우리나라 수석대표도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130만 달러 규모의 농업협력사업실적을 설명하고 향후 역내 식량농업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 나. 바이오에너지 부상이 환경, 농촌 발전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기회와 부담에 관한 원탁토론

대부분 회원국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고용창출 등의 잇점을 앞세운 바이오 에너지가 최근 정책담당자, 소비자, 개인사업자 등에 주목받고 있으나 식량 안보, 물부족, 환경 파괴 등의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무국은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2005년 1%에서 2050년 11%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필리핀의 약 4천만ha 자트로파 재배 계획 등 역내 현황을 발표하였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통해 각 참가국 수석대표는 자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경험과 전망,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고, 일부 회원국 대표는 각 회원국내 환경, 인력, 기술, 수요 등 내부 여건을 감안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되 자국 바이오 에너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교역 왜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는 겨울철 유희농경기를 이용 신재생에너지원 및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07~'10년간 1,500ha 규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다. 세계적/지역적 긴급 이슈: 역내 국경초월 동물 질병 발병과 관련 환경 분석

아태지역은 세계인구의 59%, 토지면적의 20%를 차지, 인구증가, 만연한 빈곤, 환경파괴로 아태지역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어 사회, 경제적 비용 불어날 것임에 따라 비상상태에 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체 회원국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참가국 발표자들은 축산물 비공식적 국경 간 교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기술과 제도에 대한 투자 필요, 조직화된 프로그램 이행 및 TAD 퇴치를 위한 지역 내 공조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선진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부분 회원국 대표들은 질병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예측, 조기발견, 위험에 기반한(risk-based) 조직적 예찰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필요를 강조하고 FAO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

#### 라. 물 부족 대처를 위한 정책, 전략, 기술 방식

물은 빈곤감축 등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물 부족은 주로 빈곤문제로 저소득계층에게는 생활, 소득, 식량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물에 대한 공평하고 안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다수 회원국 참가자가 입장을 설명하였다.

특히 FAO로 하여금 다각적, 다학술적, 분석적, 기술적 지원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물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권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개발도상국가 참가자들은 자국내 물 부족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기술과 자본, 정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 특히 관개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마. 세계화 및 자유무역 맥락에서의 농기업과 경쟁력 강화

아·태지역의 식품농업시스템이 시장주도형으로 변하고 역내 각국 정부는 농기업 및 농산업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개혁, 프로그램 우선순위 조정, 투자증대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많은 회원국들이 FAO에 지원요청을 했음을 사무국이 발표했다.

농기업 및 농산업 발전으로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증대되는 등 농기업을 통한 가치부가 기회는 급증하나 소규모 농민들은 농산업 규격 및 계약요건 미달, 소규모 가공업자들은 대규모 식품제조업자들과의 경쟁이 증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각국 정부는 산업규격 및 품질요건의 영향을 최적화하고 공정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하고 FAO는 관련 정책조언 및 역량제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농기업 및 농산업 개발의 도전에 대응하려면 정보 분석, 정책·제도·서비스 강화, 농산업 및 가치체인 지원과 관련된 공공부분의 조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FAO는 농업정책 분석, 상품시장평가 등과 관련된 회원국의 역량 제고 노력을, 각 회원국은 공공부분의 민간부문 지원 노력을 수행할 것을 일본, 태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가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는 식재료 가공으로 농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코자 농수산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출상품 개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대체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에 집중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덧붙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상품화로 농산업의 수익 증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태 지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 제공 등 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 바. 교역 이니셔티브를 위한 지원과 FAO의 역할

교역지원은 개발도상국가 또는 저개발국가들의 교역능력을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구축이 주 내용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역 확대 및 WTO 협정의 이익 구현이 가능하다고 사무국이 제안하였다.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교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교역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각 회원국 대표들이 요청하였고, 교역지원 이니셔티브는 공급 측면 능력과 교역측면 기반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농업분야 교역지원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발주체 기구들과 WTO간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사. 제30차 FAO 아태 지역총회(2010년) 개최지 결정

우리나라는 제30차 총회 개최의사 표명 및 총회 승인을 요청하였고, 회원국은 반대 없이 승인하고, 차기 개최 일정은 사무국과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 2. 수석대표 활동

### 가. 태국 농업부 장관(Theera Wongsamut)

우리나라의 한식 세계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태국정부의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하고자 면담을 신청하였다.

태국 측은 카세사르 대학교 수라차이 씨우 짜른 싸쿤 교수가 한식 세계화 2009에 참석하여 태국의 사례를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식이 태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며 대장금 드라마가 한식 및 조리법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발언하였다.

우리측은 태국의 식자재, 인테리어, 요리법, 복장 등 세계화를 위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태국측은 요리 원료 배합, 국가기준, 요리사학교, 연수과정 등에 수라차이 교수가 담당, 금번 한국 심포지엄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태국 음식 세계화에 왕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청에 대해, 왕실의 로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원료 자재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인증은 국내, 국외 소비용 원료에 모두 해당되며, 왕비는 유럽국가 등에 전시를 통해 홍보 주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나.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Anton Apriyantono)

농업발전 관련 전반적 협력을 위한 일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에 의해 면담이 성사되었다.

인도네시아 측은 아프리카의 식량생산 지원을 위한 파트너를 모색 중이며 한국은 그 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아프리카의 농업생산 역량구축에 필요한 종자, 금전적 지원 등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제안이 너무 광범위하니 구체적 분야 제시를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측은 인도네시아에 기 설치된 트레이닝센터를 통한 농부훈련에 한국의 동참을 예로 들며 개인업체, 전문가 교육자를 지원하여 농업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와 협력관계를 형성해 온 바 있고, 과거 20ha임대 조림지에 조림하여 현지 가공으로 인도네시아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등 30년의 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은 제3자(아프리카) 지원, 양자 농업협력의 신속추진을 위해 주기적 미팅을 갖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거나 MOU를 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우리 측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와 병행해 양국간 농업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다. FAO 사무총장 등

Jacques Diouf FAO 사무총장에게 차기 아태 총회 아국 개최를 위해 배려한 그간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였고 사무총장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총회를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추진코자 하니 이에 협조 희망하였다.

Noori Naeini FAO 이사회 독립의장은 아국 수석대표에게 독립외부평가(IEE) 권고 개혁사업 200여 프로젝트 추진에 아국의 재정 지원을 요청, 이에 아국 수석대표는 개혁 지속 추진 지지 및 본국에 귀국 후 검토하겠다는 요지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 3. 평가 및 관찰

각 회원국(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및 국경초월 동물질병 등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방해 여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회원국 간 협력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 가능한 역내 농업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구적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위기와 연계된 가난 및 기아 인구 증가, 소농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0년 제30차 아태 지역총회의 우리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FAO 아태 지역 사무소와 세부사항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국내 개최 효과 확대 도모)

## 제29차 FAO 아태 지역 총회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인사말)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금번 총회에 참석하여 아태 지역의 식량 및 농업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FAO와 아태지역 각국은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태 지역은 농업부문에 있어 발전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회원국들의 빈곤감소,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진척이 있었음

특히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2006-2007년간 아태 지역의 빈곤과 기아퇴치, 양성평등과 여권신장, HIV/AIDS/말라리아/조류독감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동반자관계구축 그리고 제28차 지역총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한 FAO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식량위기 대처)

아태지역 개도국에서 과거 30년 동안 증가된 자연재해, 피해 인구 규모, 경제적 손실은 뚜렷하게 증가 추세이며 쓰나미, 지진 발생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예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위험요소 감소 노력, 재해 발생시 국제사회의 공조가 매우 중요함

앞으로 세계 인구 증가,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임에 따라 가뭄, 홍수, 농지부족, 바이오에너지와 식량간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 할 때, 모든 회원국들이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초 식량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증산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됨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FAO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큼.

(국경초월 동물 질병에 대한 대처)

아태지역 식량안보를 포함한 세계 식량안보를 유지하는데 국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나 국제교역의 증가는 동식물 병, 해충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

최근 구제역, 조류독감 등 국경을 초월하는 가축 질병의 발생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 기아경감, 가난 극복 등에 악영향을 미쳐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FAO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 재해, 동물 질병 등에 아태지역 회원국가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권고하고 회원국간 협력을 조율하기 바람

한국은 과거 구제역, 조류독감 등 질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아태 지역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대처)

역내 식량수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사전예측 측면에서 지역 국가간 경험 공유와 협력에 바이오 에너지 발전 분야도 포함되어야 함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농촌지역 고용창출 이점이 있어 최근 각국 정책담당자, 소비자, 개인사업자에 관심을 야기하고 있으나, 식량 안보, 자원이용,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번 각료급 회의가 각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경험과 관점을 논의하고 이익과 위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FAO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망 및 바이오 에너지 미래에 대한 분석적 예측을 기대함

FAO가 '06-'07년에 아태 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용 경쟁적인 바이오 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해 아시아 개발은행, IFAD와 공동으로 미팅을 개최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함

#### (한국의 아태 지역 내 활동)

아태 지역 국가들은 농업부문의 여건과 발전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간 상호 협력과 경험공유가 필요함.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극빈국에 대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농업생산기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임.

지난해 한국은 WTO/DDA 농업협상 이후의 국제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7차 국제아태 농정포럼을 개최하여 아·태 지역의 농업정책 연구를 위한 공동 노력 확산을 도모하였음

그 밖에 ODA(공적개발원조)와는 별도로 동남아시아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농촌 개발 협력 15개 사업에 130만불을 지원한 바 있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

(맺음말)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태지역 각국과 협력하여 FAO의 기아 및 빈곤극복, 삶의 질 향상 노력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계획임

끝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30차 아태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하니 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함

[Republic of Korea]

## Keynote Speech at the 29th FAO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Pacific(Draft)

Mr. Chairman,  
Director-General,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address this Regional Conference and share my views on regional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So far, FAO and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made great efforts to enhance food security and develop agriculture. As a result, agriculture in the region has been on steady rise and Member States have witnessed great progress in poverty reduction, food securit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FAO for its efforts to reduce poverty and hunger in the regio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eradicate HIV/AIDS, malaria and avian influenza,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ild partnerships and implement suggestions from the 28th Regional Conference during 2006 and 2007.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region, natural disasters and the human and economic toll resulting from them have become considerably severe over the last 30 years. We have also seen the devastating impacts tsunami and earthquakes can have.

In order to prevent any such incidents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have to work together closely to mitigate risks by installing an early warning system for natural disasters and jointly respond to emergencies.

With the anticipated acceleration in world population growth and climate change, drought, floods, farming land shortage, competition for bio-energy and food are likely to intensify. Therefore, it is urgently needed for all Members to take full advantage of existing resources and increase food production in a sustainable manner.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igher expectations for FAO than ever.

While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maintaining food security is growing, increased trade across borders brought new risks for the spread of pests and animal diseases.

The occurrence of livestock diseases that go beyond national borders, like foot-and-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will have negative impacts not only on agricultural production but on rural development, hunger reduction and poverty elimination.

In that respect, FAO shoul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so that Member States can appropriately respond to natural disasters and animal disease outbreaks and coordinate efforts among its members.

In the past, Korea successfully contained outbreaks of animal diseases such as foot-and-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and is willing to share its experiences with other Asian-Pacific nations.

Experience sharing and cooperation in Aisa and the Pacific should also include measures to develop bio-energy in order to promote closer monitoring and prediction for food supply and demand.

Bio-energy has recently drawn attention from policy makers, consumers and businesses since it has benefits for energy security,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and job creation in rural communities.

However, some people are raising concerns over its negative impacts on food security, resource allocation and the environment.

I sincerely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ew each country's bio-energy policies and the risk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them. I look forward to an analytical forecast of the impact the bio-energy industry may have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and the future of the bio-energy industry.

It was an encouraging development that FAO jointly hosted a meeting with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IFAD in 2006 to develop cost-competitive bio-energy sectors, inviting Member Stat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Since countries in the region show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ivergent agricultural conditions, they need to cooperate and share experience.

Korea is committed to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the poorest nations with low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o assist them in improving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come of rural households.

Last year, in preparation for expecte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after WTO/DDA negotiations, Korea hosted the 7th Asia Pacific Agriculture Policy Forum to build shared networks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region.

Korea also provided 1.3 million dollars for 15 program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a cooperative program for rural development and stands ready to further increase its contribution to such projects.

Going forward, Korea plans to steadily increase funding for areas that require joint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rk with regional partners to actively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FAO's efforts to reduce hunger and poverty and raise living standards.

Finall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Korea's intention to host the 30th FAO Regional Conference for Asia and the Pacific.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사진 자료〉



기조 연설 (1)



기조 연설 (2)



태국 농업부 장관 면담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면담



FAO 독립 의장 면담

## 특별기고

###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한호  
GS&J 인스티튜트 원장 이정환

###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곤

### 한-칠레 FTA 발효 5년평가

대한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고성은 연구원



萬事皆有情(만사개유정)

浮生空自忙(부생공자망)

온갖 일이 모두 운명에 정해져 있거늘

덧없는 인생은 부질없이 해매는도다



- 김삿갓 어록 中





# 1. 뉴질랜드의 농업개혁,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한호  
GS&J 인스티튜트 원장 이정환

※ 이 자료는 시선집중 GS&J 제77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1. 벼락같은 뉴질랜드 경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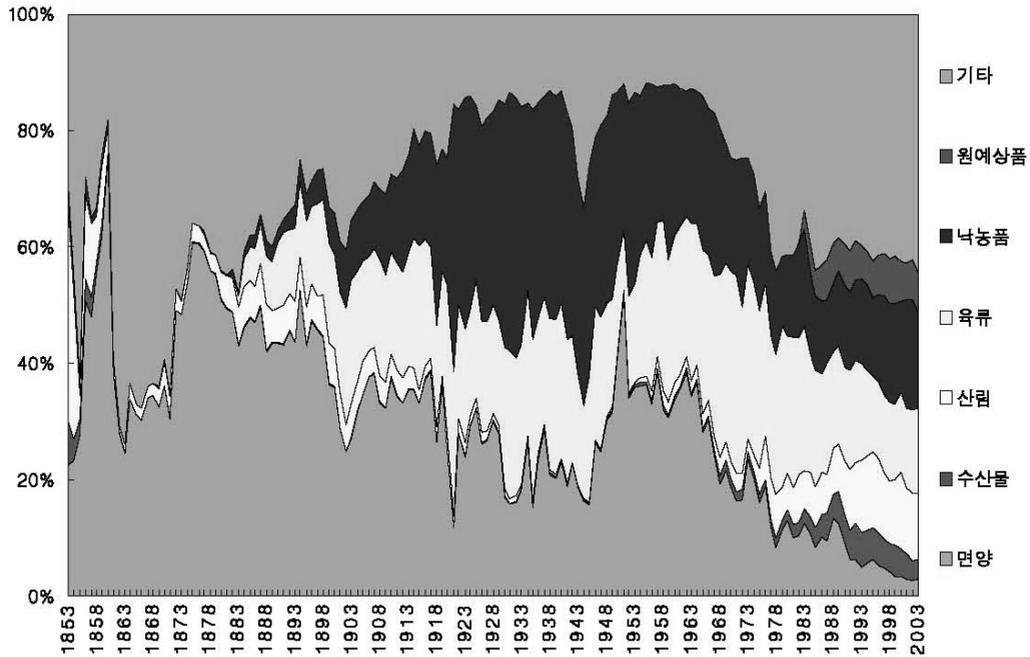
-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은 전격적으로 그리고 벼락같이 진행되었다.
- 뉴질랜드는 1984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감하고 급속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환율과 이자율을 일거에 자유화하고, 수입규제와 수출 지원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 특히 농업생산액의 30%가 넘었던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수년 사이에 철폐할 정도로 급진적 이었다.
- 이 같은 뉴질랜드의 과감한 경제개혁은 경제부문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한 많은 나라에게 모범적 개혁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 그런데 이 같은 급격한 개혁은 놀랍게도 농업인들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 뉴질랜드 경제개혁은 그 과감성 못지않게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던 농업인이 농업보조금 철폐를 포함하는 경제개혁을 요구하여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과연 1984년 개혁 이전과 이후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농업인은 경제개혁을 요구하였는가?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뉴질랜드 개혁은 한국 농업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2. 사면초가에 빠져 있던 뉴질랜드의 주력 수출산업, 농업

- 농업은 뉴질랜드의 주력 수출산업이었다.
- 뉴질랜드는 기후조건이 좋고 농경적 면적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나 되지만 인구는 1/10정도에 지나지 않아 농축산물의 90%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 농축산업과 그 연관산업이 총 GDP의 16% 정도를 차지하여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농업의존도가 높으나, 농업경영체는 약 8만여개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 반 정도만이 상업적 경영체였다.
- 1960년대에는 농축산물이 전체 수출의 90%가 넘었고, 1980년대에도 60%가 넘어 농업은 뉴질랜드의 주력 산업이자 핵심 수출산업이었다.
  - 세계 2차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요가 팽창하는 가운데 양모, 양고기,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수출하여 1950년대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림1 뉴질랜드의 수출품목 구성추이(1853-2003년)



자료: Briggs, P (2007), "Looking at the numbers A view of New Zealand's economic history",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Research Monograph 69, Wellington의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 한편, 뉴질랜드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관세와 쿼터제에 의해 공산품의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고 국내 생산을 진흥하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 그 결과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품과 기자재의 가격이 높고,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농축산물의 수출호조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 1970년대 들어 농축산물 수출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 1970년대 들어 선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내공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였고 특히 뉴질랜드의 주 수출국이었던 영국이 1973년 EC에 가입하여 뉴질랜드에 주어졌던 특혜가 없어지자 농축산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림2 뉴질랜드의 수출시장: 국별 수출비중(1850~2005년)



자료: Briggs, P (2007), "Looking at the numbers A view of New Zealand's economic history",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Research Monograph 69, Wellington의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 이같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오일쇼크까지 겹쳐 무역수지는 일거에 적자로 전환되고 그 규모가 1980년대 중반에는 GDP의 8%에 이르게 되었다.
-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억제(평가절상)로 농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 무역적자에 대응하여 농업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내산업 진흥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금과 수출보조금 등이 늘어나면서 1984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9%까지 증가하였다.

- 에너지, 철강 등 중요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이른바 "거대산업전략(ThinkBig 전략)"이 추진되어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은 10%를 넘게 되었다.
- 한편, 노동자는 산업별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차제 되어 있었고 산별 노사 협상에 의해 매년 임금은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었다
  - 그 결과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져 연간 상승률이 15%를 넘었고 그만큼 농축산물의 실질가격은 하락하고 농축산물 가공과 수출비용은 상승하였다.
  - 특히 항만노조는 매우 강성이어서 선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파업 등으로 선적이 지연되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 더욱이 뉴질랜드는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낮게 유지하였고, 그 만큼 수출 농산물의 농가 수취가격은 인위적으로 낮아졌다.
- 드디어 1982/3년에는 고율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 물가, 임금을 동결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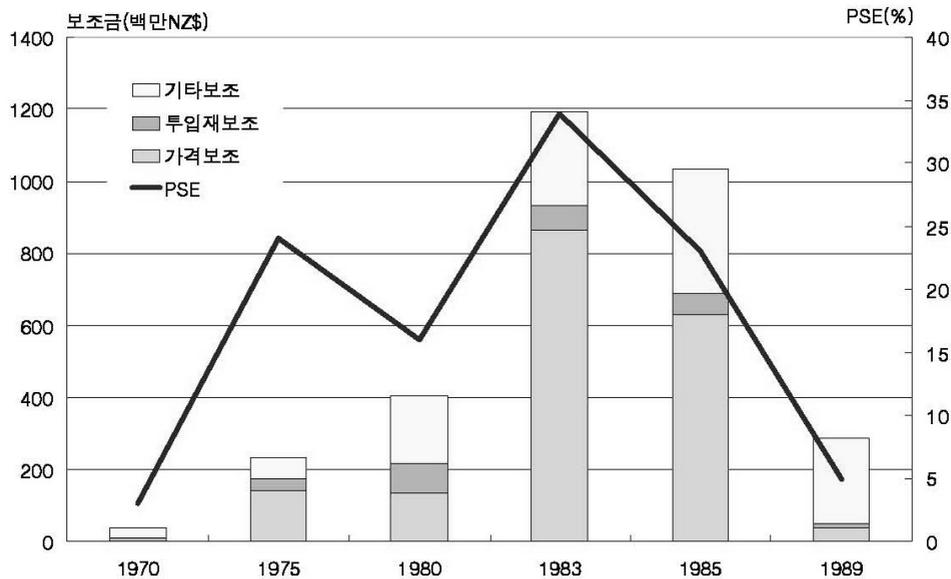
### 3. 시장에서 격리되는 수출산업, 농업

- 사면초가에 빠진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하였다.
- 환율억제에 의한 수출농산물의 수취가격 하락, 공산품 수입규제에 의한 농자재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농산물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농업부문에 각종 정부 보조금이 급증하였다.
  - 수입규제로 인한 비용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비료, 농기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농업은행을 통해 저리자금을 공급하였다.

특별기고

- 또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축산진흥제도와 농지개발촉진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초지면적과 면양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고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1978년에는 농축산물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SMP(Supplementary Minimum Price)제도가 도입되었고, 최저가격은 매년 농업인 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 그 결과 1983년에는 농업보조금 총액이 농업생산액의 34% 수준까지 늘어났고 (그림3), 이것이 다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3 뉴질랜드의 농업보조금 추이



주 1) 기타보조에는 금리보조, 조세 특혜 등이 포함됨

2) PSE는 생산액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나타냄

자료: R Sandrey & R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P72~73

● 농업생산자는 시장의 신호로부터 차단되었다.

- 수출을 목표로 하는 농업생산자가 국제시장가격보다 정부의 지원과 보장 가격에 의해 생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 일례로 국제시장에서 양모수요가 증가하리라는 예상 아래 면양사육을 장려하고 보조금 수준을 높인 결과 면양사육이 급증하였으나 국제수요가 예상과 같이 증가하지 않자 면양을 대량 폐지하는가 하면 쇠고기 생산은 수출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 농지개발자금 공급으로 한계지와 열등지가 과도하게 목초지로 전환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토양 침식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 농용자재에 대한 보조가 늘어날수록 비료의 과잉투입, 시설과 기계에 대한 과잉투자가 나타났다.
- 대부분의 생산품을 수출하는 농업이 국제농산물시장과 투입재시장의 신호에서 차단된 채 정부보조금에 따라 생산활동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다.
- 또한 정부지원은 농지의 자본화로 농지가격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200% 이상 상승하여 농지구입비용이 상승하고 경작농민의 부담이 늘어났다.

#### 4. 뉴질랜드 농업의 탈출구, 경제개혁

- 농업단체가 농업보조금 문제를 포함한 경제개혁을 요구하였다.
- 농민단체는 점점 더 악화되는 농업경영 여건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치유하고 환율을 현실화하여 농업을 옥죄고 있던 거시경제적 여건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983년 농민단체는, 환율조정과 재정지출 억제, 고음라 임금결정을 합리화 하는 노동시장 개혁, 수입자유화, 운수·운송 등 산업분야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요구하였다.

\* 뉴질랜드 농업은 수출산업이었으므로 농민단체는 전부터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였고 수입대체 산업인 제조업계는 수입규제를 요구하여 대립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상황과 정 반대였다.

● 이러한 개혁이 수용된다면 농민단체는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최저가격보장 제도인 SMP의 폐지를 수습하겠다고 전격 제안하여 경제개혁 논의를 주도 하였다.

- 농민단체는 환율이 현실화 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농가의 실질 수취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 개혁 및 경쟁체제의 도입, 수입규제의 철폐 등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이 철폐되더라도 농업의 수익성이 개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경제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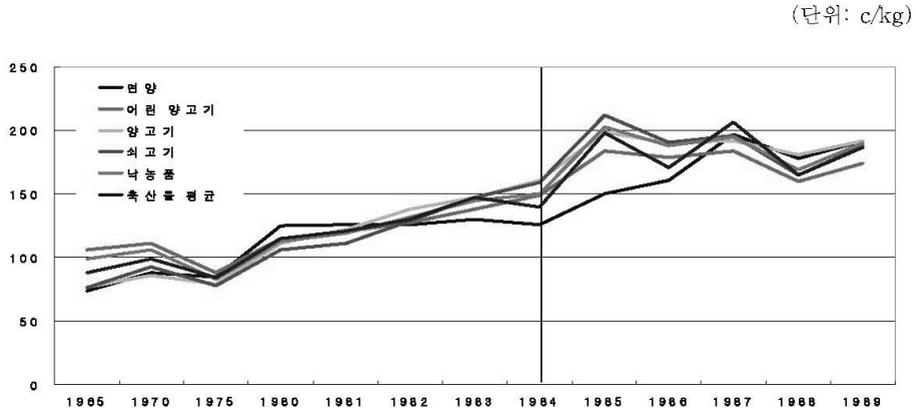
●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환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차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조금 지출이 팽창하자 정부채무가 GDP의 41%에 이르러 정부부도를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5. 개혁의 시동, 그 과정의 갈등과 고통

● 1984년부터 과감하고 급격한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 1984년 경제개혁을 공약한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자 즉시 임금과 물가를 자유화함과 아울러 환율을 20% 인상하고, 뒤이어 1985년에는 환율을 자유화하였다.
  - 환율상승에 힘입어 1984년에 수출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다.
- 모든 산업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각종 경쟁제한 조치를 제거하여 나갔다.
- 또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고용과 임금이 경쟁적 관계에서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 중요한 재정적자 요인이던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보조금을 단기간에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다.
- SMP를 필두로 하는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지지가 철폐되고, 토지개발촉진자금 지원제도, 비료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 저리융자제도가 폐지되었다.
  - 그 결과 농업생산액의 34%에 이르렀던 농업보조금이 1989년에는 5%로 감소하였다.
- 그러나 경제상황과 농업여건 변화는 예상을 빗나갔다.
- 각종 규제가 철폐되자 그 동안 억제되었던 가격인상 요인이 일시에 표면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도리어 심화되고 농축산물 실질판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한편, 금리를 자유화한 가운데 재정지출을 억제하자 이자율이 연리 20% 수준까지 급상승하였고, 고금리를 쫓아 해외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1984년에 20% 인상되었던 환율이 다시 급락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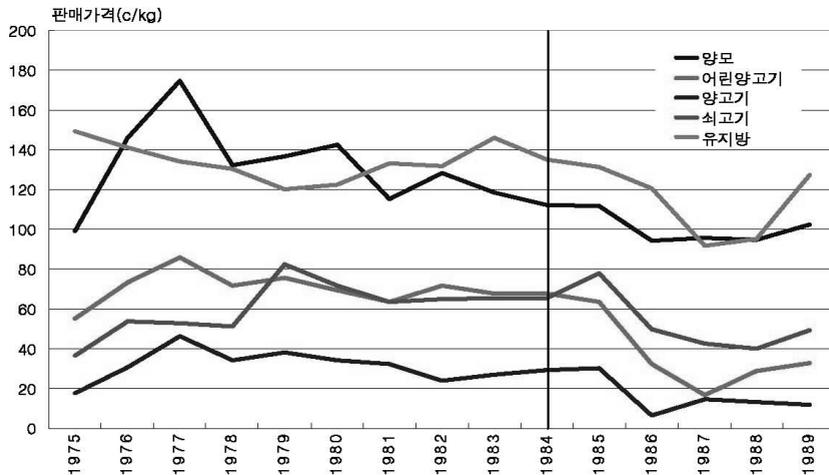
그림4 상품별 환율변화



주: 1) 상품별 환율이란 수출 대상국 통화와의 환율을 그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것임.  
 자료: R Sandrey & R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 환율하락은 수출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을 하락지리는 요인이 되어 결국 1985년 이후 실질 농가판매가격은 하락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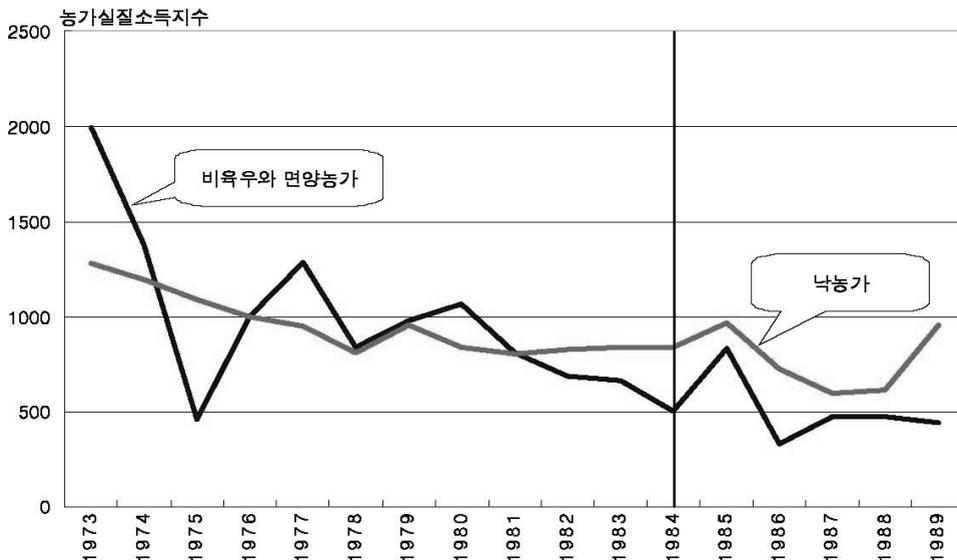
그림5 농축산물의 실질 판매가격 추이



자료: R. Sandrey & R.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 인플레이션은 격화되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하락하여 농업 생산자의 경영여건은 악화되었고 1986년 이후 농가의 실질소득은 계속 감소하였다.(그림 6).
  - 특히 이자율 상승으로 부채가 많은 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고, 농지가격이 폭락하여 연체처리와 담보 물건 경매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과 농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 이에 비해 일반 소비자와 공업부문은 임금상승과 수입감소, 외국자본 유입증가로 경기가 활성화 되어 농업의 희생 위에 경제개혁의 이득이 비농업부문에 집중되는 듯이 보였다.
  - 농민들은 수입규제 철폐, 노동시장 개혁 등이 부진하여 개혁의 고통이 농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격렬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림6 실질 농가소득 변화



자료: R. Sandrey & R.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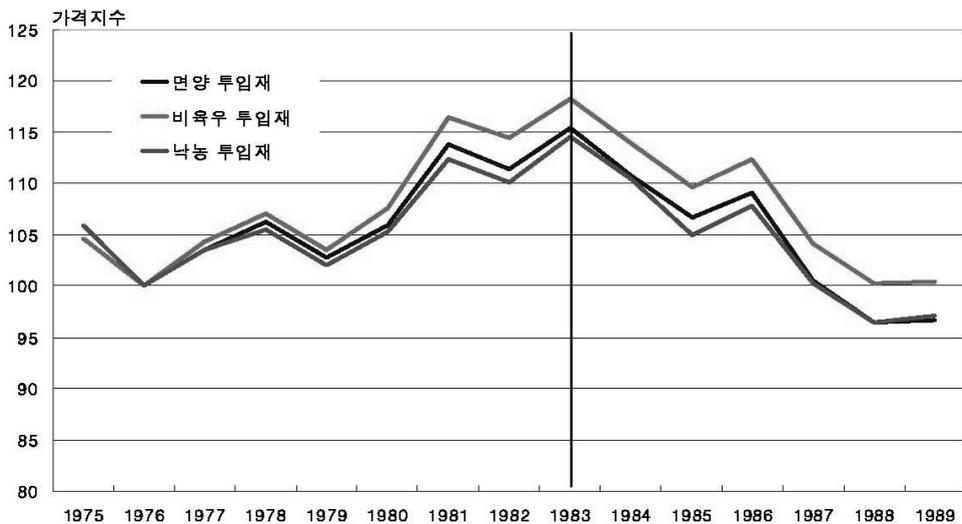
- 곤경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연이어 마련되었다.
- 먼저,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용자제도의 폐지로 금리가 높아진 만큼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채무조정제도」를 1986년에 도입하였다.
  - 이 제도에 의해 농업은행 대출금의 33%가 탕감되어 농업부문 총 부채의 20%가 감축되었고, 일반 은행들도 채무 농가와 협의를 통해 유사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
- 회생이 어려운 농가에게는 모든 자산을 포기하면 부채를 탕감할 뿐만 아니라 2만 달러를 지급하여 탈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저 생계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
  - 그러나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부채를 탕감 받고 탈농한 농업인은 전체의 1% 정도인 8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어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의 1/10에 지나지 않았다.
- 그 밖에 농가의 회생과 경영개선, 농외취업을 돕기 위한 컨설팅제도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 6. 시장으로 돌아온 농업의 발전

- 1980년대 말부터 서서히 거시경제 변수는 안정되고 농업의 경영예전은 개선되었다.
- 20%에 육박하였던 물가상승률이 1987년에는 6% 수준으로 떨어지고 1990년대에는 2-3% 수준까지 낮아졌다.

- 이자율도 한때 2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서서히 낮아져 1990년대 초에는 6-7% 수준으로 낮아져 농가의 부담이 가벼워졌다.
- 수입자유화로 투입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여 농업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그림 7).

그림7 농산물 투입재 실질가격(1976년=100)



자료: R Sandrey & R Reynolds, Farming without Subsidies, 1990

- 노동시장 개혁으로 항만노동자 수는 34% 감소하였으나 1인당 처리량이 53%나 증가하여 낙농품 선적비율은 30%, 원예상품 선적비율은 50%나 감소하였다.
  - 또한 임금협상의 주체가 산업별 노조에서 개별 기업노조로 바뀌자 임금인상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농축산물 유통과 가공과정의 비용이 감소하였다.
- 농업부문의 요소투입과 생산이 시장의 신호에 따라 재편되었다.

- 보조금 감축에 따라 면양과 비육우용 초지면적이 1984-1994년 사이에 16%(193만 ha)나 감소하였고, 이 중 108만 ha는 낙농용 초지 등으로 전환되고 85만ha는 임야지로 환원되었다.
- 금리상승으로 농업금융 수요가 50% 이상 감소하였고, 1988년의 농업투자 규모는 1984년의 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면양에 대한 가격지지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면양 사육두수가 7천만두(1983년)에서 6천만두(1989년)로 감소한 반면, 사슴과 염소의 사육두수는 대폭 증가하였고 과일 생산은 1984-199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보조금 폐지로 비료 투입량이 15.5kg(두당)에서 6~7kg으로 감소하며 비료 판매량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다른 투입재의 사용도 크게 감소하였다.
- 농가의 합리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하였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가 1976-1984년 사이에는 연간 1%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4~1990년대에는 2%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1990-1997년에는 다시 2.3% 수준으로 높아졌다.
  - 개혁과 동시에 폭락하였던 농지가격이 1980년대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80년대 초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 축산물뿐만 아니라 원예상품, 포도주 등의 수출이 늘어나 총 농축산물 수출액이 1984년 50억 달러에서 1994년에는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 그 사이에 축산물의 수출비중은 60%에서 40%대로 감소하고 그 만큼 과채류, 포도주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 7. 뉴질랜드 농업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뉴질랜드 농업은 농업생산의 90%를 수출하여 뉴질랜드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산업이었다.
- 따라서 개혁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나 자동차산업과 같이 일관되게 모든 상품의 수입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시장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농업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다.
- 그런 의미에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이 우리나라 농업의 개혁 모델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뉴질랜드 농업개혁은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을 포괄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이었다.
- 뉴질랜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규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부분을 지원하고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 또한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으로 임금상승률은 지나치게 높았고, 환율상승은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수출산업인 농업은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부문에 방대한 보조금이 집중되었다.
- 이러한 경제정책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과감한 경제개혁이 불가피하였고, 농업이 주력 수출산업이었으므로 농업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 농민단체가 농업개혁을 주장한 것은 농업에 불리한 거시경제정책, 수입규제 정책, 노동정책을 개혁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컨대 수출산업인 농업에 달리한 경제정책을 개혁하는 대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여 재정부담을 해결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경제개혁이었고 농업개혁의 요체였다.
-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은 우리나라의 개혁모델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 당초 기대와 달리 개혁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농업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였다.
- 보조금 감축은 농업에 즉각 직접적인 명망을 주는 반면 다른 경제정책의 개혁에 따른 이득은 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농업부문은 부채문제, 소득감소 문제 등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그만큼 불만과 지위가 격렬하게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과감한 부채조정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도입되어 개혁과정 중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요컨대 보조금 감축과 같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부작용을 치유할 다양한 보완조치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농업이 시장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재편되었다.
- 정부지원과 보조금이 감축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더 수익성이 있는 부분으로 생산이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농업은 새로운 여건에 적응차고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 따라서 농업문제를 생각하는 경우 여건변화에 의한 직접적 손실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적응력에 주목하여야 하며, 정부는 생간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뉴질랜드의 문제는, 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그 산업을 진흥시키고 특정 상품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려는 정부 주도형 정책에 있었다.
-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대체하려 한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났고, 농업보조금도 그 자체보다 정부가 품목별 지원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이 시장의 가격신호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었다.
- 따라서 농업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상품과 주체를 선정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생산과 연계된 정책을 철폐하여 시장의 선택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개혁은 생산과 연계된 보조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뉴질랜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방향과 수준에 따라 산업생산과 상품수출이 결정되는데 있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지원 및 보조금제도도 대부분 특정 상품의 생산 및 수출 지원과 연계된 것이므로 신속히 이들을 생산중립적이 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 정부의 통제 아래 있던 환율과 이자율을 일거에 자유화하고, 수입규제와 수출 지원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 특히 농업생산액의 30%가 넘었던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수년 사이에 철폐할 정도로 급진적 이었다.
- 이 같은 뉴질랜드의 과감한 경제개혁은 경제부문의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한 많은 나라에서 모범적 개혁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 그런데 이 같은 급격한 개혁은 놀랍게도 농업인들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 뉴질랜드 경제개혁은 그 과감성 못지않게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던 농업인이 농업보조금 철폐를 포함하는 경제개혁을 요구하여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과연 1984년 개혁 이전과 이후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농업인은 경제개혁을 요구하였는가?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뉴질랜드 개혁은 한국 농업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2. 기업의 농업진입, 보약이 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곤

※ 이 자료는 시선집중 GS&J 제76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1. 가족경영의 분화와 새로운 경영주체

일본농업은 가족경영 중심의 농업구조로서, 1925년 이후 10년간 출생한 세대가 1945년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으로 신분장승을 하여 전후 일본농업의 주축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이 세대가 최근 농업에서 은퇴하면서 일본농업에 많은 충격과 변화를 주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법인화하여 성장한 농가가 있는 반면에,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고 자급적 농가로 전략하면서 농업에서 은퇴하는 농가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후계자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농지 유희화가 늘어나고 농업 생산이 감소하여 지역농업이 사양의 길로 들어서고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경영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겸업화와 노동력 약화에 대응하여 농업기계은행사업이 도입되고 농작업 수위탁이 확대되었다. 농협이 농작업 알선이나 수탁작업을 실시하여 기계의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작업효율화에 기여하였고, 최근 마을단위 영농조합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나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등으로 가족경영을 대체하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은 기업이 가진 마케팅 능력이나 판매망 등을 활용하여 지역농업 진흥에 강한 자극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 진입조건이나 농지제도 개혁 등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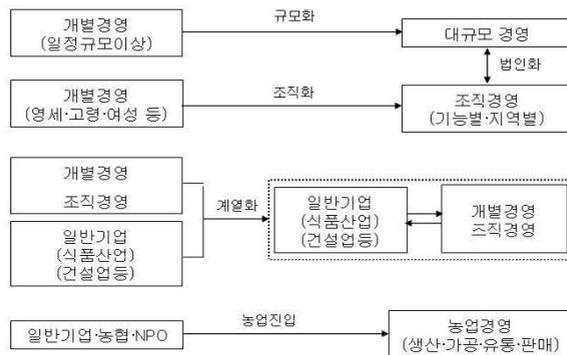
## 2.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실태

### 2.1. 4가지 유형의 경영주체

앞에서 언급한대로 가족경영은 분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영주체가 등장하여 지역농업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단위 경영주체의 발전 방향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경영능력이 있는 전업농이 규모화를 가속화하여 대규모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 유형은 영세·고령농가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조직화하여 경영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도 이를 반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경영'과 '마을단위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1 농업경영의 발전유형



셋째는 농가가 일반기업과의 연대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높여 나가는 유형이다. 식품제조업체나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 등과 같은 지역의 식품산업과 다수의 농가가 계열화함으로써 기업이 가진 제조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넷째는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이다. 최근 토목업이나 식품산업 분야의 기업이 지역의 요구와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에 진입하여 경영성과를 높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2.2. 기업의 농업진출 배경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가족경영만으로는 농지이용이나 지역 농업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 기업과 지역농가와의 연계에 의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의 농업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공공사업 축소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 건설업자, 안전한 원료농산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식품관련업자, 그리고 농지보전이나 도농교류를 지향하는 비영리법인(NPO) 등을 중심으로 농업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본업과 농업을 잘 조합하면 연중 고용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가 토목공사 성수기인 10월~3월에 본업에 집중하고 비수기인 4월~9월에 채소 농업을 하거나, 양조업체가 원료용 쌀 생산에 진출하여 쌀 재배시기(봄부터 가을)와 술(日本酒) 제조시기(겨울)를 잘 조합하면 종업원의 연중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이 성장산업으로서 비즈니스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 농산물 생산부문까지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2.3.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제한 완화

일본은 농지개혁 이후 '경작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경작하는 자만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노선을 유지해 왔다.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 경작자주의란 우리나라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같은 의미이다.

첫째, 기업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수탁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설원예나 양계·양돈 등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형 농업'을 행하는 경우는 진입제약이 없다.

\* 시설용지는 비농업용지로 전용되므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다.

둘째,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면 농지소유 또는 임차경영이 허용된다. 즉 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 같은 회사법인이나 농협법에 의한 농사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서 농지법 특례를 적용하여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물론 농업생산법인이 농작업수탁사업을 하거나 시설형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있다.

\*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인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비농업인이나 기업의 출자제한은 완화되고 있다.(4장 참조)

셋째,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농지 임차에 의한 경영만이 허용되나 허용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먼저 2003년 '구조개혁특구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농지임차 방식'으로 일반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표 1).

농업생산법인은 '농업내부'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자금이나 국가보조사업의대상이 되지만 일반기업은 제외된다.

표1 기업의 농업진입 형태

생산법인 유무	진입 형태	비고
일반법인	I - 1형 농작업수탁 I - 2형 시설형농업	농지 이용하지 않음 (정책자금 · 보조사업 대상제외)
농업생산법인	II - 1형 회사법인 II - 2형 농사조합법인	농지소유 및 임차경영 가능 (정책자금 · 보조사업 대상)
일반법인	III형 특정법인임대제도	농지임차경영만 허용 (정책자금 · 보조사업 대상제외 )

기업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가 인정되고 기업의 진입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5년 9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개정하며 임차방식에 의한 농업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특정법인임대제도’가 도입되었다(표 2).

시정촌이 지정한 ‘유휴농지 또는 유휴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시정촌의 중개에 의해 농지를 알선 받거나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취지의 협정을 시정촌과 체결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유휴농지를 포함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경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농지이용 확대를 도모하면서 일반기업의 농업 진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2009년 3월 현재),

표2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제도

연도	진입 제도	비고
2003	구조개혁특구제도	특구지역내 임차경영 허용
2005	특정 법인 임 대 제도	임차경영의 전국 확대(제한적 허용)
2009	농지법 개정 증	임차경영의 완전 허용(소유는 금지)

## 2.4. 기업의 농업진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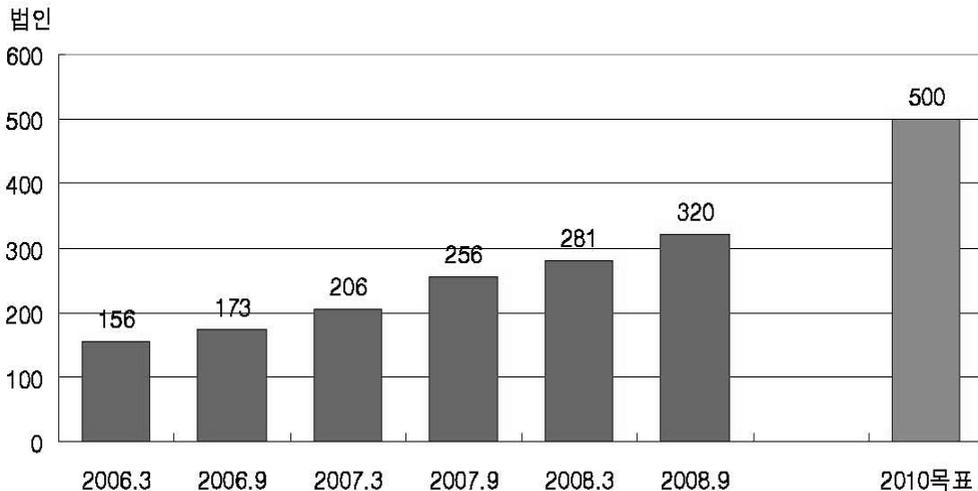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지역내의 중소기업이지만 진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0월 71개사에서 2008년 9월 현재 155개 시정촌에서 320개사에 달하며, 지난 1년간 64개사가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7개사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내부'의 경영주체로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그림 2, 표 3)

진입기업을 조직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가 170개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례유한회사 85개사, 기타 65개사이다. 기타는 농작업 체험이나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나 관광업(호텔, 여관업 등)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는 지방 건설업자(104개사)와 식품회사(65개사)가 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림2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 구조개선과

표3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현황(2008년)

구분		법인수	
		2008.9.1	2006.9.1
합계		320	173
조직형태별	주식회사	170	89
	특례유한회사	85	46
	NPO 등	65	38
업종별	건설업	104	59
	식품회사	65	46
	기타(NPO, 제3섹터 등)	144	68
영농유형별	미맥등	56	34
	채소	124	67
	과수	50	22
	축산	5	6
	화훼	11	5
	공예작물	11	4
	복합	63	35
임차농지(ha)	임차농지면적	950.1	527.8
	유휴농지	287.2	159.2
	유휴화우려농지	237.2	156.1

영농 유형별로는 채소 124개사, 과수 50개사로서 원예작물의 비중이 높으며, 미맥과 복합경영도 각각 56개사, 63개사에 달한다. 복합경영은 주작목이 미맥 23개사, 채소 19개사, 과수 9개사, 공예작물 5개사, 축산 3개사 등이다.

진입기업이 경작하는 전체 임차농지 면적은 950ha이고 1개사 평균 경영면적은 3ha로 기업경영의 규모로서는 적은 편이다. 이 중에서 유휴농지 또는 유휴화 우려농지가 524ha로서 55%를 차지하나 전체 유휴농지(38만ha)에 비해 극히 한정된 면적이지만 유휴농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은 유희농지 감소,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중소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이므로 향후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기업의 진입이 기대된다.

농림수산성도 기업유치에 적극적이어서 진입기업을 2010년 말까지 500개사로 5년간 3배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기업진입 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3. 기업의 농업진입 촉진대책 실태

#### 3.1. 정부의 기업진입지원 종합대책

기업진입지원 종합대책은 기업의 농업진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경감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① 기초적 정보수집단계

진입관련 제도와 진입절차 등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기업에 배포하는 홍보활동과 관심기업에 대한 개별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진입 검토단계

기업의 적극적인 농업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권장 활동이나 농지에 대한 이용 조정 등의 활동을 한다.

##### ③ 협정체결단계

기업이 이용하는 농지의 측량조사에 필요한 경비, 임차료 일괄지불에 소요되는 경비, 간이경지정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 ④ 취농준비단계

기업의 영농계획이나 농업생산기술 등에 대한 치밀한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 ⑤ 영농단계

농업용 기계나 시설의 리스를 지원하여 기업의 농업진입 초기투자 부담을 경감한다. 유희농지 개량에 필요한 토지기반정비를 지원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진흥을 촉진한다.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용 기계나 시설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경제 육성장화자금으로 융자해 준다.

농업 비중이 높은 가고시마현(麻兒島縣), 아오모리현(靑林縣), 시마네현(島根縣), 니이가타현(新潟縣) 등에 진입기업이 많은 편이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현이 독자적으로 농지 알선, 기술 지도, 노동력 조달, 농협을 통한 판로 확보 등의 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3.2. 농상공연대 추진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지역의 1차산업과 상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연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는 '농상공(農商工)연대'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은 기업에 의한 농업경영을 의미하는 반면에 농상공연대는 지역단위에서 농업,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숙박업·외식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상업), 그리고 식품제조업이나 농산물 가공·지역특산품 개발 등의 제조업(공업)이 연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은 외부의 성장산업이나 유망산업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공업의 지방분산정책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 즉 기초적인 산업인 농림수산업과 토착산업간의 연계가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판단에서 지역내 산업의 연대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농상공연대이다.

농상공연대는 산업간 연대로서 농업이나 농정의 영역을 초월한 정책노선이며, 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의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역활성화가 주된 목적으로서 2008년 제정된 농상공등 연대촉진 관련 2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4. 기업진입을 위한 농지제도 개혁

### 4.1. 농지의 소유와 이용 분리

기업의 진입은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진입기업에 대한 금전적·기술적인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농지제도 개정이다.

농지법 개정을 둘러싸고는 농업계와 재계간에 논란이 치열하였다. 재계는 일반 기업의 '농지소유'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①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되, ② 우량농지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전용규제 강화, ③ 다양한 경영주체의 농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농업진입 허용, ④ 장기임차제도 도입, ⑤ 농업생산법인 요건 완화 등의 선에서 합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규제는 강화'하는 대신에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2008년 12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농업진입을 허용하는 농지개혁 개선안을 제시한 후 2009년 3월 현재 농지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규제의 강화를 전제로, 농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농협에게도 임차에 의한 경영을 허용하고, 농지소유는 종전대로 금지한다.

또 임대차기간은 현재 최장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장기임차제도를 도입하여 임차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현행 '1사 10%이하, 전체 25%이하'에서 1사 10%이하 제한은 폐지하고, 농상공연대사업자의 경우는 50%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진입을 대폭 확대한다.

\* 1사 10% 이하란 1개 기업이 농업생산법인 총출자액의 10%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소유권의 규제는 종전대로 계속되지만 일반기업, 농협,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농지임차'에 의한 농업경영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유희농지 해소와 농지이용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영주체에게 지역농업 진흥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2. 안전장치 : 전용규제 강화와 이용촉진

기업의 농업진입이 농지규모화 등 지역농업의 효율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위원회가 허가하지 않을 것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고, 진입기업은 농업위원회에 농지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부실 경작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위원회란 기초 지방자치단체(시·정·촌) 단계의 행정기관이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위원 21명 이상과 지역의 유식자와 농업관련 기관 대표 등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농지의 소유자격 심사를 비롯하여, 임대차 확인, 농지전유 허가 등 농지행정과 농업·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한 조사, 정책 건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우선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지금까지 300만엔 이하에서 1억엔 이하로 대폭 인상하였고,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원상회복이 기일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행정 대집행제도를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제도란 원상회복 의무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원상회복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전용허가가 불필요하였던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도 농지 전용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병원이나 학교 등의 설치로 주변부가 연쇄적으로 전용되어 규모확대를 제약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 5.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요약과 전제조건

기업의 농업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족경영이 약체화하여 지역농업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경영주체로서 마을단위 영농조합, 농협,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가족경영이 약체화된 지역 일수록,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다. 또한 기업진입과 함께 농협과 비영리법인의 농업경영 참가도 지역에 따라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 농업진입은 농작업수탁을 비롯하여, 시설형 농업경영, 농업생산 법인에 대한 출자, 농가와 식품제조업간의 계열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일반기업의 농업진입은 구조개혁특구에서의 한정된 허용에서, 임차경영의 부분적 허용, 그리고 임차경영의 완전허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였던 것은, 농업측에는 기업의 마케팅 능력이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측에서는 노동력의 연중 고용, 기업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되어 양측의 이해가 상호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진입기업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식품제조업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농지제도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경작자주의' 노선에서 농지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되 전용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농업생산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일반기업의 임차경영을 완전 허용하기에 이르러 전후 50년만의 농지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농업진입 허용과 함께 지역내 기업간 연대형식의 농장공연대도 병행되고 있으나 기업의 농업진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채산성이 악화되면 철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농업진입 허용과 함께 지역농협의 농업경영 참가의 길을 열어두었다. 농협은 그동안 농작업수탁사업 실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 자회사에 의한 농업경영 등의 형식으로 지역농업을 지원해 왔으나 향후 지역농업 진흥이라는 입장에서 '농협의 농업경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진입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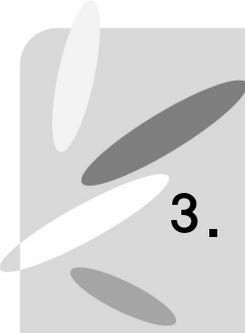
기업의 농업진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진입기업이 가진 경영능력 등의 장점을 살린다고 해도 당해 지역의 영세한 가족경영과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기업이 농업진입을 계기로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가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높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진입기업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 능력 향상이나 지역자원,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 등을 보전·계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지역이나 때에 따라 토양·강수량·일조 등이 달라 리스크도 높다. 과잉생산이나 수입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등 외부환경에 지배받기 쉬우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입기업에 대해 지금까지는 진입까지의 지원조치는 강구하고 있지만 '농업외부'에 위치 설정하여 농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역농업 담당주체로서 '농업내부'로 인정할 것인지, 또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불안정한 임차경영에 대해 어떻게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할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진입기업도 새로운 경영영역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에 대한 수요가 단순한 식품이나 사료생산에서, 약재나 천연섬유, 에너지, 건축자재 등 원자재 생산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한 다양한 원자재 생산에서 가공·유통·직판 등으로 새로운 경영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 3. 한-칠레 FTA 발효 5년평가

대한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고성은 연구원

### 1. 한-칠레 FTA 개요

#### 가. 추진 경과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양국은 1998년 12월 한-칠레 FTA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장접근, 검사 및 인증,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분쟁해결 등 5개 작업반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1999년 9월 APEC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12월 1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했고 2000년 12월까지 총 4차례 협상을 실시했으나 국내 포도농가의 반발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

2002년 7월 새로운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협상이 8월에 재개되었고, 10월 25일 협상 타결, 2003년 2월 15일 정식 서명되었음.

2003년 7월 한국측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농업계의 반발로 비준이 여러 차례 무산되었으나, 2004년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4월 1일부터 공식 발효.

일 자	협상 경과
1999. 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 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 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 11. 14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0. 12.12~15	제4차 협상개최 (서울)
2001. 6월,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외무장관, 협상 재개 합의
2001. 10월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조기 타결 입장 확인
2002. 2. 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 8. 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 9. 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2002. 10. 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2002. 10. 18~20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2002. 10. 25	협상 타결 발표 (서울 및 산티아고)
2003. 2. 15	정식 서명 (서울)
2004. 4. 1	한-칠레 FTA 발효

#### 나. 주요 내용

한-칠레 FTA는 前文과 21개 章(Chapter)의 협정문 및 농산물·공산품 등의 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됨.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함.

협정문은 투자·서비스는 물론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을 포함.

한-칠레 FTA 상품양허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양 허 안
수출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對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li> <li>-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내 관세 철폐</li> <li>- 기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7~13년간 관세 철폐</li> <li>- 냉장고, 세탁기는 제외</li> </ul>
수입 공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li> </ul>
수출 농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ce Band 제품과 관련품목(42개) 및 미곡, 소고기의 일부품목 (10개)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li> </ul>
수입 농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사과, 배는 제외</li> <li>- 포도는 계절관세(11월~익년 4월 수입시 관세인하)</li> <li>- 고율관세 민감품목은 WTO DDA 협상 후 논의</li> <li>- 기타 품목은 민감도에 따라 즉시~16년 철폐</li> </ul>

원산지의 경우,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에 특혜관세의 용이한 적용을 위해 폭넓게 인정하되, 농산물은 제3국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마련했음. 원산지 발급방법은 자율발급제도로 함.

정부조달의 경우,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칠레 조달시장 규모는 25~30억 달러)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한국과 칠레 양국은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또한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한 바, 고려인삼, 한국김치, 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게 됨.

투자분야에서는 설립 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설립 후 단계의 최혜국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기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

서비스 교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서비스 교역의 제한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분쟁해결과 관련, 한-칠레 FTA 및 WTO협정의 공동 해당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각료급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 설치.

## 2. 한-칠레 FTA 체결 의미

### ■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 등 지역주의 예도 적극 대응해나가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

### ■ 아시아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칠레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

### ■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 다자주의 협상에 치우쳐 있던 우리의 통상협상이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자유화 방식(FTA)을 채택하게 됨.

### ■ 통상협상 경험 및 노하우 축적

4년여의 협상 및 비준기간 동안 정부 및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은 값진 경험을 축적하여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함.

### ■ FT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효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던 개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계기 마련.

### ■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 및 대외 신뢰도 제고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기를 마련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전 세계에 적극 과시함으로써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

## 3. 한-칠레 교역 동향

### 가. 교역 개황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매년 평균 35.4% 증가하여 발효 5년차 교역액은 발효 전에 비해 4.5배 증가.

2003년 5.2억 달러를 기록한 對칠레 수출은 2008년에는 30.3억 달러로 무려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10.6억 달러에서 41.3억 달러로 4배 증가.

對칠레 수출입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발효 5년차 2008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

對칠레 수출은 협정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다 발효 4년차에는 98.9% 급증, 발효 5년차에는 경유 등의 수출 부진으로 2.7% 감소.

## 특별기고

對칠레 수입은 협정 발효 직후에 급증했다가 2005년에 다소 둔화되었고 2006년 구리 등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67.3% 급증했으나, 2007년에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3% 감소.

## 한-칠레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 연평균 증가율
수출	517 (13.9)	708 (36.9)	1,151 (62.5)	1,566 (36.1)	3,115 (98.9)	3,032 (-2.7)	33.8
수입	1,058 (40.3)	1,934 (82.8)	2,279 (17.9)	3,813 (67.3)	4,184 (9.7)	4,127 (-1.3)	16.4
수지 <증감액>	-541 <-241>	-1,225 <-684>	-1,128 <97>	-2,247 <-1,119 >	-1069 <1,178>	-1,096 <-27>	-
교역액	1,575 (30.4)	2,642 (67.7)	3,430 (29.8)	5,379 (56.8)	7,299 (35.7)	7,159 (-1.9)	35.4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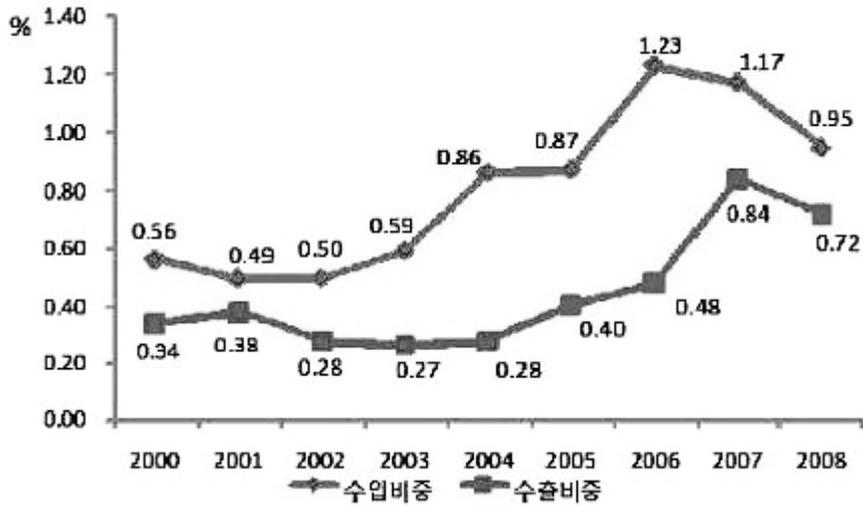
對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확대되어 2006년에 22.5억 달러를 기록한 후에 200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축소.

對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2003년 5억 달러 → 2004년 12억 달러 → 2005년 11억 달러 → 2006년 22억 달러로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07년에 10.7억 달러, 2008년에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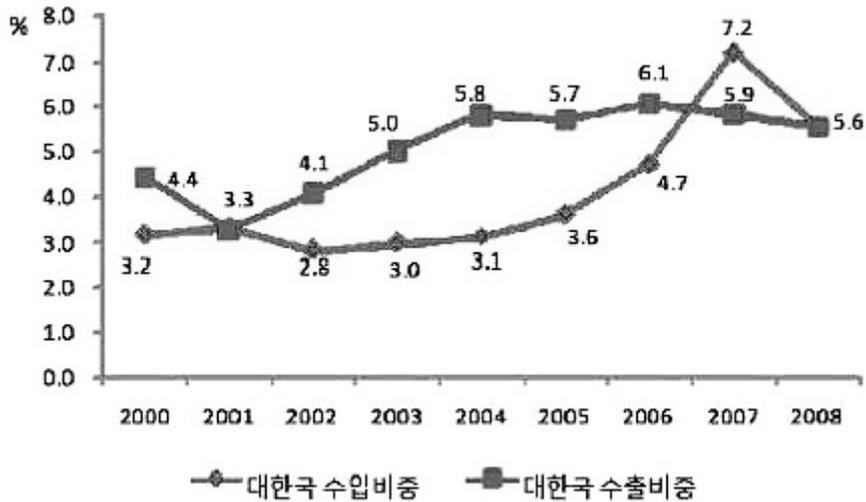
한국의 對세계 수출입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했음.

對칠레 수입비중은 2006년부터, 수출비중은 2007년부터 감소했으며, 수출입 감소는 구리 등 국제 원자재가격 및 경유 가격하락에 기인함.

한-칠레 교역 동향



한국의 수출입에서 對칠레 수출입 비중



한편 칠레의 對세계 수출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하기 시작.

#### 나. 對칠레 품목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경유, 승용차, 합성수지, 철강관, 무선전화기,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승용차, 무선전화기, 컬러TV 등은 수출이 발효 직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관세가 5년에서 13년에 걸쳐 철폐되는 경유, 철강관은 발효 2~3년차 이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

경유는 2003년 8,162만 달러에서 2008년 14.1억 달러로 17.2배 증가,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도 증가세를 보이며 2007년에는 44.8%로 1위를 기록했음.

그러나 발효 5년차에는 일-칠레 FTA 발효와 미국산 경유 가격하락으로 수입선이 변경되면서 점유율이 2위로 하락.

승용차는 2003년 1.2억 달러에서 2008년 5.3억 달러로 4.5배 증가했으며, FTA 체결전 일본보다 낮았던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수입액 기준 1위를 차지함.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출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관세/양허							
총계	517,187 (13.9)	708,287 (35.9)	1,151,001 (62.5)	1,566,131 (36.1)	3,115,103 (98.9)	3,031,103 (2.7)	42.4
경유	81,624 (62.6)	66,522 (-18.5)	241,302 (262.7)	493,981 (104.7)	1,739,481 (252.1)	1,408,046 (-19.0)	76.8
6%/5년철폐							
승용차	116,889 (41.3)	189,798 (62.4)	270,810 (42.7)	376,749 (39.1)	517,363 (37.3)	525,418 (1.6)	35.1
6%/즉시철폐							
합성수지	50,132 (41.1)	68,523 (36.2)	126,610 (84.8)	137,666 (8.7)	123,464 (-10.3)	138,106 (11.9)	22.4
6%/즉시~10년철폐							
철강판	8,303 (-18.6)	11,111 (33.8)	13,515 (21.6)	33,732 (149.6)	43,492 (28.9)	72,305 (66.3)	54.2
6%/5년~13년철폐							
무선전화기	23,140 (-25.4)	57,196 (147.2)	91,850 (60.6)	93,873 (2.2)	84,260 (-10.2)	53,985 (-35.9)	18.5
6%/즉시철폐							
자동차부품	21,106 (4.6)	21,106 (17.7)	28,561 (15.0)	31,314 (9.6)	35,852 (14.5)	40,294 (12.4)	13.8
6%/즉시,5년,13년							
타이어	10,391 (13.2)	13,871 (33.5)	19,584 (41.2)	20,140 (2.8)	25,189 (25.1)	34,059 (35.2)	26.8
6%/13년철폐							
컬러TV	7,249 (-48.6)	13,142 (81.3)	14,238 (8.4)	29,456 (106.9)	23,472 (-20.3)	11,286 (-51.9)	9.3
6%/즉시철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칠레 수입시장에서 자동차, 컬러TV,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 대부분의 점유율이 협정 발효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순위도 발효 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철강판의 경우, 협정 발효 전에 비해 2008년 점유율 상승폭이 21.6%p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11.3%p, 컬러TV 4.9%p순이었음.

이들 품목의 연평균 수입증가율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유 84.2%, 철강판 57.0%, 컬러TV 48.9%, 자동차 40.8%를 기록함.

##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변화

(단위: %)

품목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B)	증감 (B-A)	5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경유	23.8	11.1	13.7	28.8	44.8	22.0	-1.8	84.2
자동차	16.1	19.8	23.3	26.2	29.3	27.4	11.3	40.8
합성수지	8.2	7.6	11.7	13.0	8.9	10.0	1.8	24.9
철강관	10.2	10.1	14.9	23.0	25.0	31.8	21.6	57.0
컬러TV	7.3	9.5	11.0	12.4	8.8	12.2	4.9	48.9
자동차부품	5.9	5.3	6.2	6.3	6.2	6.7	0.8	21.0
타이어	5.4	6.3	6.1	4.7	4.4	4.4	-1.0	17.5

자료: 칠레 통계청

## 다. 對칠레 품목별 수입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동광, 돼지고기, 키위, 포도주는 협정 발효 전부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협정 발효 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임.

동 광 관련 제품은 지난 5년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동광의 경우 2003년 2.2억 달러에서 2008년 12.5억 달러로 5.7배 증가.

동광의 수입물량은 같은 기간 1.2배 증가했으나, 발효 5년차에는 국제 구리가격 하락 및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5% 감소.

포도주, 포도, 돼지고기, 키위 등 농산물의 수입은 발효 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임.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3년 7.2%에서 2008년 21.7%로 큰 폭 증가했으나,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한 것임.

특히 2008년에 수입물량이 처음으로 프랑스산을 앞질렀으며, 이는 경기불황 등으로 저렴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칠레산 적포도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임.

협정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돼지고기는 2008년 다이옥신 검출로 인한 검역 중단으로 수입이 급감했음.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기준관세/양허							
총 계	1,057,723 (40.3)	1,933,548 (82.8)	2,279,175 (17.9)	3,812,945 (67.3)	4,183,829 (9.7)	4,127,354 (-1.3)	31.3
동 피	510,516 (19.7)	928,016 (81.8)	827,071 (-10.9)	1,189,763 (43.9)	1,381,745 (16.1)	1,486,019 (7.6)	23.8
5%/7년철폐							
동 광	219,113 (81.7)	513,102 (134.2)	657,202 (28.1)	1,369,192 (108.3)	1,273,969 (-7.0)	1,254,562 (-1.5)	41.8
1%/즉시철폐							
돼지고기	30,237 (374.0)	54,725 (81.0)	80,627 (47.3)	83,557 (3.6)	119,469 (43.0)	89,508 (-25.1)	24.2
26.2%/10년철폐							
포 도	13,656 (57.5)	13,133 (-3.8)	19,158 (45.9)	27,835 (45.3)	47,399 (70.3)	64,217 (35.5)	36.3
45%/10년철폐							
적포도주	2,366 (164.4)	6,810 (187.8)	10,251 (50.5)	13,395 (30.7)	23,179 (73.1)	26,943 (16.2)	62.7
15%/5년철폐							
홍 어	9,962 (75.3)	8,514 (-14.5)	8,484 (-0.3)	8,343 (-1.7)	10,110 (21.2)	7,818 (-22.7)	-4.7
35%/10년							
키 위	1,758 (29.2)	2,885 (64.1)	7,996 (177.2)	12,255 (53.3)	9,946 (-18.8)	3,964 (-60.1)	17.8
45%/10년철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발효 이후 對칠레 수입액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동광 및 동피로 각각 전체 증가액의 33.7%와 31.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가 1.9%를 차지함.

특별기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은 1.7%, 특히 적포도주를 제외한 순수 농산물의 수입증가 기여는 2%에 불과했으며, 원자재로 사용되는 구리 등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 기여가 84.2%를 차지했음.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증가액

(단위: 천 달러, %)

구분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A+B+C+D +E	증가 기여도
농림수산물	52,987	46,277	55,719	70,279	-10,555	214,707	7.0
농산물	4,685	17,766	19,638	28,412	16,728	87,228	2.8
적포도주	4,444	3,441	3,144	8,784	3,764	24,577	0.8
과실류	626	11,966	14,567	18,035	11,443	56,637	1.8
포도	-523	6,025	8,677	19,564	16,818	50,561	1.6
키위	1,127	5,111	4,259	-2,309	-5,982	2,206	0.1
<포도주 제외 농산물>	241	14,325	16,493	18,628	12,964	62,651	2.0
임산물	12,261	-10,536	5,842	3,829	9,213	20,609	0.7
목재류	12,078	-10,515	5,857	3,664	9,031	20,115	0.7
축산물	24,467	25,906	3,802	41,502	-33,715	61,962	2.0
돼지고기	24,488	25,902	2,930	35,912	-29,961	59,271	1.9
수산물	11,573	13,141	26,437	-3,463	-2,781	44,907	1.5
홍어	-1,448	-30	-141	1,767	-2,292	-2,144	-0.1
광산물/비철금속	816,787	216,247	1,390,495	208,103	-48,469	2,583,163	84.2
동피	417,500	-100,945	362,692	191,982	104,274	975,503	31.8
동광	293,989	144,100	711,990	-95,223	-19,407	1,035,449	33.7
공산품	6,051	83,103	87,556	92,502	52,549	271,761	8.9
총수입	875,825	345,627	1,533,770	370,884	-56,475	3,069,63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라. 중-칠레 FTA, 일-칠레 FTA의 영향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3년 3.0%에서 2008년에는 5.6%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음.

협정 발효 후 5년간 칠레의 對한국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44.2%로 같은 기간 칠레의 對세계 연평균 수입증가율(27.2%)보다 2배 높았으며, 한국의 점유율 순위도 '03년 8위 → '08년 5위로 상승했음.

그러나 칠레가 중국('06.10.1), 일본('07.9.3)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에 전년대비 3.0%p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상승 중임.

일본의 경우, 2004년 이후 하락하던 점유율이 2007년 9월 일-칠레 FTA 발효 후 상승세를 회복하며 2008년에는 4.7%를 기록.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일본 제품의 점유율은 '06년 3.3% (9위) → '07년 3.7% (7위) → '08년 4.7% (6위) 상승하면서 한국을 추격.

한편 중국도 중-칠레 FTA가 2006년 10월 발효되면서 對칠레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점유율 순위가 2006년 4위에서 2007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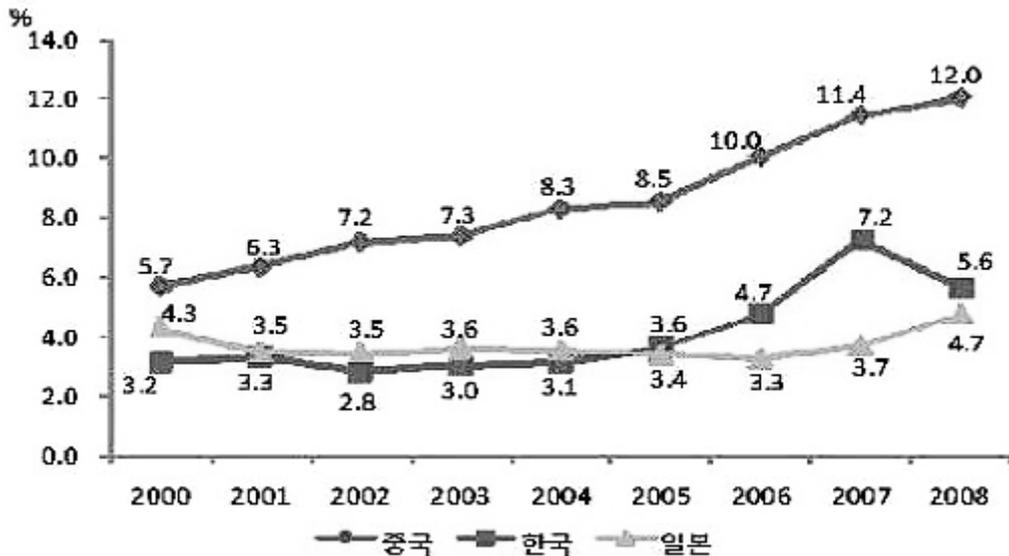
칠레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단위: %)

국 가	2003(A)	2004	2005	2006	2007	2008(B)	증감 (B-A)	5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
미 국	14.5	15.1	15.8	16.0	17.0	19.4	4.9	34.7
중 국	7.3	8.3	8.5	10.0	11.4	12.0	4.7	40.4
브라질	11.8	12.4	12.7	12.2	10.5	9.3	-2.5	21.3
아르헨티나	21.3	18.5	16.1	13.0	10.1	8.9	-12.4	6.7
한 국	3.0	3.1	3.6	4.7	7.2	5.6	2.6	44.2
일 본	3.6	3.6	3.4	3.3	3.7	4.7	1.1	34.2
페 루	2.5	3.1	3.7	4.1	3.9	3.3	0.8	33.7
세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7.2

자료: 칠레 통계청

칠레 수입시장 내 한·중·일 점유율 변화



주력 수출품목이 중국, 일본과 상당 부분 경합함에 따라 한국 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경쟁국 제품 등에 의해 잠식되고 있음.

자동차부품의 경우, 2007년에 점유율 6.21%로 칠레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던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2008년에 6.69% 증가했으나, 중국이 같은 기간 6.18%에서 7.54%로 증가하면서 6위로 순위 하락.

경유는 2007년 對칠레 수출 급증으로 시장점유율 1위(44.8%)를 기록했으나, 2008년 미국, 일본으로부터 경유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2위로 하락(22.0%)·경유의 경우, 한국은 5년 철폐, 일본은 즉시철폐.

자동차의 경우, 2007년에 점유율 29.3%를 기록하여 칠레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08년에 점유율이 27.4%로 하락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점유율 30.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현황

(단위: %)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A)	2008(B)	증감(B-A)
경 유	23.8	11.1	13.7	28.8	44.8	22.0	-22.8
자동차	16.1	19.8	23.3	26.2	29.3	27.4	-1.9
자동차부품	5.9	5.3	6.2	6.3	6.2	6.7	0.5

자료: 칠레 통계청

마. 對칠레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한-칠레 FTA로 인한 수출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FTA 발효 전인 2003년 對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13.2억 달러, 발효 5년차 2008년에는 118.2억 달러로 9배 증가.

對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부가가치는 2003년 4.3억 달러에서 2008년에 19.1억 달러로 4.5배 증가.

對칠레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수는 2003년 6,041명에서 2008년에 20,634명으로 4.2배 증가.

#### 한-칠레 FTA로 인한 산업연관효과

		발효 전 1년 2003년	발효 5년차 2008년
생산유발효과	총 수출액(a, 백만 달러)	517	3,032
	생산유발액(b, 백만 달러)	1,320	11,820
	생산유발도(b/a, 배)	2.6	3.9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액(c, 백만 달러)	425	1,914
	외화가득률(c/a)	0.8	0.6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d, 명)	6,041	20,634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d/a, 명)	11.7	6.8

※ 산업연관효과 분석방법 : FTA 체결 전인 2003년과 체결 후인 2008년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함.

#### 4. 한-칠레 투자동향 및 인적교류

한국의 對칠레 투자는 80년대까지 미미했으나, 90년대 들어 동광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FTA 기대효과에 따라 발효 직전인 2003년부터 對 칠레 투자가 급증.

FTA 발효 이전 광업 중심의 자원개발형 투자에서 발효 시점을 전후로 하여 도소매업 및 제조업 분야로 확대.

우리나라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 수	3	1	0	3	3	5	9	12	4
금 액	1,063	63	0	15,300	1,782	3,306	4,931	30,331	2,7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신고기준)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2004년 FTA 발효 전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 수	0	0	0	0	1	7,289	185	0	0
금 액	0	0	0	0	44	2	1	0	0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양국 간 FTA 체결 전까지 민간기업 투자를 제외한 산업협력은 전무하였으나, FTA 체결을 계기로 건설플랜트, IT, 광업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특별기고

시 기	산업협력의 주요 내용
2004. 6.	한-칠레 자원협력협정 체결 및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2004. 4. ~ 2006. 9.	한-칠레 IT협력센터 운영
2005. 5.	포스코건설, 3.7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2006.	포스코건설, 13억 달러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2008.	포스코건설, 13억 달러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기 타	산업기술협력, 항공협력, 금융협력, 무역협력 등

한편 FTA 체결 이후 교역, 투자, 산업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임.

## 국 국민의 상호방문 추이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칠레	623	726	820	n/a	n/a	n/a
칠레→한국	799	1,274	1,448	1,348	1,469	1,56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연보

## 5. 업계가 바라보는 한-칠레 FTA

한-칠레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對칠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음.

- 조사대상 : 對칠레 주요 수출업체 104개
- 조사기간 : 2009. 3. 6 ~ 3. 20

‘한-칠레 FTA가 對칠레 교역에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 업계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5%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 긍정적인 답변을 한 75% 가운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7.7%,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3.7%,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33.7%를 차지했음.
- 긍정적인 답변의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회복, 수출증대, 한국산 인지도 상승, 바이어 선호도 증가, 칠레 시장 신규 개척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의 이유로는 중-칠레 FTA 체결 이후 가격 경쟁력 상실, FTA 多체결국인 칠레시장에서 효과미비, 교역량이 적음, FTA 수혜가 수입 업자에게 귀속 등임.

한-칠레 FTA의 對칠레 교역에 대한 도움 여부

	이유
도움이 되었다 (75%)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회복 ·수출증대 ·한국산 인지도 상승 ·바이어 선호도 증가 ·칠레시장 신규 개척 등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중-칠레 FTA 체결 이후 가격 경쟁력 상실 ·FTA 多체결국인 칠레시장에서 효과 미비 ·교역량 적음 ·FTA 수혜가 수입업자에게 귀속 등

‘한-칠레 FTA 이후 對칠레 투자를 검토 혹은 추진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가 92.3%를 차지하여,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있다’는 의견은 4.8%, ‘기타 의견’이 2.9%를 차지했음.

‘한-칠레 FTA 이후 교역선(수출선 혹은 수입선)을 다른 국가에서 칠레로 전환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8.5%를 차지하여, 한-칠레 FTA는 주로 기존 교역업체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에 ‘있다’는 의견은 8.7%, ‘기타 의견’이 2.9%였음.

‘한-칠레 FTA의 아쉬운 점에 대해 지적해 달라’는 질문에 ‘아쉬운 점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49.5%를 차지했음.

한편 ‘보다 빠른 관세 철폐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3.1%, ‘특혜관세 대상 품목 확대’가 아쉽다는 의견이 7.5%, ‘원산지 증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했음.

또한, 기타 의견이 개선된 23.4% 가운데에는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의 존재, FTA 다체결국 칠레와의 체결로 인한 효과 미비,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대한 교육 부족, 작은 시장 규모 등이 있었음.

한-칠레 FTA에 대한 아쉬운 점		
없다	- 만족하고 있다	49.5%
있다	- 보다 빠른 관세 철폐 스케줄이 필요	13.1%
	- 특혜관세 대상품목 확대	7.5%
	-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필요	6.5%
	- 기타 의견	23.4%
	·인증 등 비관세장벽의 존재	6.5%
	·FTA 다체결국 칠레와의 체결로 인한 효과 미비	23.4%
	·원산지 증명서 작성에 대한 교육 부족 ·작은 시장 규모 등	

## 6. 한-칠레 FTA 5년 종합 평가

### (1)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고 불균형도 점차 완화

한-칠레 FTA 발효 후 양국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35.4%, 4.5배 증가.

같은 기간 한국의 對세계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8.1% 증가, 교역액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對칠레 수출은 2003년 5.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30.3억 달러로 무려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10.6억 달러에서 41.3억 달러로 4배 증가.

협정 발효 초기에 확대되었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축소되고 있어 수지불균형도 완화되고 있음.

2003년에 5.4억 달러였던 對칠레 무역적자는 매년 확대되어 2006년에는 22.5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2008년에는 절반 수준인 11억 달러로 축소됨.

한편 한-칠레 FTA는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발효 5년차인 2008년 對칠레 수출에 의한 유발된 생산액은 발효전인 2003년의 9배, 유발된 부가가치는 2003년의 4.5배, 취업유발 인원도 2003년의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 양국 교역에서의 점유율 상승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對칠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3% 에서 2008년 0.8%로, 전체 수입에서 對칠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0.6%에서 2008년 1.0%로 증가.

칠레의 전체 수출입에서 한국의 수출비중은 2003년 5.0%에서 2008년 5.6%로, 수입 비중은 2003년 3.0%에서 2008년 5.6%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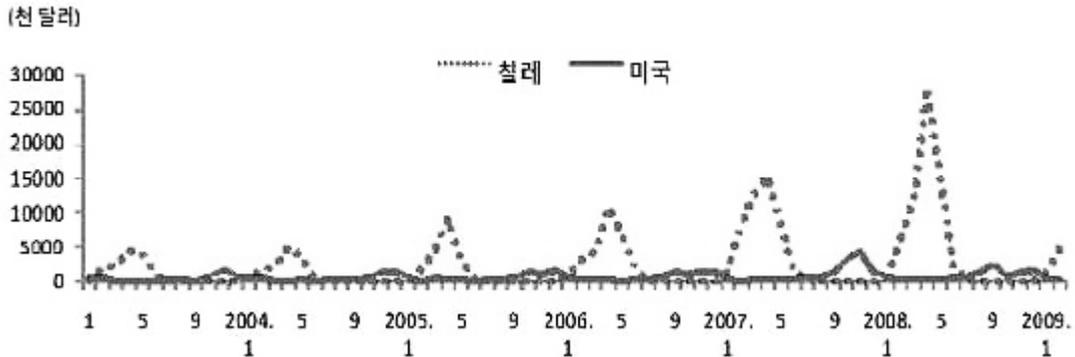
특히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칠레의 5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 (3)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우려와 달리 제한적

한편 한-칠레 FTA 발효 이전부터 우려되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11월~4월말) 품목으로 겨울부터 봄까지 수입되고 있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

칠레산과 직접 경쟁하는 시설포도의 재배면적은 협정 발효 이전('03년 1,641ha) 보다 오히려 증가.(’08년 1,824ha)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 사육두수는 협정 발효 이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03년 9,231천 두 → '08년 9,087천 두), 산지가격은 발효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국내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육두수 (천두)	8,974	9,231	8,908	8,962	9,382	9,606	9,087
산지가격 (천원/100kg)	178	163	228	253	249	224	27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관측월보), 통계청

협정 발효 후 5년간 對칠레 수입증가액의 84.2%가 광산물 및 비철 금속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농산물의 수입증가액은 전체의 2%인 6,265만 달러에 불과함.

주요 품목의 對칠레 수입 증가액

(단위: 천 달러, %)

구분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발효1년 (A)	A+B+C+D+ E	증가 기여도
농림수산물	52,987	46,277	55,719	70,279	-10,555	214,707	7.0
농산물	4,685	17,766	19,638	28,412	16,728	87,228	2.8
적포도주	4,444	3,441	3,144	8,784	3,764	24,577	0.8
과실류	626	11,966	14,567	18,035	11,443	56,637	1.8
포도	-523	6,025	8,677	19,564	16,818	50,561	1.6
키위	1,127	5,111	4,259	-2,309	-5,982	2,206	0.1
<포도주 제외 농산물>	241	14,325	16,493	18,628	12,964	62,651	2.0
임산물	12,261	-10,536	5,842	3,829	9,213	20,609	0.7
목재류	12,078	-10,515	5,857	3,664	9,031	20,115	0.7
축산물	24,467	25,906	3,802	41,502	-33,715	61,962	2.0
돼지고기	24,488	25,902	2,930	35,912	-29,961	59,271	1.9
수산물	11,573	13,141	26,437	-3,463	-2,781	44,907	1.5
홍어	-1,448	-30	-141	1,767	-2,292	-2,144	-0.1
광산물/비철금속	816,787	216,247	1,390,495	208,103	-48,469	2,583,163	84.2
동괴	417,500	-100,945	362,692	191,982	104,274	975,503	31.8
동광	293,989	144,100	711,990	-95,223	-19,407	1,035,449	33.7
공산품	6,051	83,103	87,556	92,502	52,549	271,761	8.9
총수입	875,825	345,627	1,533,770	370,884	-56,475	3,069,63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4) 높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 시현

한-칠레 FTA는 수출의 경우 4년 평균 96.9%, 수입의 경우 90.5%라는 매우 높은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체결한 FTA의 활용률은 60~70%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NAFTA의 경우 활용률이 약 64%로 알려짐.

한-칠레 FTA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누적
수출 활용률	93.1%	95.8%	96.7%	98.7%	96.9%
수입 활용률	77.7%	93.8%	93.6%	93.3%	90.5%

자료 : KIEP,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활용 방안」 (2008)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FTA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활용률이 100%인 경우 해당 FTA의 특혜관세 혜택이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text{활용률} = \frac{\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수출품목}}} \text{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 M_{p,s}}{\sum_{\substack{p \in \text{상대국} \\ s \in \text{수출품목}}} \text{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 M_{p,s}} \times 100\%$$

여기서  $M$ 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

한-칠레 FTA가 높은 활용률을 보인 이유는 i)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 협상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쟁과 반향을 불러일으켜 홍보 효과가 컸고, ii) 협정의 상품 자유화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iii) 양국 세관당국의 앞선 행정력으로 협정이행상 문제가 없었고, iv) 원산지 증명이 자율발급제도로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음.

#### (5) 對칠레 투자와 기업간 협력은 활발하나, 칠레의 對한국 투자 및 인적 교류는 아직 적은 편

한-칠레 FTA 출범으로 주춤했던 對칠레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전무했던 산업협력도 FTA 체결을 계기로 건설플랜트, 정보통신, 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2004년 이후 소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한 칠레의 對한국 투자와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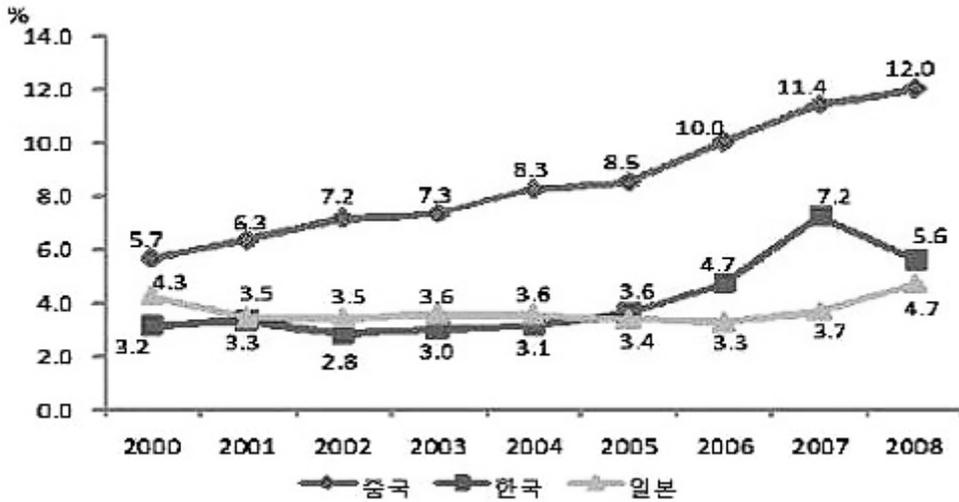
#### (6) 경쟁국의 FTA 체결로 시장선점 효과 감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3.1%에서 2007년에는 7.2%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점유율이 5.6%로 하락하면서 5위를 기록.

- 한국 : '03년 8위 → '04년 7위 → '05년 8위 → '06년 5위 → '07년 5위

그러나 중국('06.10월 발효)과 일본('07.9월 발효)은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점유율이 상승하는 중이며, 우리 주력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일본 제품 등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칠레 수입시장 내 한·중·일 점유율 변화



(7) 우리 업계는 한-칠레 FTA에 대체로 만족

對칠레 수출업체의 75%가 한-칠레 FTA가 對칠레 교역에 도움을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된 이유는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회복, 수출증대, 한국산 인지도 상승, 바이어 선호도 증가, 칠레 시장 신규 개척 등임.

對칠레 수출업체의 49.5%가 한-칠레 FTA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나,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지적했음.

## 7. 결론 및 향후 과제

한-칠레 FTA 발효 후 5년간 양국 간 교역은 2003년 15.8억 달러에서 2008년 71.6억 달러로 4.5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35.4% 증가하여 對세계 교역의 5년 연평균 증가율(18.1%)보다 높게 나타남.

對칠레 수출은 2003년 5.2억 달러에서 2008년 30.3억 달러로 6배 증가, 對칠레 수입은 같은 기간 10.6억 달러에서 41.3억 달러로 4배 증가했음.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안정됨에 따라 FTA 발효 초기에 악화되었던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의 칠레 시장점유율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FTA 발효 전 8위에서 발효 5년차에 5위로 자리매김.

한-칠레 FTA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구리 등 원자재와 포도주 등은 오히려 국민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한-칠레 FTA로 인한 수출 증가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발효 5년차인 2008년 對칠레 수출에 의한 유발된 생산액은 발효전인 2003년의 9배, 유발된 부가가치는 2003년의 4.5배, 취업유발 인원도 2003년의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업계는 한-칠레 FTA 5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빠른 관세철폐 스케줄, 특혜관세 대상품목의 확대, 원산지 증명방법의 개선 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지적했음.

한-칠레 FTA 5년간 양국은 교역의 양적 증가에 집중해왔으나, 앞으로 투자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향후 협력방향으로 정보통신(IT), 에너지, 건설 및 플랜트,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및 산업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

최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FTA 시장선점 효과가 감퇴되고 있음.

FTA 시장선점 효과를 보다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조기 철폐, 즉시철폐 비율 등 상품자유화 수준을 높여서 FTA를 추진해야 함.

또한 경쟁국이 체결한 FTA보다 양허가 불리한 품목의 경우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양허스케줄을 단축하고 양허제외 품목(세탁기, 냉장고 등)을 추가 개방하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칠레 FTA가 중남미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 지리적 거리로 인해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고 중남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지역 전문가를 양성하여 중남미 시장진출과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그밖에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중남미라는 거대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으나, 이제는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MERCOSUR와의 FTA 추진을 통해 한국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임.

## 해외통상기사

### 새 DDA 농업 의장, 뉴질랜드 워커 대사

Washington Trade Daily(4.14일자)

### 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Washington Trade Daily(4.17일자)

### 일본 EU에 EPA 촉구

일본농업신문(4.14일자)

### 일본 농정개혁 검토방향(관계 각료회의)

일본농업신문(4.18일자)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아빠는 배운대로 복잡하게 설명했다.

“연료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 후륜의 경우

클러치-변속기-추진축-차동기-액셀축-후차륜 순서로

동력을 전달하여 자동차를 움직인단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듣던 아들이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단 한마디로 끝내 버렸다.

“응... 빙글빙글!”



## 새 DDA 농업 의장, 뉴질랜드 워커 대사

뉴질랜드의 새 통상전권대사인 David Walker가 DDA 농업 의장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되어, 이 소식은 어제 WTO 의장인 Mario Matus에 의해 팩스로 회원들에게 보내졌다. 워커는 전임자인 Crawford Falconer를 대신할 것이고, 다음 농업 협상 회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워커 대사는 2001년 이후 DDA 협상의 4번째 의장으로, 그의 전임자는 홍콩의 Stuart Harbinson('01~'03), 뉴질랜드의 Tim Groser('04~'05), 뉴질랜드의 Falconer 대사('05~'09.3) 등이다.

Washington Trade Daily(4.14일자)

## DDA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DDA 농업위원회는 David Walker 제네바 주재 뉴질랜드 대사를 DDA 농업 협상 그룹 신임의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다음주 수요일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번 특별회의에서 민감품목, TRQ증량, 무역왜곡보조, Blue박스 및 Amber박스조치에 대한 규율, 특별품목, 개도국SSM, 열대품목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DDA 농업국장 Clemens Boonekamp는 언급했다. 한편,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는 G90, APEC 등의 지역경제협력체 그룹과의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회의는 4월29일 일반이사회 기간 중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Washington Trade Daily(4.17일자)

## 일본 EU에 EPA 촉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13일, 일본과 유럽연합과의 경제연대협정(EPA)의 체결을 요구하는 제2차 제언을 발표했다. EU는 일본과 경합 하는 자동차 산업 등의 산업보호 관점에서 일본과의 EPA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U측의 장점을 강조하여 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으로 경단련이 일·EU의 EPA에 관해 제언한 것은 2007년 6월에 이어 2번째이다.

동 발표문은 신중한 관세인하 이외의 물품규격·기준의 조화나 기업인의 이동 원활화, 자본·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EU측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다만, 경단련은 금번 제언 중에서도 '관세이외의 장벽의 철폐·삭감은 관세장벽의 철폐·삭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번 제언에 EU측이 얼마만큼 반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EU는 한국과 지난달,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잠정합의했으나, 4월 초순경 예정되어 있던 정식합의가 연기된 상태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EU내에서는 자유무역의 촉진에 신중하자는 의견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4.14일자)

## 일본 농정개혁 검토방향(관계 각료회의)

「농정개혁 관계각료회의」는 4.17일 「농정개혁 검토방향」을 승낙하고, 농정 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후 8월에 「농정개혁 기본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업소득 증대, 영농후계자 양성 및 지원, 경영안정대책, 쌀 생산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및 과정이 중요한 초점으로 쌀 생산조정과 농업소득 증대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영농후계자 육성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명기 되어 많은 인재가 농업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농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과제로 부상되었으며, 쌀 생산조정에 있어서는 「국민 각계각층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입안이 중요」함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득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위기 및 불투명한 세계식료 사정을 명시 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 납세자 부담형 농정 구축도 추진의 발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정개혁 기본방향」의 중요한 부문이 농업소득 증대 및 쌀 생산조정으로, 체질강화 등을 통한 농업소득(농업순생산)증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농업 경영·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구축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큰 과제로 남아 있고 쌀 생산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및 생산, 소비, 가격, 농업소득, 구조개혁 등에 관한 각종 시물 레이션을 통하여 국민적 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소 수상도 「국민의

눈높이를 염두에 둔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앙케이트 및 시뮬레이션 결과가 향후 생산조정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조정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및 논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장래 쌀 생산·공급 안정 및 생산자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확립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농업신문(4.18일자)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에서는 「국제농업소식」 지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림수산식품관련 단체 및 협회,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소식지의 내용이나 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실린 내용들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국제농업소식

■ 발행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총괄과  
Tel : (02)500-1858 Fax : (02)504-6659 [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  
■ 인 쇄 : (주)경성 Tel : (02)503-3223 Fax : (02)503-8338